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연구

2005. 10

농림부 도서실



0011238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연구

2005. 10.

2005-202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1238
등록일: 2006년 2월 1 일
기증: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52年	12月	15日
1952年	12月	15日
1952年	12月	15日
1952年	12月	15日

제 목 차 례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제2장 농촌지역개발의 필요성	7
2.1. 주요 농촌문제의 현황	7
2.2. 농촌지역개발의 필요성	12
제3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연혁 및 현황	15
3.1. 사업 추진배경	15
3.2. 사업개요	15
3.3. 사업추진 연혁	20
3.4. 사업대상지 현황	23
제4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25
4.1. 정책의 정체성정립 및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확보방향	25
4.2. 사업권역 설정방법	33

4.3. 사업신청 절차와 선정방법	36
4.4.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	45
4.5. 사업내용(메뉴) 및 사업비	57
4.6.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73
4.7.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78
4.8. 사업기간의 적정성	97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안	100
5.1. 핵심내용 요약	100
5.2. 정책 제안	103
제6장 참고 문헌	106
부록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	109
부록 2: 200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137
부록 3: 해외사례지역	157
부록 4: 각 부처 유사사업들과의 관계	176

표 차 례

[표2-1] 농업 관련 주요지표 현황	9
[표3-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행지침의 발전	16
[표3-2] 연도별 지원계획	20
[표3-3] 2005년 사업비	20
[표3-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연혁(요약)	22
[표3-5] '04기본계획수립 착수 대상권역(36개)	23
[표3-6] '05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및 '06사업착수 대상권역	23
[표3-7] 기본계획이 승인된 36개권역 현황	24
[표4-1] 부처별 농촌개발사업 내용 요약	25
[표4-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요약	26
[표4-3] 농촌개발사업의 유형화	27
[표4-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농림부 사업	31
[표4-5] 예비타당성분석항목과 항목별배점	39
[표4-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의 신규 대조표('04년,'05년)	57
[표4-7] 기본계획이 승인된 36개권역의 투자항목	60
[표4-8] 기본계획이 수립된 36개 권역 단계별, 연차별 사업비 예산현황	65
[표4-9] 기본계획이 수립된 36개 권역 부문별 사업비 예산현황	67
[표4-10] 단계별 사업성과평가 점검표(예)	76
[표4-11] 법인 등기 설립신청서 양식	95

그림 차례

[그림1-1] 연구의 내용	3
[그림1-2] 연구진 구성도	5
[그림2-1] 정주기반이 되는 기능 관계	10
[그림2-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조사결과	11
[그림3-1] 사업추진체계	19
[그림4-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간체계 위상	28
[그림4-2] 군지역 농촌지역개발 공간체계	29
[그림4-3] 권역설정 절차의 흐름	34
[그림4-4] 사업추진과정의 전문가 및 사무장 기여	41
[그림4-5] 기본계획수립 과정	47
[그림4-6]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	52
[그림4-7] 기본계획이 승인된 36개권역의 부문별 투자항목 빈도	63
[그림4-8] 소득기반사업의 타당성분석 흐름도	72
[그림4-9] 현행 사후관리 체계	79
[그림4-10]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	83
[그림4-11]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	84
[그림4-12] 마을개발 추진위원회의 역할	84
[그림4-13] 프로젝트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	85
[그림4-14]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체계 흐름도	86
[그림4-15]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체계의 역할의 장점	87
[그림4-16] 마을개발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연합 형성	88
[그림4-17] 법인 설립절차	90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목표를 실현해야 할 대상공간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의의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농촌지역사회를 얼마나 활성화시켜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느냐에 의미가 있을 것임.

이러한 목표아래 정부는 2004년 2월 농업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함께 2004~2013년 기간에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발표한 바,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 내의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람이 모여 살고 소득을 위한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하게 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농촌사회유지·도모를 목적으로 함. 이제까지 추진한 농촌지역개발사업과는 달리 상향식 추진방안을 채택하여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권역 내 잠재자원을 발굴·특성화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발전 가능성이 있는 1,000개 소권역을 지원할 계획임.

2004년에는 국고보조 200억원을 확보, 36개 권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이중 16개 지구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 20개 지구는 기본계획수립 후 2005년도 착수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사업초기단계에서 새로이 도입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 방식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특히 기존의 여러 가지 농촌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성과 연관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2004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당시 농특회계로 사업비를 지원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 사업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는 사업추진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수용·보완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수행됨

첫째,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검토하고 이들 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 서로 유기적인 연계아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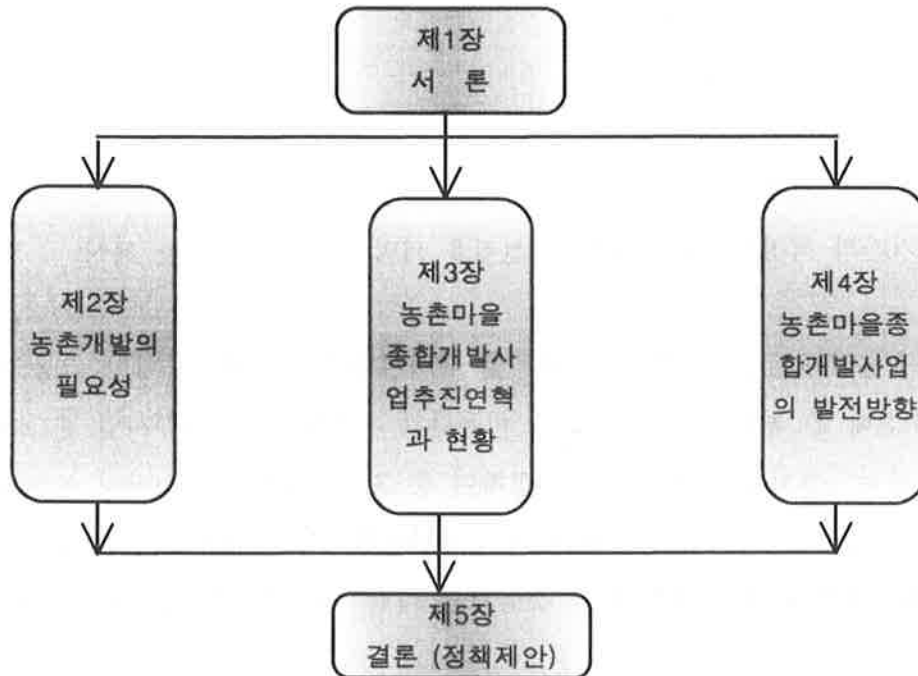
둘째, 2004년에 착수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셋째, 제시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보완과제를 발굴 제시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함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현재 농림부가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적인 추진 방안을 연구·제시하고자 [그림 1-1]과 같이 크게 다섯 개의 장(章)으로 구분, 정책의 목표와 현실을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그림1-1] 연구의 내용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추진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및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연구의 틀을 이해하게 함.

제2장은 농촌지역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촌 공간 및 농촌사회의 기능과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제시함.

제3장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연혁과 현황”으로서 2005년 9월 말 현재, 기본계획이 승인·확정된 36개 권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

제4장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본 연구의 핵심부문으로 현재까지 추진해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그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하였음.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정책의 정체성 및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사업권역 설정방법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 기본계획수립절차와 방법
 - 사업내용(메뉴) 및 사업비
 -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 사업기간의 적정성으로 나누어 개선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정책의 정체성 및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분야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농림부사업 중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만 한정하여 총 31개 사업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속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바람직한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음.

개선점에 대한 발전방향은 가능한 두 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더욱 바람직한 것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 동안 연구원의 연구, 자문위원회 자문 그리고 관계자 토론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경우는 단일안을 채택하였음.

마지막 제5장의 결론 및 정책제안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발전방향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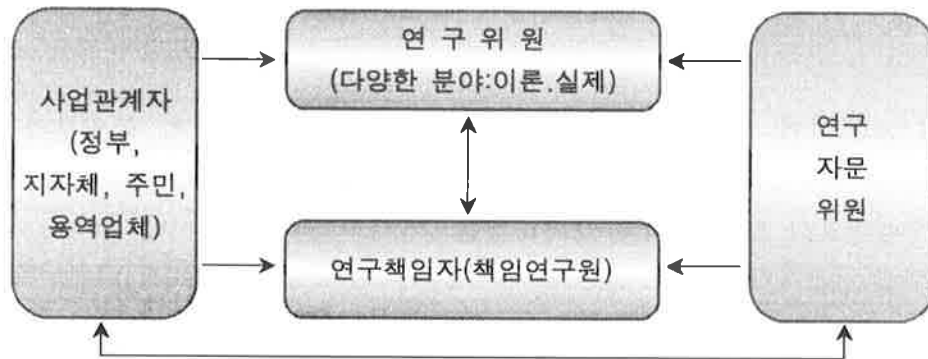
끝으로, 참고문헌을 명시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제안서 작성 매뉴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원용할 수 있는 해외사례 그리고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비교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제가 이미 시행중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정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참여시켜 이론과 현장이 상호 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방법의 기본방향으로 함.

따라서 연구진도 본 사업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이론과 현장성을 고려하여 [그림1-2]와 같이 구성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하여 7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연구를 수행.



[그림1-2] 연구진 구성도

제2장 “농촌개발의 필요성” 과 제3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연혁과 현황” 은 문헌조사와 농림부의 사업추진 지침 등을 참고 하였음

제4장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자문회의, 본 사업 관계자 토론회, 현장사례조사 형태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문헌조사는 본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는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자료,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단 현지방문자료, 36개 권역 기본계획안 평가자문 시 활용된 자료,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권역별 보고서 및 추진상황, 단계별 평가 등을 분석하였음. 특히 2005년 9월말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된 36개권역의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함.

1차적으로 문헌조사에 의한 연구위원들의 연구결과를 연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보완하고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연구위원들이 각 도별 1개 권역을 방문하여 해당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수립기관 관계자와 함께 연구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기본안을 마련하였음.

이 기본안을 가지고 제2차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이렇게 보완된 기본안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지역의 주민 대표, 기본계획수립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담당자, 기본계획평가자문위원, 농림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였음.

보완된 보고서에 대하여 2005년 9월9일~10일 이틀에 걸쳐 농림부가 주관한 전문가워크숍에서 농림부 관계자, 전문가,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등 총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을 거쳐 보완하였음.

제5장은 이제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정리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기술하였음

제2장 농촌지역개발의 필요성

2.1. 주요 농촌문제의 현황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이 끝난 1966년 당시 GNP의 산업별 점유율을 보면 농림어업이 37.9%, 광산 및 제조업이 19.8%, 3차 산업이 42.3%를 점유하고 있었고 정부의 투자내역을 보면 각각 7.8%, 27.3%, 64.9%이었으나¹⁾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난 1981년에는 GNP의 산업별 점유율이 각각 18.5%, 40.9%, 40.6%로 변하고 정부의 산업별투자내역은 각각 10.4%, 28.3%, 61.3%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업의 기여도는 높은 반면 정부의 농림어업분야에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져서 이 기간동안에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경향은 그 이후 역대 정권들 모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다음과 같은 농촌·농업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첫째, 농촌의 생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인 인구, 세대 수의 감소와 농촌사회의 초고령화 그리고 낮은 인구밀도에서 오는 농촌사회에 필요한 간접자본 투자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음. 결국 오늘날 농촌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농촌인구의 변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1960년의 농촌인구는 17,992천명으로 총인구의 72.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9,342천명으로 20.3%로 감소하였으며,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총인구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였고, 도시인구는 연평균 4.5%씩 증가한 반면 농촌인구는 1.6%씩 감소하였음.

이 결과 농촌지역의 인구밀도는 2005년 1월1일 현재 평방km 당 107명(읍지역 302명, 면지역 70명)으로 도시지역의 평방km당 인구밀도 3,871명에 비해 크게 낮음²⁾. 이로 인해 과소농촌지역은 정주공간으로 활용성이 낮아짐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도시의 과밀화에서 오는 집적의 불경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음.

1) IN-Sung Song, Strategies for Rural Urbanization (Rurbanization) in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aet Dortmund, 1981, pp.125-126.

2) www.moha.go.kr., 2005.8.11.

특히 농촌인구 중 면부 인구는 읍부와는 달리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1980~1985년 기간에 연평균 4.3%씩 감소하여 최고조에 이르다가 1995~2000년 기간에는 연평균 1.6%씩 감소하여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로 이주 하고자 하는 농촌인구자원이 고갈되어 자연감소 수준에 이른 것이기 때문일 것임.

1960년의 연령구조별 인구현황을 보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동지역의 0~14세 구성비는 39.1%, 15~64세는 58.4%, 65세 이상은 2.5%로 노령화 지수는 6.4였고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읍면지역은 각각 41.2%, 54.6%, 4.2%로 노령화 지수는 10.3으로 농촌이 도시보다 노령화지수는 높지만 유소년의 점유비도 높아 후속세대를 확보하고 건강한 농촌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 연령구조였음. 그러나 2000년의 경우 동지역의 0~14세 연령의 점유비는 21.6%로 농촌의 18.6%보다 높아졌고 65세 이상 점유비는 동지역이 5.4%인 반면 읍면지역은 14.7%로 노령화지수는 각각 25.3%, 78.7%로 농촌이 도시의 3배가 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노령화가 심화되어 농어의 65세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8.6%로 도시의 6.7%의 4배가 넘는 실정임.

인구 3천명 이하인 면도 1990년 152개에서 2000년 447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어가 인구 비중을 보면 1990년 16.7%에서 2000년 9.2%, 2004년 7.5%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90년 25.6%에서 2000년 20.0%로 낮아져 정주측면에서 보면 농촌의 역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1980년 가구형태별 점유비를 보면 도시의 경우 1인 가구 1.2%, 부부가구 3.1%, 2세대 가구 73.3%, 3세대이상 가구 19.1%, 기타 일반가구 3.3%이고 농촌의 경우 각각 1.1%, 3.1%, 63.6%, 31.2%, 0.9%였으나 2000년에는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도시의 경우 1인 가구 4.6%, 부부가구 6.8%, 2세대가구 73.9%, 3세대이상가구 12.4%, 기타 일반가구 2.3%였으나 농촌은 각각 6.8%, 16.4%, 56.8%, 18.5%, 1.4%로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농촌에 크게 증가하고 2세대 이상 가구가 크게 감소하여³⁾ 노인 혼자 또는 부부가 외롭게 농촌을 지키고 있음을 보이는 것임.

이러한 인구의 특성은 농어업후계자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농촌의 재활성화에 필요한 핵심엔진의 장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3) 박대식·박경철, 농촌지역사회의 변화동향과 전망-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84, 2003. 12, pp.20-23.

[표 2-1] 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업관련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주요 변화추세를 보면 국민총생산에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6.3%에서 2004년 3.7%로 크게 낮아졌고, 농가호수 또한 11.6%에서 8.0%로 낮아져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해 주고 있음.

[표2-1] 농업 관련 주요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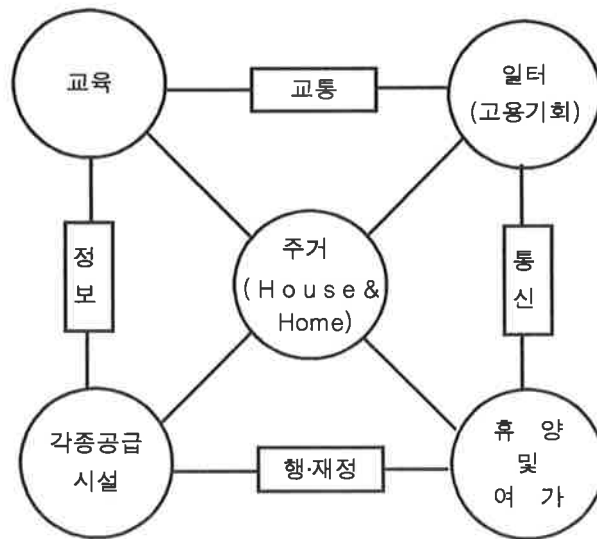
부문 (단위 : 천원, %)	단위	'90	'95	'00	'02	'03	'04
- 국내총생산	10억원	178,797	398,838	578,665	684,264	721,675	778,445
* 총부가가치	10억원	-	359,582	514,054	602,092	639,762	691,983
ㄱ. 농림어업	10억원	-	22,829	25,030	24,655	24,166	25,587
(구성비)	(%)	-	(6.3)	(4.9)	(3.6)	(3.8)	(3.7)
ㄴ. 농업	10억원	-	19,925	21,672	21,580	20,977	22,397
(구성비)	(%)	-	(5.5)	(4.2)	(3.6)	(3.3)	(3.2)
- 1인당 GNI	\$	-	11,432	10,841	11,493	12,720	14,162
- 경제성장률(GDP기준)	%	-	-	8.5	7.0	3.1	4.6
* 농림어업성장률	%	-	-	1.2	△3.5	△5.3	7.4
- 총가구수	천호	11,357	12,961	14,312	15,064	15,298	15,539
* 농가수	천호	1,767	1,501	1,383	1,280	1,264	1,240
(구성비)	(%)	(15.6)	(11.6)	(9.7)	(8.5)	(8.3)	(8.0)
- 전업농가	천호	1,052	849	902	862	813	785
(구성비)	(%)	(59.6)	(56.6)	(65.2)	(67.3)	(64.3)	(63.3)
- 겸업농가	천호	715	652	481	418	452	455
- 총인구	천명	42,869	45,093	47,008	47,640	47,925	48,082
* 농가인구	천명	6,661	4,851	4,031	3,591	3,530	3,415
(구성비)	(%)	(15.5)	(10.9)	(8.6)	(7.5)	(7.4)	(7.1)
(50세이상비율)	(%)	(54.5)	(43.7)	(49.8)	(54.6)	(55.4)	(53.3)
* 호당농가인구	명	3.77	3.23	2.91	2.80	2.79	2.75
- 총취업자수	천명	18,085	20,432	21,156	22,169	22,139	22,557
* 농림어업 취업자수	천명	3,237	2,534	2,243	2,069	1,950	1,825
(구성비)	(%)	(17.9)	(12.4)	(10.6)	(9.3)	(8.8)	(8.1)

- 주) 1.'00년 국내 총생산, 1인당 GNI 및 경제성장률은 잠정치임.
 2. 비소비지출은 2003년부터 신설된 항목
 3.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등
 4.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5. 2001, 2002년은 분가지출을 제외한 수치

자료 : www.maf.go.kr/js/print/for_print.htm, 2005.3.27.

둘째 정주기반이 도시에 비하여 낙후됨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도시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이촌 및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됨.

사람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정주의 기반이 되는 기능[그림2-1]을 살펴보면 가장 중심적인 기능은 주거기능이고, 이외에 교육기능, 고용기회 공급기능, 여가 활용기능, 각종 공급시설(전기, 가스, 병원 등), 교통기능, 정보·통신기능들인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계하는 것이 행정과 재정의 기능임.



[그림2-1] 정주기반이 되는 기능 관계

농촌의 정주기능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 특히 노령화사회를 뒷받침할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함.

다음은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임.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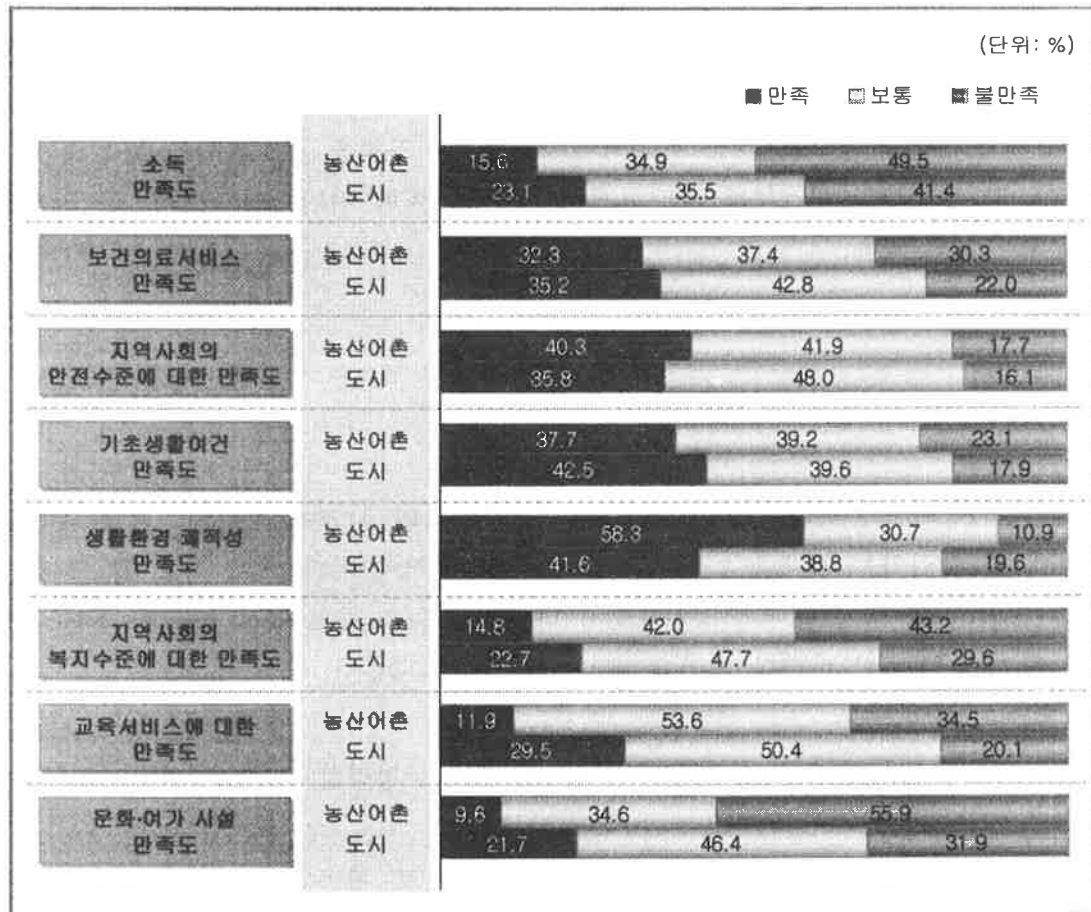
종합병원(93.6%), 병상 수(89.5%), 의료인력(88%) 등 의료기관이 도시에 90%이상 집중되어 있고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500여개 (35%수준)나 되고 전체 학교 5,149개의 47%인 2,420개교가 소규모 학교로 복식수업과 비전공 교사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농촌지역의 교육의 질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됨.

4)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2005. 4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취약한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음.

- 도로 포장율('03) : 농산어촌 51.5% < 도시 89.5%
- 상수도 보급률('03) : 농산어촌 52.9% < 도시 98.0%
-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00) : 농산어촌 20.4% > 도시 4.6%

(주)미디어리서치는 '04.8~11월중 표본 5,000가구(농산어촌 3,500, 도시 1,500)를 대상으로 농산어촌의 삶의 질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그림2-2]와 같이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쾌적성과 지역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보다 높았으나, 농산어촌은 ①문화·여가시설(9.6%), ②교육(11.9%), ③복지(14.8%), ④소득(15.6%)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았음.



[그림2-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조사결과

셋째,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도시와 농촌의 동등한 교류를 어렵게 하고 도시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으로 잘 못 인식 되어지면서 도시민 특히 도시의 어린이는

농촌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여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분리가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의 큰 원인이 될 것임.

넷째, 농촌은 식량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식량기지의 주인인 농민의 위상이 낮아진 후 영농의욕이 상실되어 영농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지구온난화의 지속으로 인한 식량전쟁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식량기지로서의 농촌 복원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1990년 국토면적 중에 논과 밭인 경지면적은 2,109천ha로 21.2%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4년에는 경지면적이 1,836천ha로 273천ha이 줄어들고 점유비도 18.4%로 낮아짐.

다섯째, 생태계 균형자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음. 우리나라 농경지가 단순히 식량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경자원으로서의 가치 또한 대단함. 벼농사를 수행할 때 공급되는 산소량, 이산화탄소의 흡수, 홍수조절기능 그리고 농촌의 사회적 가치, 도시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공간공급 등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나,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현재적인 경제가치에 지나치게 바탕을 둔 정책을 수행하려 하고 있음.

2.2. 농촌지역개발의 필요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본원적인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가정책철학에 따라 크게 좌우 될 수 있을 것임. 그것은 한 국가 내에서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농촌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농촌개발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첫째, 좁은 국토공간에서 정주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하여 농촌개발이 필요함. 세계의 300여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면적으로 보면 약 70~80위 정도이나 인구로 보면 15위 내외로 국토면적에 비해 특정지역의 인국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좁은 것은 아닌데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80%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토가 더 좁아 보임. 농촌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촌에 계속 거주하게 하고, 과밀하게 살고

있는 도시주민을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정주기반도 도시에 못지않게 정비해야 함. 이러한 농촌정주기반조성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책 과제인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임. 특히 주 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시민들에게 피로를 회복시켜줄 최적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촌개발이 필요함.

둘째, 다가오는 식량안보시대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농촌을 개발하여 식량기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지구온난화시대의 식량안보는 자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자급이라는 것을 보고한 미국 국방성의 비밀보고서를 보면 그 중요성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 를 들여다보면 [한겨레신문 2004.02.22(일)]

영국 신문 <옵서버>는 22일 미국 국방부가 녁 달 동안 대외 공개를 꺼려온 지구온난화 관련 비밀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밝히고, 이 특별보고서는 향후 전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이로 인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투쟁 가능성 등을 광범하게 예측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이 종교나 이데올로기, 민족적 자존심을 둘러싼 다툼보다는 급변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싸움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가안보 개념을 바꾸도록 촉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세계 해안선이 달라진다= 2007년까지 맹렬한 폭풍우가 네덜란드의 해안선을 강타해 많은 주거지역을 수몰 시킬 것이다. 헤이그 같이 큰 도시들도 물에 잠길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크라멘토강 유역의 총 적토 삼각주 섬들이 물에 휩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길의 크기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2010~2020년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연평균 기온이 6°F(3.3°C) 떨어져, 영국은 더 추워지고 더 건조한 날씨가 될 것이다. 날씨 패턴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비슷해질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영국과 북유럽의 겨울을 짧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영국 등의 겨울철 온화한 날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멕시코만 난류인데 이 난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망라한 전 해양의 장대한 심해해류 순환에 좌우되며, 지구온난화는 빙하 등을 녹임으로써 이 심해해류 순환체계를 무너뜨려 멕시코만 난류에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0년까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최고기온이 90°F(32°C)가 넘는 날들이 지금보다 3분의 1 더 늘어날 것이며, 폭풍우와 가뭄, 폭염 등은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날씨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다. 대규모 한발이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강타하고, 미국 중서부 지역은 강력한 바람으로 토양유실이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의 엄청난 인구나 식량수요는 특히 대재앙이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생존투쟁이 치열 해진다=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인구가 줄 때까지 전쟁과 기아가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앞으로 20년 뒤 지구가 지금 수준의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며, 폭동과 국내 갈등이 인도와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를 붕괴시킬 것이다. 물 확보를 위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미 북아프리카의 나일강과 유럽의 도나우강, 남미의 아마존강에서 물 분쟁이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땅에 살던 사람들과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황폐해진 곳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대규모 난민, 보트피플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부자나라는 이들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사실상 쇄국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특히 유럽은 해안과 국경선에 몰려드는 대규모 불법 입국자들을 처리하느라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이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흑한으로 변해 버린 날씨를 피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고, 폭염과 가뭄에 시달린 아프리카 사람들도 살길을 찾아 남부 유럽으로 몰려올 것이다. 핵무기 확산도 불가피해진다. 한국과 일본, 독일은 북한, 이란, 이집트처럼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며, 이스라엘,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셋째, 생태계 균형자로서 농촌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촌개발이 필요함. 잘 정돈되고 활력 있는 농촌만이 생태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벼농사만의 환경가치를 “홍수조절효과, 토양 유실경감효과, 대기냉방효과, 대기정화효과, 지하수함양효과”⁵⁾ 등으로 보고 계량화할 수 있는데 농업·농촌의 종합적인 가치는 “농촌활력제고, 지역균형발전, 환경 및 생태계보전, 농촌어메니티보전, 재해경감” 등의 가치를 “연간 약 28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산림의 경우는 “연간 약 50조원”으로 보고 있어 농림업만 해서 연간 약 80조원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제공하고 있음⁶⁾ 이것은 단순히 돈의 개념으로만 볼 수 없는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한국인을 비롯한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우리나라에서 논농사를 등한히 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농촌을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임.

넷째,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문화의 본래 뿌리는 농촌마을 그리고 농촌사회였음.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고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가면서 우리문화의 샘은 고갈되어 가고 있음. 사라져가는 농촌지역공동체문화를 복원, 우리문화의 근원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풍부한 문화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농촌 특히 농촌마을의 건강을 되찾게 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는 일임.

5) 엄기철 외 4명, 논·농의 공익기능, 한국토비지, Vol.26(4), 1993, pp.314-333.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용역보고서, 2004. 12, p.268.

제3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연혁 및 현황

3.1. 사업 추진배경

1990년부터 773개 면을 대상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면당 30억원 수준을 지원하였으며, 1991년~2004년 기간에 190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및 주택정비 등 기초생활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면단위로 소액 분산투자 되고, 과도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농촌다움을 상실했다는 비판 속에 농촌의 생활환경은 아직도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머물고 있음.

특히 농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농과 과소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도로와 교통 등의 발달로 인근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면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관광 및 여가 활동 증가에 따른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농촌다움의 증진이 농촌개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지역특성에 따른 농촌 개발방식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등 농촌환경이 변화하면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2004년부터 3~5개 농촌마을을 소권역으로 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그 권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권역을 특성화하고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이 가서 생활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

3.2. 사업 개요

가. 목적

2004년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2005년도의 지침에서는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유지를 도모”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좀 더 구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시행지침이 실행성을 높이도록 발전하였는데 [표3-1]에 그 변화가 표시되어 있음.

[표 3-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행지침의 발전

	목 적	기 본 방 향	장기사업목표
'04년도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 지역 주민의 “살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지역주민과 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식 개발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소권역을 우선 지원
'05년도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단위로 개발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 내 관련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식으로 추진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구축 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동 일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구하는 목적은 유사하나 추구하려는 목적을 구체화시킴 농촌정주공간형성에 있어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와 더불어 소득기반확충을 예시적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특성화개념을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구축으로 명확히 함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개발계획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명시하여 구체화시킴 다원적 기능 확충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명확히 함 	없 음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목적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기본방향에서는 지역 특성화에 있어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구축으로 명시하여 소득기반사업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임을 강조함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강조함 	

기본방향을 보면 최초의 다원적 기능 확충이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 개발로 환경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지역의 특성화개념도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으로 개선하여 주민소득 증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우선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여 추진체계를 정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성공성을 높이게 되었음.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장기사업목표 >

- '04년부터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소권역을 우선지원
 -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 3~5개 마을(법정리, 예시적규모)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소권역내 포함되는 마을 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다.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9조 내지 제40조.

라.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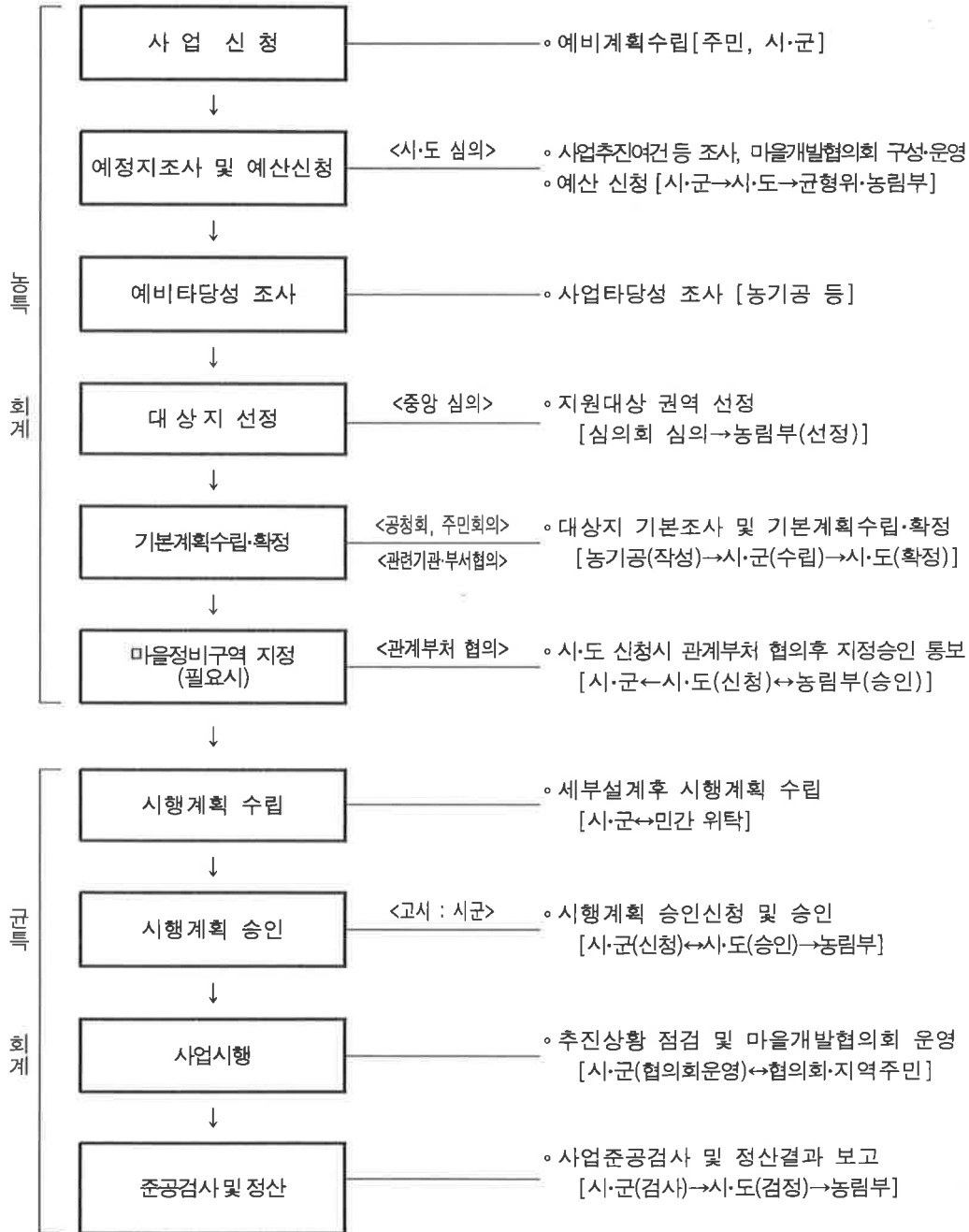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별표1]

-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 공간정비 추진

나) 지원조건

- 보조사업비
 - 농촌마을개발 : 권역당 3~5년간 70억원 수준 지원 (국고80%, 지방비 20%)
 - ※ 권역 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 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의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 농특회계로 별도 지원
 - ※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포함
- 용자사업비 : 호당 지원기준은 정주기반확충사업 지침내용을 준용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0백만원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 : 호당 5백만원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 정주권면 주택신축·개량 용자금 지원 포함

마. 사업추진체계



[그림3-1] 사업추진체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된 2005년부터는 기본계획수립비는 농특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추진체계

바. 연도별 지원계획.

[표3-2]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목 표	'04까지	'05계획	'06 ~ '13	비 고
사업량	마을종합개발	1,000권역	16	20	964	착수기준
	농촌주택정비	16,610호	1,400	780	14,430	
사업비	계	6,317,300	52,000	75,175	6,190,125	
	국 고 보 조	4,693,200	20,000	48,870	4,624,330	
	지방비 보조	1,148,100	4,000	10,705	1,133,395	
	국 고 용 자	476,000	28,000	15,600	432,400	

사. 2005년 사업비

[표3-3] 2005년 사업비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계		75,175	64,470	48,870	15,600	10,705	-
◦농촌마을종합개발		59,575	48,870	48,870	-	10,705	-
- 사업비(균특)	36권역	53,525	42,820	42,820	-	10,705	-
·계속사업	16권역	31,625	25,300	25,300	-	6,325	-
·신규사업	20권역	21,900	17,520	17,520	-	4,380	-
- 계획수립비(농특)	40권역	4,000	4,000	4,000	-	-	-
- 예비타당성조사(농특)	50권역	2,000	2,000	2,000	-	-	-
- 행정 경비(농특)	1식	50	50	50	-	-	-
◦농촌주택정비(농특)	780호	15,600	15,600	-	15,600	-	-

3.3. 사업추진 연혁

공식적으로는 2004년도 정부예산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을 반영(2003년 9월)하면서 출발했는데, 2003년 11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개선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구체화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4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과 추진계획을 각 도에 통보하고 도별로 사업예정지 선정하여 2004년 1월 30까지 추천하도록 하였음.

사업추진근거법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 제정 공포됨으로서 본 사업이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2004년 3월 26일 중앙지역개발심의회에서 시·도가 신청한 67개 권역 중 36개 권역을 선정, 4월 1일 통보하였고, 8개소는 민간에 위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립하게 하였음.

농림부가 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 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구성된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및 실무자문위원회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권역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전문가평가단으로 하여금 권역별 기본계획(안)에 대해 1, 2, 3단계 평가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체인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지도자 및 시장군수 합동 워크숍을 개최('04.7)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올바른 이해 및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토의하고, 36개 기본계획수립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개최('04.8~9월)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12월에는 마을별 국내 선진마을 견학을 실시하였음.

2005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은 예비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하였는데, 본 사업을 시작한 2004년부터 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추진연혁을 [표3-4]와 같이 정리함.

[표3-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연혁(요약)

월.일	제 목	주 요 추 진 내 용
2003년		
9. 30	'04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 '0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안) (사업착수 8지구, 계획수립 16지구)
12. 30	'04정부예산(안) 국회 본회의 심의 확정	- 사업착수 (16지구), 계획수립 (36지구)
12. 31	'0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통보	- 도별로 사업예정지 선정하여 '04. 1. 30까지 추천
2004년		
3. 5	'농림어업인살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3. 10	제1차 중앙지역개발심의회 심의	- '04사업대상지 선정 방법 및 추진일정 협의
3. 26	제2차 중앙지역개발심의회 심의	- 69개 권역중 36개 권역 선정
4. 1	'0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통보	- '04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 36개 권역 선정 통보 - '04년도 사업착수대상 16개 권역 선정 통보
5.29 -30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농정현장 방문 및 간담회(1차)	- '04. 5.29(토)~30(일), 남원, 구례, 하동 권역 방문 - 바람직한 농촌발전방향과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모색
7. 14	농촌지역개발 실무자문위원단 농정현장 방문(1차)	- '04. 7.14(수), 경기 양평 연수권역, 강원 화천 토고미 권역 - 대상지역 현황 및 기본계획(안) 작성상황 파악, 토론
7.26 -30	지역별 마을지도자, 시장군수 합동 워크샵 실시	- '04. 7.27~30, 경기강원, 충남북, 전남북제주, 경남북 - 농촌마을종합개발 관련 전문가특강, 농촌마을 가꾸기 우수사례 발표 및 참여자 종합토론
8. 2 -9. 9	지역주민 및 관련 공무원 순회교육 실시	- '04. 8. 2~9. 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6개 권역(2,311명) - 마을주민과 공무원들의 참여도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역량 강화 - 전문가 특강, 사례발표 및 주민과 대화 등
8. 12	농촌지역개발 실무자문위원단 농정현장 방문(2차)	- '04. 8.12(목), 충북 음성 감곡권역, 충남 부여 반산권역 - 대상지역 현황 및 기본계획(안) 작성상황 파악, 토론
8.21 -22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농정현장 방문 및 간담회(2차)	- '04. 8.21(토)~22(일), 단양, 안동, 문경 권역 방문 - 바람직한 농촌마을개발 모델 정립 방안 모색
9. 10	농촌지역개발 실무자문위원단 농정현장 방문(3차)	- '04. 9.10(금), 전북 김제 광활권역, 전남 함평 상곡권역 - 대상지역 현황 및 기본계획(안) 작성상황 파악, 토론
'04.11 ~'05.5	권역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평가(3단계) 실시	- '04.11월~'05.5월 - 권역별 현장답사 및 기본계획(안) 설명, 기본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토론
11. 13 -14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농정현장 방문 및 간담회(3차)	- '04.11.13(토)~11.14(일), 화천 토고미권역, 이천 석산권역 - 권역별 사업추진방안,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종합토의
12.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문가 초청토론회	- '04.12.23(목), 농림부장관, 농기공사장 전문가 6인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방향 토의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과 장애요소에 대해 논의
2005년		
3. 21	'05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 전문가 회의(1차)	- '05. 3. 21(월) - '05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및 평가지표
4. 1	'05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 전문가 회의(2차)	- '05. 4. 1(금) 10:00 ~ 13:00 - '05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및 보고서내용
5. 13	'05기본계획수립 대상지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50권역을 대상으로 농기공과 외부전문가 공동으로 조사
6. 30	'04기본계획수립 착수한 36개 권역별 기본계획(안) 제출	- 36개 권역별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후 지자체에 제출
7. 30	'05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전체회의 개최	- '05. 7.30(토) - '05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한 권역별 평가내용 심의
8. 12	'05기본계획수립 대상지선정 통보	- '05기본계획수립 40개 권역('06년 사업착수 20개권역 포함)

[표3-5] '04기본계획수립 착수 대상권역(36개)

구 분	권역수	권역명
계	36	
경 기	4	양평 연수, 이천 석산, 안성 강촌, 연천 초성
강 원	4	화천 토고미, 인제 용대, 홍천 화동성동, 철원 자등
충 북	2	음성 감곡, 단양 가곡
충 남	5	홍성 문당, 예산 둔리, 청양 서정, 부여 반산, 공주 양화
전 북	4	남원 혼불문학, 고창 선동, 김제 광활, 부안 우동
전 남	5	장흥 수문, 구례 방광, 함평 상곡, 보성 오봉, 장성 황룡
경 북	6	문경 상내, 안동 중가구, 영양 원리, 영주 부석사, 영덕 도천, 예천 회룡포
경 남	5	하동 평사, 함양 이천, 합천 영전, 사천 무고, 창녕 구계
제 주	1	남제주 감산대평

[표3-6] '05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및 '06사업착수 대상권역

구 분	'05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06사업착수 대상권역
합 계	40	20
경 기	화성 고정, 파주 장파금파, 여주 하품, 용인 독성 (4)	화성 고정, 파주 장파금파(2)
강 원	평창 상안미, 강릉 언별, 원주 황둔송계 (3)	평창 상안미, 강릉 언별(2)
충 북	영동 지내, 충주 안보사문, 제천 포전송한, 증평 광덕 (4)	영동 지내, 충주 안보사문(2)
충 남	서산 양길, 서천 길산, 태안 신원 (3)	서산 양길, 서천 길산(2)
전 북	장수 오산, 군산 금강철새, 무주 청량, 정읍 태산선비 (4)	장수 오산, 군산 금강철새(2)
전 남	무안 예술인촌, 강진 송월, 담양 창평, 곡성 돌실, 나주 철야, 영광 두우, 함평 가덕, 화순 운주 (8)	무안 예술인촌, 강진 송월, 담양 창평(3)
경 북	봉화 서벽, 청송 신촌, 상주 문창안용양범, 고령 진촌, 성주 선남, 울진 온정, 청도 성곡 (7)	봉화 서벽, 청송 신촌, 상주 문창안용양범(3)
경 남	남해 신전, 거제 거림, 함안 월촌, 거창 월성, 김해 생철, 산청 생초 (6)	남해 신전, 거제 거림, 함안 월촌(3)
제 주	북제주 판포 (1)	북제주 판포(1)

※ '06년도 사업착수 권역은 '06예산요구안 기준

3.4. 사업대상지 현황

[표3-7]은 2005년 10월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36개 권역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임. 36개 권역의 평균면적은 1,697ha이고 법정리는 2.8, 행정리는 5.4, 참여마을 수는 8.8, 가구 수는 456세대이고 이중 농가세대는 286세대, 인구는 1,178명임.

36개 권역의 개발방향을 보면 농촌관광형 14권역, 기초생활환경정비형 5권역, 소득기반확충형 7권역, 복합형 10권역으로 농촌관광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표3-7] 기본계획이 승인된 36개권역 현황

도별	권역명	면적(ha)	법정리 수	행정리 수	자연마을	기구수 (호)	농가수 (호)	인구수 (명)	비전
경기 (4)	양평 연수	2,430	2	3	6	324	305	781	삶의 가치가 넘치는 꽃피는 산골마을
	이천 석산	920	5	6	6	315	218	799	농촌체험관광·친환경농산물직거래·교육의 메카
	안성 강촌	892	3	8	10	395	331	1,042	안성맞춤 풍산개 마을
	연천 초성	883	1	4	4	877	350	2,072	남과 북이 만나는 청산 김치마을
강원 (4)	화천 토고미	2,620	3	3	4	216	136	531	도시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농촌
	인제 용대	2,104	1	3	5	573	241	1,535	금빛황태와 함께, 역사체험과 함께하는 황태1번지 용대마을
	홍천 화동	5,226	3	5	16	390	250	1,066	자연환경연구공원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축산마을
	철원 지등	5,670	1	6	6	841	267	2,341	백골문화생태체험관광 : 지등마을
충북 (2)	음성 감곡	2,471	3	5	14	1,342	536	3,923	햇살 머금은 사람들이 사는 복숭아 빛 마을
	단양 가곡	4,672	3	5	14	310	197	767	생태경관으로 도약하는 문화공동체, 가곡마을
충남 (5)	홍성 문당	660	3	5	12	237	184	694	친환경 농업의 메카
	예산 둔리	1,207	2	4	8	399	252	1,294	푸른 자연환경과 맑은 물,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녹색마을
	부여 반산	685	4	5	11	551	274	1,521	상생과 조화의 湖 畔 型 곤충생태마을
	공주 양화	835	1	2	8	293	94	573	민속의 향기와 흙내음의 고장, 양화
	청양 서정	1,746	5	5	16	597	270	1,767	하늘빛 땅빛, 물빛 마을
전북 (4)	고창 선동	684	3	8	8	260	220	643	청정마을 : 맑고 깨끗한 마을, 정답고 따뜻한 사람들
	남원 혼불문화	780	3	5	6	237	213	562	혼불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부안 우동	684	1	4	4	147	111	341	변산길목 쉬어가는 우반동, 전통속에 함께하는 우반동
	김제 광활	3,208	3	20	8	817	584	2,099	황금빛 지평선 '광활'
전남 (5)	장흥 수문	690	3	5	5	537	239	1,367	산-들-바다가 어우러져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대지골
	구례 방광	1,839	3	6	6	483	414	1,132	지리산 참새마을, 「참새아-참새마을」
	보성 오봉	2,354	3	11	11	865	762	2,046	다향 보성의 공룡마을 오봉
	장성 황룡	428	2	4	6	246	236	607	달빛 머금은 황룡강변 과수마을
	함평 상곡	888	2	3	4	165	107	372	나비·생태도시의 전원·향토마을
경북 (6)	문경 상내	1,680	2	4	7	224	195	510	인간과 자연의 만남 문경 상내
	안동 종기구	498	2	3	6	256	190	705	전통농생마을, 안동 종기구 마을
	영덕 도천	1,753	2	3	3	137	118	265	동해바다 달빛마을 도천
	영주 부석사	2,525	3	6	13	475	377	1,276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능금마을
	영양 원리	1,541	3	5	13	440	271	1,051	전통과 문화이 있는 청정휴양 관광지
	예천 회룡포	1,226	4	8	21	925	410	2,244	풍요와 물빛이 감아도는 회룡포 용궁마을
경남 (5)	하동 평사	965	5	10	10	521	286	1,288	문화와 전통, 자연이 숨쉬는 섬진강변 생명마을
	함양 이진	910	5	5	5	325	288	751	놀이와 농경문화가 어우러진 농촌체험마을
	사천 무고	1,024	2	3	5	216	173	562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살기 좋은 마을
	창녕 구계	1,105	2	2	6	312	156	818	역사와 녹음이 숨쉬는 마을
	합천 영전	2,390	5	10	26	607	483	1,553	청정 황강과 개머리가 어우러지는 수변휴양농촌
제주	남제주 감산	885	2	2	4	568	560	1,509	전통문화를 간직한 자연마을 감산, 대평
합 계		61,078	100	196	317	16,423	10,298	42,407	
평 균		1,697	2.8	5.4	8.8	456	286	1,178	

제4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4.1. 정책의 정체성 정립 및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확보방향

4.1.1. 정부 유사사업과 농촌종합개발사업과의 관계

[표 4-1] 은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으로 매우 다양하면서도 지역개발이라는 범주 내에서 보면 유사성이 있으며 [표4-2]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

[표4-1] 부처별 농촌개발사업 내용 요약

주관	사업명	지원 규모	주요 사업 내용	비고
국립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당 70억원 (국비 80%, 지방비 20%)	◦ 기초생활시설, 경관개선, 소득확충 및 주민교육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시설 설치	
	정주권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면당 3~5년간 30억원 (총 785개 정주권면)	◦ 마을내도로, 연결도로, 상·하수도 정비 ◦ 마을회관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 및 농촌주택정비 등 * 2005부터 균특회계사업 (2004까지 지방양여금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2~3년간 30~50억원	◦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 마을회관,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2005부터 균특회계사업 (2004까지 지방양여금사업) * '05년부터 다양한 전원마을조성 방식으로 전환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사업	마을당 2억원	◦ 농촌관광을 위한 여가체험시설 확충 및 마을경관 조성	
행정자치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동당30만원) 마을정비(지구당1~3억원) 등	◦ 주택개량, 빈집정비 ◦ 주거환경개선지역의 마을정비 등	
	소도읍육성사업	연간 30억 (3년간 100억원수준(국고))	◦ '72부터 194개읍에 주거환경개선, 가로정비, 유통시설정비 추진	
	오지종합개발사업	지구당 50억원 수준 (총 399개 오지면)	◦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정비 ◦ 주거환경개선, 소하천정비 등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서당 연간 5억원수준 (총 410개 도서면)	◦ 전기·급수·교통, 어항농업·저장시설, 환경위생, 의료·복지시설 등 추진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마을당 평균 20억원	◦ 사업예정지 공모 방식,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마을단위 종합개발	'03중단
	신활력사업	전국234개 지자체 중 70개 시와 군, 낙후도에 따라 3년간 20~30억원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 위주 3년간 일정책 지원, 3년까지 선정, 조기 졸업제 도입으로 인센티브 제공	여러부처 공동
문광부	문화역사마을사업	1단계 사업당 1억원, 2단계 사업당 10억원~80억원	◦ 지역문화발굴·보존·계승사업, 현장체험프로그램개발, 문화콘텐츠사업, 향토문화 보존·계승사업, 교육·홍보·체험·문화관광활성화연계 S/W개발	
농촌진흥청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업·목욕실(농가당490만원용자) 친환경화장실(개소당400만원보조)	◦ '97년부터 행정부에서 농진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 추진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마을당 2억원	◦ 전통시설, 농특산물생산기공, 마을환경정비	
산림청	산촌개발사업	지구당 3~4년간 14억원 수준	◦ 생산기반, 소득원, 생활환경정비 등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당 평균35억원	◦ 어선계류, 방파제선처리, 직판장 등	
	어촌체험마을조성	개소당 5억원	◦ 안내센터, 마을어장 진입로, 주차장 등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마을지정, 홍보	◦ 자연환경보전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예산신청 시 우선배정	

[표4-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요약

구 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29조 내지 제40조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사업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마을 법정리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
사업비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0억(국고80%, 지방비20%) • 기본계획수립비(권역 당 1억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먼지역 • 동일 생활권 및 영농권 • 주민 개발의지 높은 곳 • 농촌성을 지닌 지역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단위 예비계획서 및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후 신청→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선정→기본계획수립(필요시 마을정비구역 지정)→세부설계→사업시행
사업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및 군수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수립 주체 - 시장·군수(기본계획안 작성- 농업기반공사) ※ 수립내용 - 지역자원활용계획, 인력육성계획, 소득원 확충계획, 권역특성화 계획 등 • 세부설계 - 시장·군수
계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서에 의한 단계별 추진 • 주민교육 - 특강 및 전문가 초빙, 선진지 견학 등
사업비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메뉴 제시 • 보 조(국고+지방비) : 기초생활환경비, 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경관개선 등 • 용 자 : 농촌주택정비(신축, 개량) • 자부담 : 주민공동이용시설(시설비의 20%)
사업비 집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및 군수가 직접수행 또는 사업위탁에 의한 일괄집행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마을개발협의회 및 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활용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조성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여 농촌사회유지 도모

4.1.2. 정부 유사사업과의 연관성

낙후된 농촌지역을 대상공간으로 한다는데 점에 있어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농촌의 정주기반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정주기반확충사업, 도농교류 촉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사업내용을 차별화 하거나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투자의 비효율성 초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도외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또한 산발적인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갖게 되는 정책적 어려움이 있음.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근거하여 유형화하면 다음 [표4-3]과 같음 7)

[표4-3] 농촌개발사업의 유형화

일반 농촌지역 정주기반확충사업	낙후 농촌지역 정주기반확충사업	도농교류 등 소득기반조성사업	기 타
소도읍육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신활력지역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보조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자료 : 송미령, 박주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방안, 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P70/2004.9.10.

사업의 추진절차와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보면 사업대상이 법률 등에 의하여 사전에 지정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지원, 도서종합개발, 오지종합개발, 정주기반확충(전원마을조성), 신활력지역개발, 소도읍육성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지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공모방식을 취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등이 있음.

접경지역 지원, 도서종합개발, 오지종합개발, 개발촉진지구나 정주기반확충사업 등은 낙후농어촌지역에 대한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접근방법 하에 미래의 한국농촌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파급효과가 큰 농촌마을 권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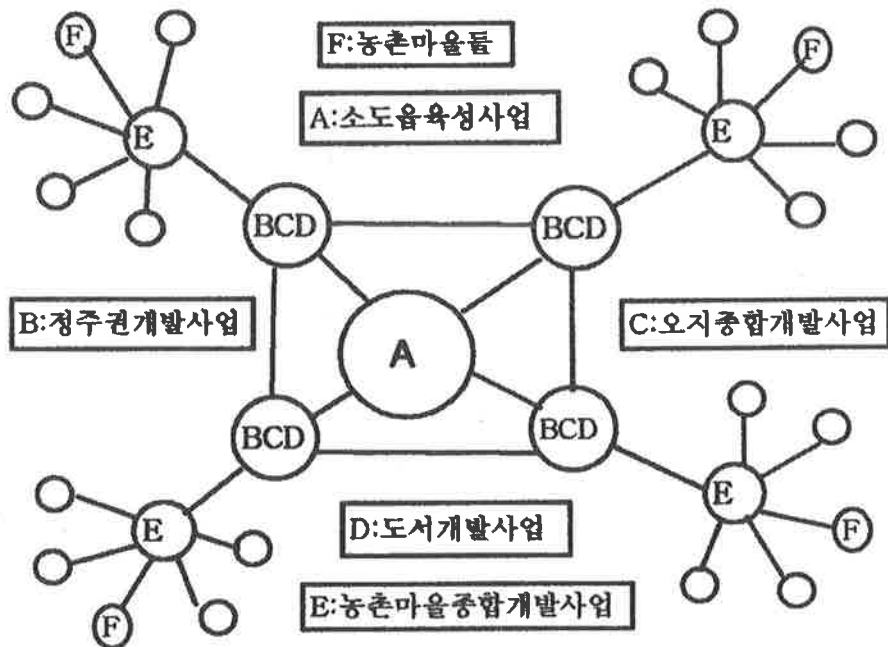
7) 송미령, 박주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방안, 농촌경제 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P70/2004.9.10.

4.1.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방안

가. 농촌 정주공간 구조개편의 침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그림4-1]과 [그림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낙후된 농촌의 정주기반을 개선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농촌정주 최소단위인 마을과 면단위 개발의 중간단계 정주공간조성사업으로 농촌 정주구조를 단위마을로 할 것인가 면단위로 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위상의 마을 개발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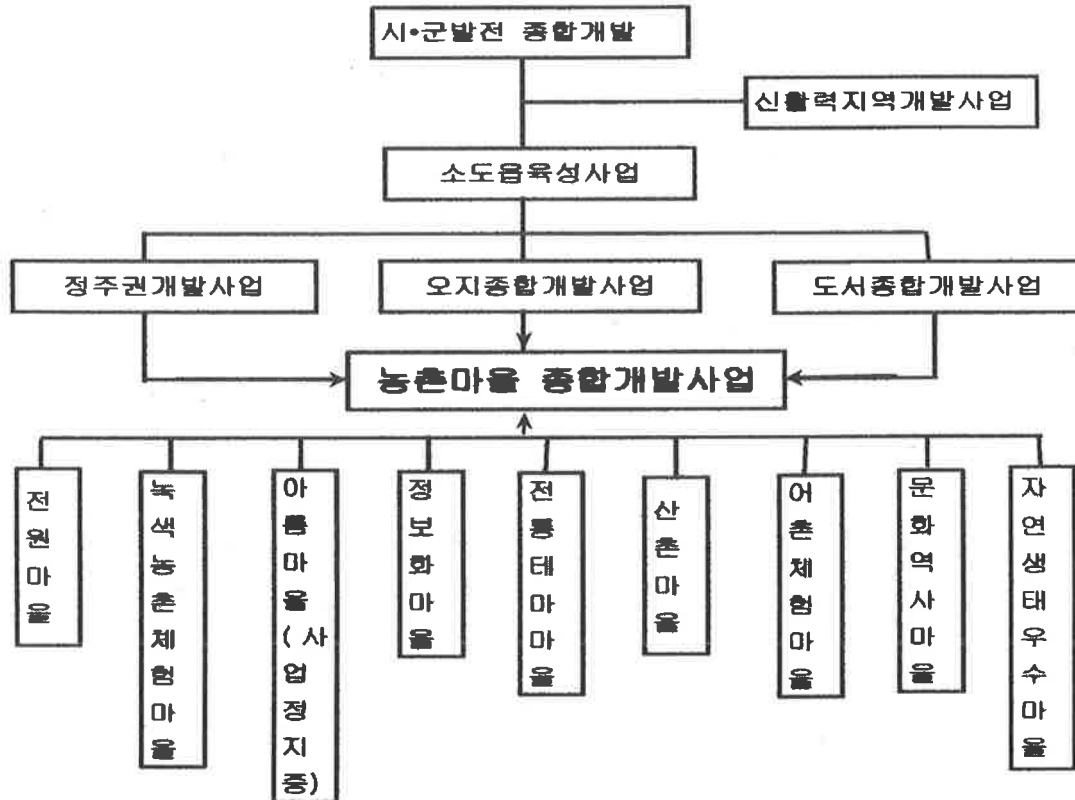
하나의 마을로서는 삶의 질을 생각하는 공간구조조성이 어려운바 최소한의 규모의 경계를 얻고 지역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마을단위와 면단위의 중간 규모인 3-5개면의 지역 종합개발로 사업권역의 재정비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고, 삶의 질이 보장된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변화를 유도하는 침범이 되는 사업임.



[그림4-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공간체계 위상

공간체계상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최초 정주공간단위인 마을들을 1차적으로 묶는 차상위 공간계획 대상이고, 차상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인 정주기반확충사업, 도서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대상공간의 일부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그림4-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전원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마을, 어촌체험마을, 문화역사마을 그리고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의 사업내용을 전부 포용할 수 있고, 정주기반확충사업, 도서개발 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내용의 일부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몇 개 마을을 아우르는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임.



[그림4-2] 군지역 농촌지역개발 공간체계

나. 장기적이고 단일 주제가 아닌 종합적 농촌지역개발

마을단위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의 소득원개발에 목적을 두고 1~2년에 걸쳐 추진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

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사업은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차후 환경부 지원 사업이나 다른 부처지원 사업신청에 유리한 입장을 갖는 이익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반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5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공동체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몇 개 마을이 소권역을 형성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소권역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 정주에 필요한 단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음.

다. 과정을 중시하는 상향식 농촌 공동체 복원 사업

이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는 개인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며, 면이나 시·도가 아닌 권역 내 주민공동체로 하여 스스로의 여건을 인식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발휘, 협동정신과 책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건강한 농촌지역사회를 만드는 내발적, 상향적 농촌정주공간조성사업임.

권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예비계획서를 작성함은 물론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의 주체도 권역의 주민들인 것임. 이제까지 이러한 정책시행은 전례가 없었음.

본 사업의 단계별 평가 기준은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정도에 초점이 주어져 있으며 책임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민들의 노력은 희박해진 농촌공동체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라. 농촌다움과 마을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농촌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특히 농촌다움과 그 권역이 특성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소 권역을 하나로 묶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익혀왔던 각 분야에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잠재된 혁신역량을 제고시키는 사업임.

마. 농림부 및 다른 부서의 유사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 농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소득기반 확충사업, 농촌여성 및 노인 복지 프로그램까지 이루어지는 부문별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중복성 투자를 예방할 수 있어 예산의 절감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촌주민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표[4-4]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검토를 위한 자료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림업 관련 31개 사업 중 22개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 추진할 경우 사업 간의 성공률 제고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9개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표4-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농림부 사업

사업명	목적	내용	신청 및 결정시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
1. 밭 기반정비	◦ 소득증대	◦ 채소류 주생산지 생산기반구축	전년 1~3월	◦ 연계추진(소득증대) ◦ 용수원개발 및 이용시설 ◦ 경작로 정비· 밭 경지정리 ◦ 고랭지 밭 비점오염저감대책
2. 경지정리사업	◦ 농업기반정비 ◦ 농촌환경개선 ◦ 농업경쟁력 제고	◦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의 기계화, 규모 현대화 맞게 정비(대구획 경지정리)	전년 12월 ~ 당해 8월	◦ 영농권 내 대구획정리사업(소득사업)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농업생산성 향상 ◦ 농산물 고품질 유지 ◦ 농촌 생활환경 개선	◦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농경지내 주요농로 및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 확포장. 3000㎡ 이상)	전년 11월 말	◦ 영농권 내 사업으로 연계가능
4. 배수개선사업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예방으로 안전 영농	◦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 영농권 내 사업으로 연계가능
5. 방조제 개보수사업	◦ 재해예방 ◦ 효율적 유지관리	◦ 재해우려가 있는 방조제 개보수		◦ 권역내 재해우려 방조제가 있는 경우 연계가능
6. 농업용수개발사업	◦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 기계화에 기여	◦ 국지적인 가뭄발생지역 ◦ 소규모 용수개발 ◦ 지표수 보강개발		◦ 가뭄 상습지역이 있는 영농권의 경우 연계가능
7.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과 극대화	◦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의 권역 중심 시행		◦ 농업분야 소득기반은 이 사업을 활용하거나 이 사업지구만을 우선고려, 나머지는 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연계('06이후 신규사업 계획 없음)
8. 지역특화사업	◦ 농가소득 증대 ◦ 지자체 책임, 지속적 투자유도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 품목 육성, 발전	전년 12월 30일 ~ 당해 1월30일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지역고유향토자원 활용, 친환경관련농업,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는 본 사업과 같은 전략
9.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	◦ 벼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 미질향상 ◦ 쌀 유통구조 개선	◦ 벼의 수집, 건조, 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자동화 시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기존 RPC 운영자에 한한 지원으로 큰 연계 없음
10. 씨감자 생산기반조성	◦ 우량씨감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	◦ 지정받은 지자체의 씨감자 생산시설 및 저장고		◦ 강원도 및 남제주군의 권역에 한해 일부 제한적인 연계
11.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 농산물 유통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	1월~3월	◦ 작목반에서 활용할 수 있어 연계가능
12.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	◦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육성	◦ 선별·저장·포장·상품시설의 일괄지원 ◦ 저온유통 기반구축 ◦ 주산지별 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1월~5월	◦ 2개이상 읍면 참여대상이어서 마을 권역에서는 어려움
13. 농수산물 소비자 유통기반 확충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시설 지원		◦ 마을권 단위에서 추진은 어려워 연계 없음
14.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	◦ 화훼류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집단화된 화훼생산 전문단지 조성 ◦ 경제적 규모의 수송체계 구축		◦ 김해시에만 한정된 사업으로 본 사업 연계 어려움

사업명	목적	내용	신청 및 결정시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
15.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 조기회복 및 건강 증진 활력있는 농촌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로회복시설 피로회복 및 건강 관리기구 설치 	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단위 사업으로 본 사업과 밀접한 연계
16. 농촌전통 테마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 활력화 도농 교류기여할 매력, 이미지 있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장에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접한 연계
17.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소득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장에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접한 연계
18.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전원마을조성사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면 소재지 활력증진사업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주택정비) 	4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 전체 정주기반사업은 본 사업과 연계됨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본 사업과 부분적으로 연계
19.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자연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암반관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부족 권역에는 활용 가능한 연계사업
20. 농공단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소득 증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중심의 농공단지 지정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권역인 본사업과의 연계는 없음.
21. 묘목생산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량전묘 생산 및 양묘산업의 생산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계획 조립용 묘목 생산 및 우량종자 보급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사업으로 활용 가능함
22. 산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양자원의 소득원 개발(생산기반) 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지역 사업에 연계됨
23. 목재제품 아이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우수성 홍보 목재문화 진흥 목재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 및 목제품에 지식, 정보제공 및 체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지역 사업으로 연계
24.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재이용 촉진 및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지역 사업으로 연계가능
25. 산림휴양공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 산림소유자 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내에 다양한 휴양 공간 조성·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지역 사업으로 연계가능
26. 도시숲 조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개선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숲 확충 녹생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과 연계 없음
27. 수목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유전자원 보전, 자원화 연구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수목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과 연계 없음
28. 산림박물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사료의 보존 및 홍보로 학습연구의 장(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박물관 조성 	2~3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지역에서는 연계가능
29. 생태 숲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자연학습과 산림 문화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 숲 조성 	2~3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지역에서는 연계가능
30. 임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생산성 향상 주민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지역에서는 연계가능
31.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 중심 클러스터 지원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범위 사업단위 추진이어서 마을 권역과는 연계 없음

4.2. 사업권역 설정방법

4.2.1. 현황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권역설정의 원칙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 유대감을 갖는 3~5개 마을(법정리, 예시적 규모)로의 구성”임.

본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리적인 동질성 등으로 주민 간 유대감이 있는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으므로 영농권이나 수리권이 같아서 마을 간의 역사적 연계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권역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일부 권역에서는 동일 들녘인데도 하천 또는 도로를 경계로 권역 경계가 설정된 경우도 있어 영농권에 대한 개념은 실제 주민들의 영농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

사업 초년도에는 예비계획서 마련기간이 짧았고 지역개발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정기준인 권역의 자원과 주민들의 유대감 그리고 지리적 동질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권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 또한 상향식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대상 권역은 법정지위를 갖는 권역이 아니어서 난개발방지 및 계획의 제도적 뒷받침 확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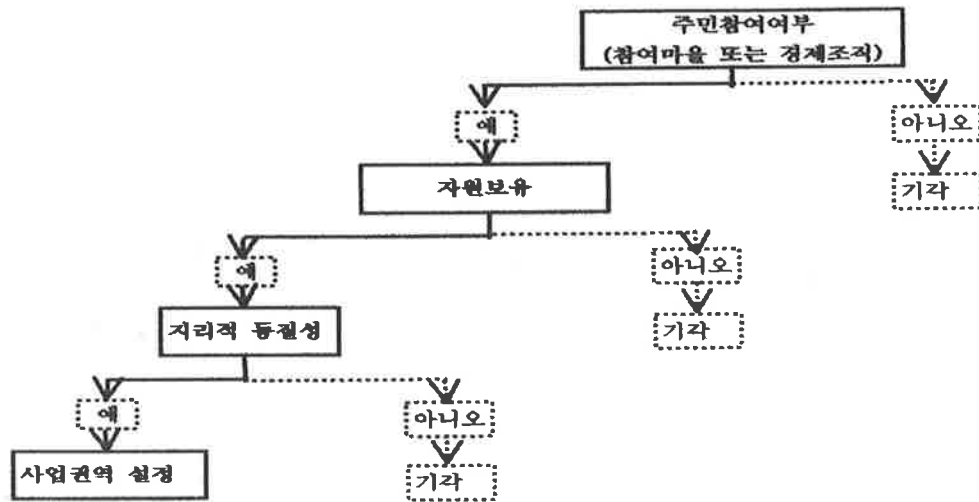
4.2.2. 개선방향

가. 기본원칙

면의 마을들을 기본 대상공간으로 하면서 도농교류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 지역의 농촌마을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면단위 중심성 강화를 위해 면소재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참여(주민참여와 마을간 협조, 경제활동단위 연계), 자원 활용(자원분포와 연계성; 자연 자원 및 인적자원)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지리적 동질성, 체험방문자를 2차 요인으로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추진사업의 의미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어느 경우든 권역의 규모(마을 수, 인구수 등)와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의 차등화지원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

나. 권역설정방법

권역설정은 [그림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단계로 이루어 짐.



[그림4-3] 권역설정 절차의 흐름

1) 제1단계: 주민참여 여부에 의한 1차 범위 결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상향식 개발사업인 바, 이 정신을 살리면서 사업의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마을들의 묶음임. 따라서, 우선 어떤 마을에 이 사업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이 지도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2~3명의 추진위원을 선출 받아 다른 마을과 공동추진을 위임 받게 되는데, 이들을 초기 추진자(Early Moderator)라 할 수 있을 것임.

이들 초기 추진자가 같은 법정리 및 인근 법정리의 마을 지도자들과 접촉하여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1개 법정리 이상 3개 마을 이상이라는 최소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인접마을을 확대해 감. 초기추진자는 인접한 마을부터 추진하되 참여가 확정된 그 인접마을의 인접마을 순으로 확대해 나감. 이 때 참여마을의 지도자들은 해당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을 (공동추진자:Co-moderator) 선출해야 함. 이때 공동추진자 마을은 다른 마을들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시켜야 함.

이로서 사업추진의 최소 구성마을이 확정되고 이들 마을에서 최소한의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다음단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할 것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2) 제2단계: 공동자원보유에 의한 1차 범위 보완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있는 마을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이들을 사업으로 묶어 갈 수 있는 그 권역의 공동 자원이 있어야 함. 이때 자원은 권역 고유의 물적 자원일 수도 있고 문화 또는 인적 자원일 수도 있음. 최소한 참여마을의 2/3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함.

이와 같은 공동자원이 참여구성마을을 벗어나 다른 인근마을까지 연계해 존재할 때는 그 마을을 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 마을의 지도자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도록 시도하고 만약 참여가 어려워지면 포기해도 관계없음. 공동자원은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하며, 이러한 자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임.

3) 제3단계: 지리적 동질성에 의한 공간획정(Delineation by geographical homogeneity)

권역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크게 동질성(Homogeneity)에 의한 방법과 결절성(Nodality)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동질성에 의한 접근법이 타당함.

※동질성에 의한 권역을 공식지역(Formal Region)이라고도 하는데 “선정된 기준(selected criteria)의 관점에서 획일(uniform) 또는 동질(Homogeneous)성을 가진 지리적 범위” 8)를 의미함.

동질성에 의한 권역을 설정할 때는 첫째, 어떤 지표와 기준을 가질 것인가? 둘째, 그 요소간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와 만약 가중치를 부여하면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설정에 필요한 동질성 평가 지표로는 다음을 제안함. 초등학교권은 기본전제이고 나머지 지표는 50%이상이 되는 곳으로 함.

8) John Glasson, An Introduction to Regional Planning, Hutchinson of London, 1974, p.20.

- i) 자녀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일 초등학교권
- ii) 동일 생산공간(들판, 산림 등) 사용
 - : 동일 생산 공간 사용세대수/ 마을별 세대 총수 × 100
- iii) “우리” 라는 주민 유대감
 - : 마을간 보행시간, 거리
- iv)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물을 같은 수로로 사용
 - : 동일 수로사용세대 / 마을 총 세대 × 100

이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마을별, 세대별 토지 및 사업장 소유 및 분포현황, 마을별 세대별 수로이용 현황, 그리고 각 마을에서 토지 및 사업장 경계까지의 보행시간(걸어서 걸리는 시간(분))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함. 다음으로 지리적 권역설정을 위해 제2단계까지 구성마을로 확정된 마을들의 세대별 토지와 사업장의 소유 및 분포 현황도를 지리정보체계에 의해 만들고 우선 모든 대지는 권역에 포함하고 모든 세대들의 생산 및 사업장의 토지를 권역으로 획정한 후에 동일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 각 마을에서 보행시간이 30분 이상인 곳을 배제하되, 최종적으로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계를 보정하여 권역으로 확정함.

※ 기본계획이 수립된 36개권역의 현황을 참조하면 자연마을 당 약 52세대,13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최소 3개 마을을 기본권역 단위로 하면 156세대, 402명의 규모를 상정할 수 있음. 상한선을 책정할 수는 없으나 참여 세대가 서로 안면이 있고 인사를 나누어 왔기 때문에 “우리” 라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세대수가 되어야 함. 36개 권역의 평균을 보면 456세대인데 이 정도 규모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임.

4.3. 사업신청 절차와 선정방법

4.3.1. 현황

200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향을 갖고 있는 마을들의 주민들이 모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장, 군수가 주관하여 구성한 “마을개발협의회”와 시장·군수의 도움을 받아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예정지조사를 신청토록 하고 있음.

농림부는 신청된 지역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와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을 조사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에 맞추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됨.

<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의 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소규모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
 - 인문 사회적으로 역사·문화적 특성이 같고, 주민 간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지역리더가 육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지역발전을 위해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 (쾌적성)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물, 유적, 풍습 등을 간직한 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 농외소득증대사업과 연계 시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

< 예비계획서 작성 >

예비계획서 작성은 주민들이 마을개발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침에 주어진 양식에 따라 A4용지 30매 이내(사진, 도면 별도)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을당 대표 5인 이상 선발(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하여 ‘주민 결의서’ 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주민 또는 주민대표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은 여기에, 수반되는 통계, 문헌, 사업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농촌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권역설정에 필요한 지형정보를 얻는다거나 GIS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것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권역개요, 지역개발관련 실적 및 추진계획 권역발전방향 등을 마련하는 과정도 해당 지자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임

“주민결의서” 작성의 경우, 마을 대표자의 서명과 회의 전경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언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차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 했을 때, 마을 대표와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

‘2005년도에 사업신청 된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를 하기 위한 200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농림부)’ 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 조사팀과 외부전문가가 약 3개월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표4-5]은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A~E등급으로 구분하여 농업기반공사 조사팀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종합평가표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평가 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항목별 평점에서 E등급이 3개 이상인 지역은 대상지 선정심사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있음.

조사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현황조사로 조사원이 현지에 상주하며, 수시로 지역주민 및 지도자 현황조사로 조사원이 현지에 상주하며, 수시로 지역주민 및 지도자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잠재자원, 지형여건, 관련사업의 추진, 주민 및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등을 행정자료와 주민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임

[표4-5] 예비타당성분석 항목과 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주요착안사항
권역설정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생활권·영농권 여부 마을 수, 가구 수 등 계획규모의 적정여부 법적·제도적 개발제한 요인 여부 등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분포현황, 활용실적 및 잠재자원 현황 자원활용 가능성 및 잠재성 친환경영농 및 공동조직체 운영실태 등 지역농업현황
사업추진 지역역량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의 지역개발 추진의지 공동사업추진실적, 공동기금운영실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실적 등 사업경영능력 마을개발협의회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적정성 및 파급효과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계획의 개발방향 및 마을별 발전방향의 적합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 관련계획과 연계성, 중복투자 및 분산투자 여부, 관련사업 연계성 여부 성장잠재력 및 인근지역 파급효과 등

다른 하나는 타당성 분석으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역설정의 적정성, 자원 활용성,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개선가능성 여부,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분석하여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전문가가 현황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지답사,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기공 조사팀에게 제출하여 공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짐.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상향적 사업정신에 따라 주민들이 마을개발협의회와 시·군의 도움 속에 작성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성격을 바탕으로 사업지침의 “추진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4.3.2. 개선방향

(가) 주민 친화적(User-friendly)사업신청 : 예비계획서를 「권역개발주민제안서」로 전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드는 사업신청방법은 주민들을 힘들게 하므로 이를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의 내발성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복잡한 예비계획서를 주민들이 만드는 권역개발 주민제안서 제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권역개발 주민제안서에는 추진위원회구성과 운영방안, 합의된 권역발전 기본방향, 특히 자원현황, 사업 참여 결의서, 필요시 경관조례제정 동의서, 시·군의 주민제안서 작성 지원(선진지 방문 등)내역 및 선정 과정 포함(부록 2 사업제안서 작성 메뉴얼)

(나) 책임연구기관 제도 도입 및 참여

권역개발주민제안서 작성, 기본 및 시행계획,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계획가의 식견으로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책임연구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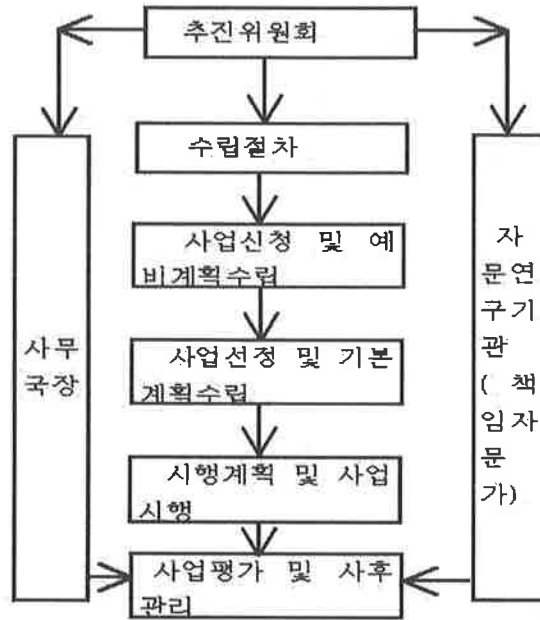
농촌(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계획) 관련 대학연구소, 법인인 전문연구소 및 자문회사 중 일정자격을 갖춘 곳을 농림부가 신청을 받아 "농촌개발 자문 연구기관"으로 3년 기간으로 지정함.

이 기관은 농촌지역개발분야의 자문 외에 해당 시와 군의 농촌개발 관련 기초자료 구축 및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하고, 지정기관은 지정기관이 속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상설된 상호 파트너가 되며 협약을 맺은 기관은 권역들의 주민제안서 작성 시 자문에 참여하고 선정된 권역에 대해서는 권역 당 매주 1회 이상 책임자문가(Master Planer)를 1명 파견,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자문을 수행하도록 함.

"농촌개발자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등은 3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자격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3년 기간으로 해당 권역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3년 동안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가로 선정된 권역 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또한 기관의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그 기초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농촌개발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인력을 포함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정된 권역에는 추가로 1명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그림4-4]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권역사무장과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직화 한 것임



[그림4-4] 사업추진과정의 전문가 및 사무장 기여

“농촌개발자문연구기관”은 농촌(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계획) 관련 대학연구소, 법인인 전문연구소 및 자문회사로서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는 자. 기관설립이 법적 뒷받침이 있는 자. 농촌지역(사회)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 심포지엄 개최, 자문 등의 업적이 있는 자. 상임연구원 또는 상임직원이 있는 자로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음.

농촌개발자문 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이 농촌지역개발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농촌개발계획 및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지속적인 구축과 관리를 통해 농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농촌마을개발 계획 관련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정확한 자문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사업의 성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관련 전문기관들이 안정되게 자료를 구축하고 연구하며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행정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임.

(다)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의 개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 2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⁹⁾와 용어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명칭을 「사업추진가능성 조사」로 변경하고 그 목적을 사업추진가능성파악 및 사업대상지구 순위결정으로 한정하고 방법을 단순화 하여야 할 것임.

사업 추진가능성 파악 및 사업대상지구 순위결정을 위한 조사는 주민이 제출한 주민제안서의 사실 확인과 제안서 내용의 평가를 통한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파악하고 이것에 기초한 시도 내에서의 순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함.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주요착안사항
권역설정의 적합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마을 수, 가구수, 인구수, 면적 등 규모의 적합성(10) ◦ 구성마을의 상호 연계성 및 사업의 공감대 형성(10)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 구성과정과 내용(5) ◦ 추진위원회의 제안서 작성과정(5) ◦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안(5) ◦ 주민들의 사업 참여 결의서 작성과정(5)
권역 내 자원의 경쟁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문화적, 인적 자원 등 자원의 존재(5) ◦ 제시된 자원의 사업화 가능성(5)
권역개발방향의 적합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목표와 방향설정의 적합성(5) ◦ 주요개발방향의 적합성(5) ◦ 제안된 개발사업의 논리기반(20)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의 지자체의 참여 및 지원(5) ◦ 사업신청서 제출 전 지자체 내 행정절차(5) ◦ 선정 시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등과의 협약 추진 및 활용방안(5) ◦ 지방의회와의 사업인식 및 지원복안(5)

나. 총평

다. 60점 이하 평가 사유

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인

9) 정부가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공공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

평가위원은 농업기반공사1인을 포함 민간전문가 4명, 총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하고 평가절차 및 결과보고를 주관토록 하며, 위원들은 사전에 주민제안서를 숙지하고 현지방문 후 상기 평가항목별로 5단계척도로 평가하여 합계가 60점이 되지 못한 경우는 이유를 명기하도록 하고, 평가위원들의 총평내용은 선정이후 기본계획수립에 참조하도록 함.

최종순위 결정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의 총합계에 의하고 평균점수는 총점수를 5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하며 6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을 하고 다음 연도의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함.

(라) 사업선정방법의 개선방향

사업선정의 기본방향은 분권화와 지방자치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되,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바람직한 모형이 정립될 때까지는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있는 접근이 되도록 함.

○ 사업선정방법 대안1 : 농림부 및 시도 공동 선정

농림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예산처와 협의하여 확보된 사업물량을 낙후도 및 농촌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여 도(道)에 배정하면 사업물량을 배정받는 도(道)지사는 사업시행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하여 시·군이 자격이 있는 마을에 홍보하여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당연히 시·군은 이 사업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교육도 실시하도록 함.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마을의 대표자(Leader)가 있어 생활권 및 영농권, 그리고 주민유대감을 갖는 인근마을을 규합, 마을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에 대한 주민 결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농촌개발위원회” 또는 “농정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신청권역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해당권역에 대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 권역의 “마을개발추진위원회”와 함께 “예비계획서” 또는 “주민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는 현재 지침대로 마련하되 권역발전방향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중 “마을주민 소득확충분야”는 “그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첨부되도록 함. 이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및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이 예비계획서 자료집에 포함되어야 함.

신청서는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의 요약보고서 및 본보고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요약보고서는 A4 3매 이내, 본보고서는 A4 50매 이내, 자료집은 A4 30매 이내로 하고 자료집은 본보고서의 논리를 뒷받침할 참고자료를 수록함. 이렇게 마련된 예비계획서를 시·군 개발위원회에서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 도에 대상지 선정을 신청하면 도는 전문가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에 맞는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 심의위원회에 제출,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상지의 1.5배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농림부에 보고하여 예산을 신청함. 이 때 도(道)는 대상지선정 방법과 기준,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선정과정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함. 만약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군은 선정결정 1주일 이내에 농림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농림부는 이의 제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도에 통보하여야 하고 도는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함.

농림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시·도가 신청한 권역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추진가능성조사)등의 절차를 통하고 중앙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함. 이렇게 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더욱 반영하며 지방화의 행정철학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농림부의 참여를 동시에 끌어 낼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 꼭 필요한 방안일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방정부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음.

○ 사업선정방법 대안2 : 시·도의 선정

제1안과 마찬가지로 농림부가 매년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확보된 사업물량을 낙후도 및 농촌규모에 따라 시·도에 배정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농림부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시·도가 마련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고, 시·도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상사업권역을 선정 한 후 농림부에 보고함.

이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와 군은 농림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림부는 이 이의 신청을 심의하여 조치 함.

4.4.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

4.4.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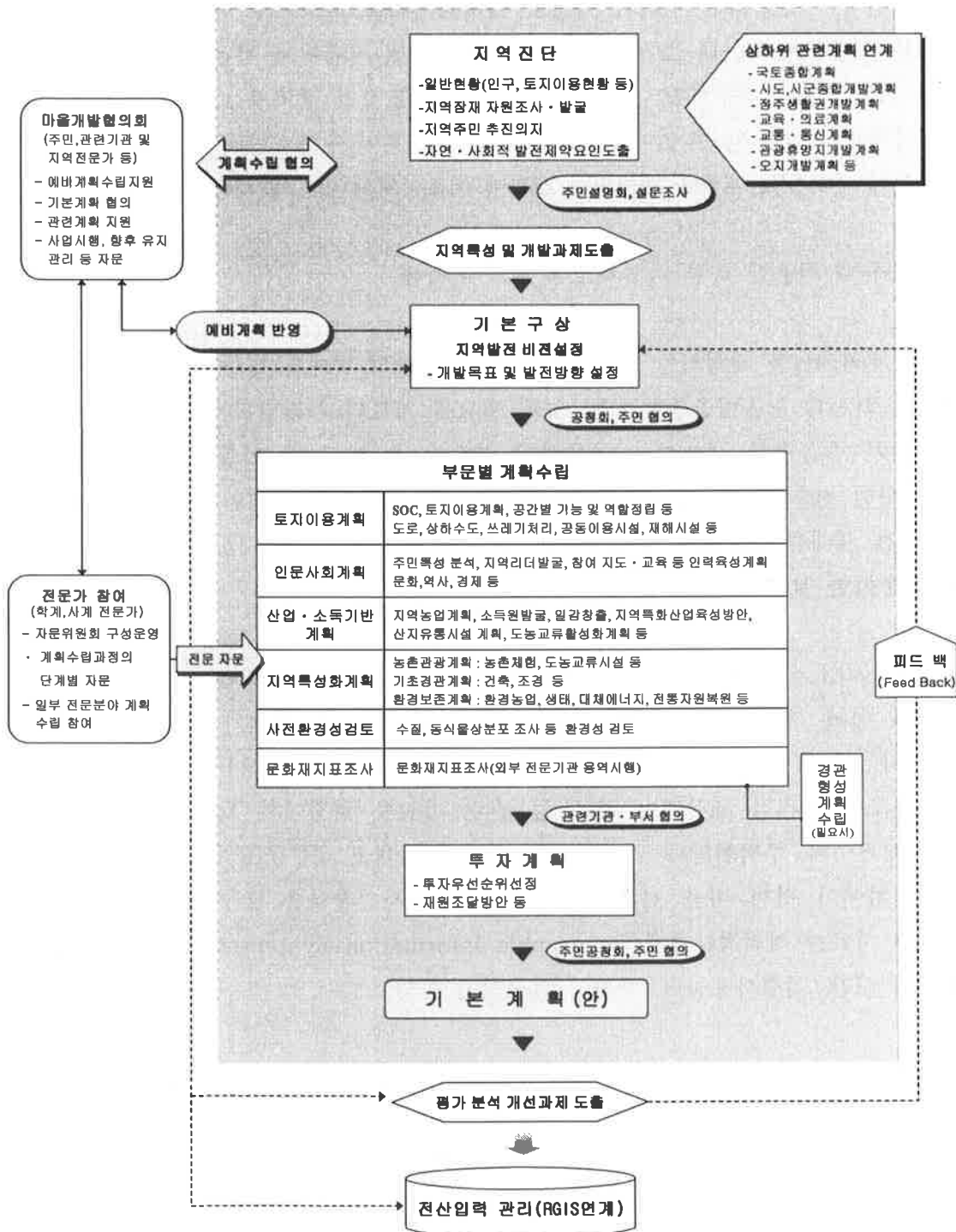
200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농업기반공사는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상위계획과 현지조사 및 지역주민의견 등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4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활용계획
 - 인력육성계획
 - 기초생활기반시설계획, 산업·소득원 확충계획, 권역특성화시설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한 소도읍 등 지역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보호법(제47조의2)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경비는 기본 계획 수립비와는 별도로 사업비에서 계상 할 수 있음.
 - 마을공동으로 주택의 경관형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색채, 재질,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지붕·담장의 도색 등에 소요 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역발전 목표 등 기본계획(안)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마을개발협의회와 협의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시행 후 시설물의 이용도 증대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알린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지역공청회, 주민회의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내용(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및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내용 중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함.
 - 기본계획서(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포함)
 -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사업계획 평면도(1:50,000 지형도)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의견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확정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함.

[그림4-5]는 기본계획수립과정과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임.



[그림4-5] 기본계획수립과정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권역 발전방향과 배치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장치 미흡

사업권역이 선정되면 주민이 작성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 주민이나 외지 사람이 권역발전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제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승인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의뢰인에 의해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

나. 권역 내 마을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존재와 있는 자료의 취득이 용이해야 하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공간단위는 자연마을이고 공간단위가 좁을수록 세세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수집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자료 확보는 일일이 전 세대를 면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또한 용이한 실정이 아님.

새마을사업 이후 마을 내 도로들의 지적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 상의 주민과 실제 거주자와의 세대, 인구, 연령별 분포 등의 차이가 크며, 주민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어 세대별 설문조사를 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생산자들의 생산통계도 주민들로부터 직접 조사해야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100% 재점검하여야 하는 형편이며, 주택현황과 구조는 일일이 사진을 찍고 내부구조 및 주변현황을 같이 스케치하여야 하며 마을 전체적인 조망은 항공사진촬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통합 정리되어야 하는데 시간, 기법사용능력, 예산이 요구되는 일임.

기본계획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시행계획수립도 용이하고 사업시행도 빨라지며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 농촌지역의 경우 실제로 농번기에는 주민접촉 등이 어려운바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면 계획기간설정에 좀 더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행계획수립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시행계획수립시 기본계획과 괴리되거나 시간과 노력이 새롭게 투입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

다. 주민들의 교육훈련비 지출 관련

기본계획수립의 핵심은 기초자료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권역개발방향에 대한 자발적인 의견개진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내발적인 동기부여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사업시행승인 후에야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주민교육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보·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부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되기도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4.4.2. 개선방향

(가) 권역선정 후 난개발방지조치 및 법정 개발지역 지정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39조)”에는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과 농산어촌 거점지역육성대상의 거점지역 권역설정에 대한 조항과 기준이 없어, 설정된 사업권역 내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함.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5.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향토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한 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39 조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안1: 주민협약에 의한 난개발방지**

권역의 범위를 주민들이 동의하고 그 관리를 사업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접근 방법

(장점) 별도 법규의 제정 없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음.

(단점) 주민들이 위배하였을 때 제제수단이 없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외부인들이 이곳에 토지를 구매하여 개발행위를 할 때 저항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대안2: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막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도 막고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조례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되고, 조례제정의 재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정될 조례는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의 권리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하는 적정 법률을 찾기가 쉽지 않음.

현재 가능한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주민과 합의가 되어야 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주민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므로, 권역 내 주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사업신청 시 경관조례에 대한 주민 참여 의사 확인, 대상지역 선정 후 1개월 이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장점)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쉽게 제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단점 및 문제점) 어떤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대안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지정

가장 확실한 접근방법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한 용도구역이나 용도지구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함.

현행법에 따라 가능한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자연경관지구”, “자연취락지구”가 근사하나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취락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공간인 농지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취락지구와 경관지구 그리고 농지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용도구역 또는 지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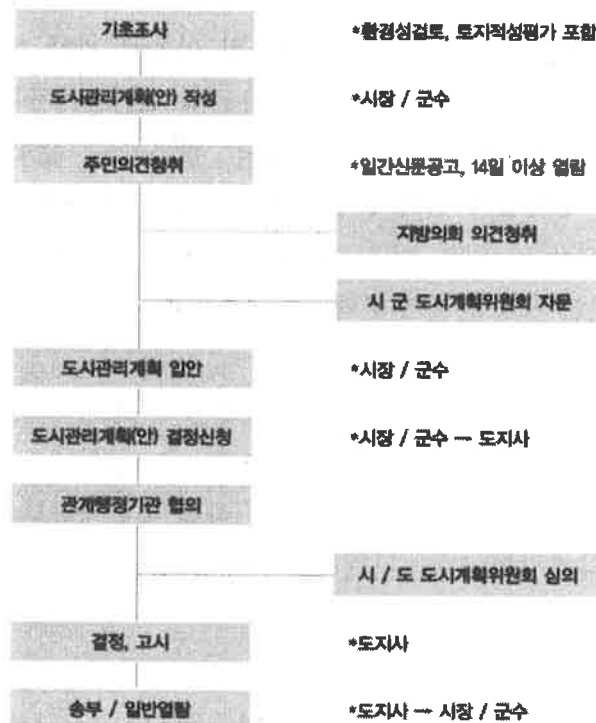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③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별도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조례에 가칭 “농(산·어)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를 추가하여 군 관리계획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할 것임.

삶의 질 법 제38조 및 39조에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지구”규정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③항에 따라 시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농(산·어)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③항의 규정을 의제하게 함.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 ① 법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 ④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시·군은 선정된 권역에 대하여 군(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을 엄격히 규제하고 경관지구 지정 및 경관조례제정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시·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지구” 지정의 규정이 마련된 경우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기본계획수립 확정 이전에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지구” 지정의 관리계획수립 및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4-6]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

(나) 농촌마을 기초자료 DB구축관리

본 사업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다른 정책의 입안과 수행을 위해 자연 마을 단위 기초 자료의 DB를 구축하여야함. DB의 설계와 자료 수집방법 등은 36개 권역의 자료내용 및 취득 과정을 분석하여 농림부의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가능한 농촌개발전무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현장 DB구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정보문화센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다) 사업추진 일정(Road map) 제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은 주민제안서 제출 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나서 언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느냐에 큰 관심이 있는 바 그 기본 일정이 제시되고 이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활동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음.

사업신청에서 사업집행까지 기간을 22~24개월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3개월, 기본계획수립용역기관선정 1개월,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 9개월(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행정절차 포함), 시행계획수립기관 선정 1개월,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7개월, 사업자선정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Road map)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기본계획수립기간동안 지구지정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또는 필요한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같이 추진함.

(라) 농림부 지정 전문연구기관의 책임 있는 자문참여 및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약을 맺은 농림부 지정 전문연구기관의 책임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 용역조건을 부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관은 농림부 지정 전문연구기관을 포함시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킨 기본계획수립 자문위원회를 권역별로 구성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받고 그 자문결과를 기본계획보고서에 명시함

(마) 시행계획의 설계지침이 될 수준의 기본계획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시 설계지침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 바, 다음 사례와 같이 공동시설의 경우 위치와(지번으로 표시) 대지면적,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건축연면적과 구분배치 그리고 필요한 도면스케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사례 1: 00권역 복합 건강·복지회관 건립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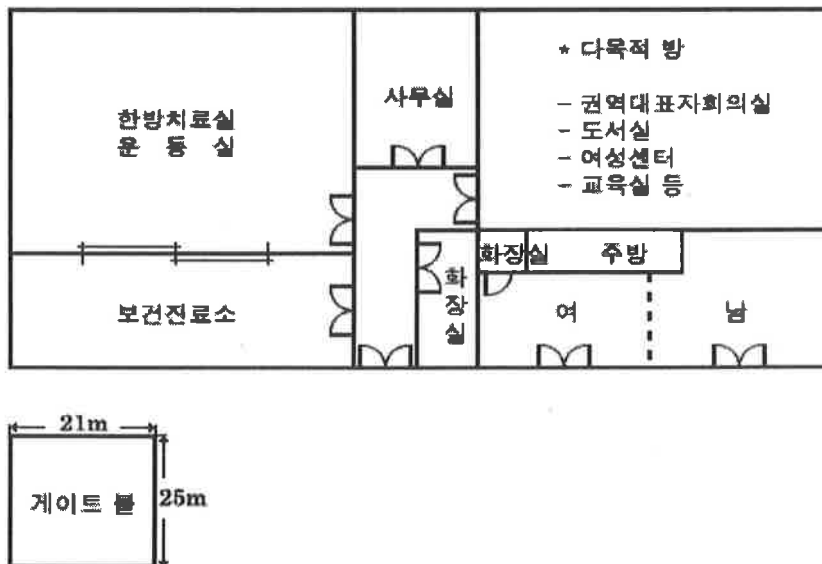
< 건립 목적 >

- 권역 내 주민들의 의료 및 복지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실행하고 향릉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함.

< 사업 내용 >

- 보건진료소가 입주하여 주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격진료 지원자 역할을 함.
- 00권역을 종합개발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상주 농업기술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사무국 일을 수행하고 농업기술을 지원함은 물론 외부 농업기술자를 연계하고 건강 복지회관을 관리함.
- 주민들의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함.
- 권역 내 공동 축제 공간을 확보함.
- 어린이 도서실 역할을 확보함.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여성교육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시설내용
 - 보건진료소, 권역 사무실, 한방치료실 및 운동실, 도서실, 여성건강센터, 권역 회의실, 북촌마을 회관, 게이트볼 운동장, 농구대(1개), 벤치, 보안등, 외부 수도꼭지, 발마사지, 북촌마을회관 화장실 및 샤워부스, 실 내 외 화장실, 주방 등

< 설계의 기본개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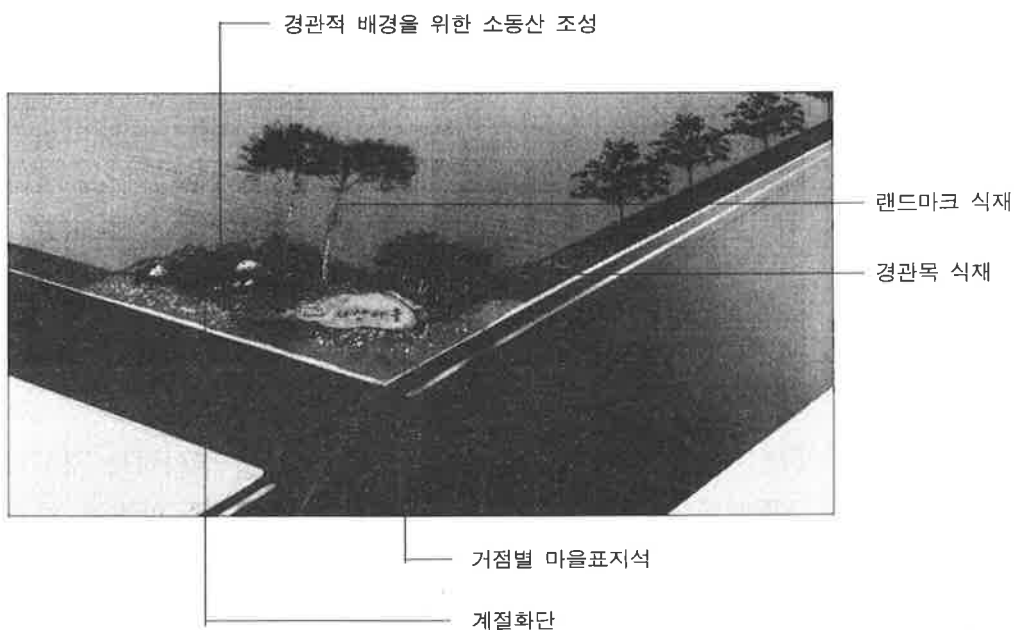
- 보온 및 열차단 철저.
- 바닥 및 벽은 건강재료사용.
- 진출입 시 노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턱이 없을 것.
- 눈 비 올 때 외부 공간이 미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할 것.

< 시설내용 및 예산 >

시 설		연면적(평)	소요금액(백만원)	비고
부 지		1,500	150	
건물	진료소	200	600	건축비(평당300만원) 시설비
	사무실			
	도서실			
	다목적 홀			
	화장실			
	샤워실(마을회관)			
	한방치료실			
	취사실			
방문객 숙소(마을 회관겸)	1,300	50	시설비	
게이트볼				
밭 지압장				
농구대				
주차장				
기타 녹지공간				
운영 및 관리			210	인건비: 350만원*12개월*5년
			180	관리비: 300만원*12개월*5년
합 계			1,490	

* 태양열 보일러 및 전기시설 검토

◎ 사례2: 마을입구의 요점공간 : 24호선 국도에서 00마을 측 진입부



< 부문별 가이드라인 >

- 소동산조성 : 마운딩처리하여 도로에서 식별성을 높임
- 랜드마크 식재 : 수형이 뛰어나며 멀리서 식별가능한 규격의 소나무
- 마을표지석 : 수직적 형태 보다는 수평적이고 안정된 형태 사용
- 하부식재 : 개화기를 고려하여 계절별 화단 조성계획

< 소요예산 >

항목	규모	비용(백만원)	비고
입구동산조성	3개소	15	다산, 내황, 원황릉
마을입간판정비	6개소	62	
합 계		77	

*자료 : 장성 황룡권역 기본계획(안)

(바) 주민교육체계 구축과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비의 조기집행 모색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화 될 수 있는 것(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 내용은 시행계획수립 중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아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 나가야 하며, 중앙정부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폭넓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이 과정을 마친 마을 지도자 및 공무원이 있는 권역을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표준화된 프로그램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역의 전문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수강자에게 훨씬 편리할 것이므로, 농업기반공사가 본 사업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재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비는 본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시군 지역개발직군 신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참여자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제 상 지역개발직을 신설하여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고 이들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비롯 지역개발분야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설과, 도시과, 농수산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 상대의 편리성을 위해 어느 한 부서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아) 지역계획사 제도 도입검토¹⁰⁾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형 농촌개발전문가로 지역계획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립형 지방화와 대부분이 농촌인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소단위지역개발의 수요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지역계획사’란 법이 정한 지역계획 관련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자 또는 법이 정한 지역계획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이거나, 그 동안 지역계획 현장에서 지역계획전문가 역할을 수행해온 사람 중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서 지역계획사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지역개발 관련 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5. 사업내용(메뉴) 및 사업비

4.5.1. 현재의 사업메뉴 및 사업비 지원방향

2004년,2005 사업시행지침에 제시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표4-6]는 총 9개 분야, 17개 주 시설, 90개 세부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표4-6]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의 신규 대조표(04년,05년)

구 분	주 시설	세 부 내 용
기초생활시설	도 로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산책로)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오폐수처리시설)
	주 택	주택신축, 주택 리모델링, 빈집정비 등(폐가정비)
	기 타	정보화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문 화	다목적회관, 야외소공연장, 마을박물관, 고인돌보존, 시골장터 정비, 향토문화재·마을유래비 등(커뮤니티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복 지	건강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마을(복지)회관 등(영세민 주거지원시설)

10) 이성근,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사제도 도입방안,농림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발전방향-전문가 워크샵(2005.9.9-9.10),발표자료집, pp.61-85에 자세한 제안 내용이 있음.

구 분	주 시설	세 부 내 용
소득기반시설	소득기반	농산물 공동가공·건조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음 저장고, 버섯재배사, 비가림하우스 등 (농기계수리센터, 특산물판매시설, 지역산업체험시설)
농촌관광시설	관 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권역 안내도, 장승, 방앗간 복원, 빨래터 조성, 정자원두막, 간이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생태 학습장, 폐교활용 등(지역관광안내시설, 도농교류시설, 휴게편의시설, 체험영농시설, 생태학습장, 농촌폐교활용)
경 관 시 설	경 관	마을숲 조성, 지붕정비·담장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사립문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경관형성시설, 기타 경관정비)
환 경 시 설	환 경	오·폐수처리, 쓰레기처리, 생태공원, 야생화군락지 복원, 어류서식지 정비, 생태하천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친환경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생태계보호)
운동·휴양시설	운 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레포츠시설,
	휴 양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 삼림욕장, 심신단련장 등(야외광장, 놀이터, 휴양시설, 전망대)
재해대비시설	생산기반	농로, 용배수로, 관정시설, 옹벽, 취입보 정비 등(생산단지, 영농시설, 저수지)
	재 해	소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기획 및 운영(S/W)	교육·훈련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장비, 마을해설사양성 등
	홍보	홍보와 마케팅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마을캐릭터(브랜드)개발, 마을홈페이지구축, 인터넷 장비 설치 등
	마을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프로그램개발보급, 프로그램 운영장비, 마을컨설팅 등

* 주) 굵은 체는 05년도에 추가된 항목, ()은 04년의 항목으로 항목에서 삭제부분

< 사업비 지원 >

- 보조사업비 : 권역 당 3~5년간 70억원 수준 지원(국고 80%, 지방비 20%)
 - ※ 지역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 융자사업비 : 호당 지원기준은 정주권개발사업 지침 내용을 준용
 - 주택 신축 : 호당 20백만 원(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
 - 주택 개량 : 호당 5백만 원(연리 4.0%,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기준 및 의무사항 >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경관시설, 환경시설, 운동·휴양시설, 재해대비시설 등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
 - 다만, 시설부지는 최대한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되, 소유권은 시장·군수로 한다.
- 소득기반시설은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설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사업별 지원기준을 준용 한다 (일부 보조, 일부 자부담)
 - 소득기반시설물은 시장·군수와 마을 간에 “사업추진협약” 등을 통해 마을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여야 한다.
 - ※ 마을공동사업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의 사업
- 농촌관광기반시설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되, 시설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마을기획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은 구체적인 계획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
- 마을에서는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마을규약” 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기준(별표1, 2)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필요시 별도 시달한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원기준(안) 검토)

기본계획이 승인된 36개 권역의 부분별 투자항목과 그 빈도는 [표4-7]과 [그림 4-7]과 같은데, 기초생활부문 84개 사업, 문화·복지부문 102개 사업, 소득기반부문 117개 사업, 농촌관광부문 170개 사업, 경관정비부문 120개 사업, 환경시설부문 47개 사업, 운동·휴양부문 63개 사업, 재해방지 8개 사업, 권역역량강화 188개 사업으로 총 904개 사업과 세부설계, 사업 및 공사감리 등 제 경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사업의 숫자로 보아서 권역역량강화사업이 가장 많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더 관심이 높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농촌을 발전시킬 근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음.

[표4-7]기본계획이 승인된 36개 권역의 투자항목

부 문 별	투 자 항 목
<p>기초생활 (총 83개 사업)</p>	<p>매천사 진입로 확포장, 매천사 주차장 / 학교구입, 학교증축, 대체에너지 / 생태주차장 / 마을공동주차장, 진입도로정비, 마을공동창고 / 북촌내항연결도로개설, 내항진입도로확장사업, 주차장건설, 자가농기구정비장, 친환경주차장 / 간이상수도설치, 배수로정비, 마을안길, 연결도로 포장 / 마을도로정비, 배수로정비 / 제방로 정비 / 생태주차장, 마을안길정비, 상수도정비, 안전시설 / 마을간연결도로, 생태주차장 및 자전거도로, 간이상수도 / 사과경작지 진입로조성, 산도라지 경작지 진입로조성 / 마을순환로, 생태주차장, 간이상수도 / 호연정길, 생태주차장 / 마을안길정비, 마을공동주차장, 마을진입신규도로개설, 마을연결도로포장 /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 연결도로선형개선, 배수로정비 / 혼불문화권역탐방로, 인접마을 접근로 정비, 생활기반정비 / 생태주차장, 마을안길 정비, 버스승강장 개선 / 기초생활시설정비, 마을동선의 정비 / 방재시설 및 마을안길, 마을경관정비, 하수도 정비 / 가드레일, 배수로, 마을내도로, 주차장 및 공원, 교량, 가로등 / 마을안길정비, 마을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정비 / 자전거도로, 친환경경생태주차장, 마을진입로 확장 정비 / 마을조형물설치, 사인시스템정비, 마을안길 정비 / 마을진입도로선형변경, 농로정비, 생태주차장, 용수로 정비 / 경관도로 간이주차장 / 마을안길 확포장, 마을간 연결도로, 마을공동주차장 / 주차장, 부대시설 / 진입로정차대, 마을주차장, 간이상수도설치,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버스승차장 /</p>
<p>문화복지 (총 102개 사업)</p>	<p>복지관 신축, 면소재지 소공원시설 / 마을회관, 성황당정비, 거점시설, 커뮤니티센터 /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종합교류센터 / 천연보호림 주변정비, 마을쉼터정비, 뽕나무공원 조성 / 마을다목적광장, 마을소공원, 마을복지회관 / 황룡복지센터 건립, 마을회관, 마을도서관운영 및 지원, 안전재해시설 개선사업 / 마을쉼터, 산책로, 마을연결도로보수, 하천재해방지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청소년 체육시설, 장승공원 / 건강관리실 / 마을회관 리모델링 / 백련서당 운영정비, 평생교육프로그램, 성지순례코스조성, 전래동화무대 복원, 소공원조성, 복숭아홍보정보관, 휴게실 / 마을쉼터, 복합문화복지센터, 야생화센터, 마을회관 / 커뮤니티센터, 복지회관, 마을자료실 / 봉산 건강관리센터, 용추자연예술관 / 회관 및 황토관, 복합문화복지센터 / 문화교류센터, 마을전통쉼터설치, 마을다목적 모임터 / 마을회관, 지역활성화센터 / 마을회관정비, 마을종합복지센터 / 문화복지센터, 감불마을사랑터 / 지평선화합관, 마을회관 / 마을회관 리모델링, 전통한증막 건립 / 커뮤니티센터, 문화복지센터지원, 마을사랑방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인정 예절교실 개선 / 건강복지시설 / 마을쉼터, 다목적광장, 마을회관 / 지역활성화센터, 다목적광장 / 마을회관, 마을쉼터 / 만휴정 복원, 연못복원, 노들돌 복원, 고인돌 주변정리, 석장승공원, 농촌유물관, 마을 소공원, 마을 커뮤니티공간, 건강관리실 / 문화관문화공원, 그린투어커뮤니티센터, 다목적광장, 해변산책로, 문화재 주변정리, 친수공원 / 종합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 마을복지회관, 마을소공원 및 부대시설, 공동주차장 및 부대시설, 맥시마을 진입도로 / 문화유적정비, 황토체험시설, 마을쉼터, 해우소 / 다목적교류센터 / 마을회관 리모델링 / 마을회관, 경로당 / 환경농업연구정보센터, 다목적 마을회관 /</p>
<p>소득기반 (총 117개 사업)</p>	<p>유기농단지기반시설확충,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 / 원전미시설, 공동육묘장, 퇴비장, 장류시설, 비가림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유기축산, 산채단지, 장뇌단지, 약초가공시설, 친환경농업, 공재배단지 / 친환경농업확대, 방앗간 현대화, 친환경축사, 소득작물개발, 공동작업장 / 고추건조장, 장류단지, 누에가공공장, 한과작업장 / 전통된장고추장 가공공장, 포장보관창고, 퇴비사, 농산물직거래장터 /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 친환경 무세척 정미소, 친환경농업기반시설, 포도무가온하우스 설치, 표고버섯 생산단지 조성 / 장류가공시설, 표고톱밥배지재배사, 구기자체험관 / 시설하우스, 황토건강농산물개발, 친환경농업 시범포, 가축분뇨 액비화 / 복숭아공동선과장, 저온저장실, 가공공장, 공원내직판장 / 장류시설, 농산물건조시설, 공동육묘장 / 공동육묘장, 간이판매장 / 용추활성화센터 / 선별장, 건조장, 표고시험포, 한봉체험장, 풋고추시험포, 표고된장가공, 산채단지, 오리농법, 원두막 / 수제차전수관, 친환경농산물보관시설 / 청정미나라재배시설, 딸기종합전처리시설 / 농산물가공체험장, 버 건조시설, 친환경농업기반시설 / 친환경축사, 버공동육묘장 / 건조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및 판매장, 친환경농업육성, 혼불고장농산물명품화사업 / 복합영농센터, 친환경영농체험장 /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역경제활성화계획 / 사과테마공원, 장류사업 / 친환경프로그램개발, 고추체험장, 관정, 경작로, 퇴비사 / 공동육묘장, 환경농업시설 / 새송이버섯재배단지 / 농수산물유통센터, 다슬기 양식장 / 고소득 영농기반 조성 / 친환경영농자재생산공동작업장 / 영농체험 및 오너제도, 가제집기 체험장, 임산물 생산 및 체험단지, 약초재배 및 체험단지 조성, 두릅 및 산딸기 오너체험장, 황태 건조 및 보관시설 / 친환경쌀재배단지, 공동육묘장 및 주말농장, 비가림 재배시설 /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 38막거리 상품화, 버섯재배단지, 오리농법, 성묘상 대행업, 장류판매, 비가림재배시설, 간이직판장 / 오리쌀 전용 도정시설, 건조시설 및 자동포장시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친환경농산물 산지물류센터, 환경농업지원자재생산시설, 미생물 효소신포기, 육가공포장시설, 민물고기 양어장 /</p>

<p>농촌관광 (총 170개 사업)</p>	<p>부래미 체험학습관, 화훼체험관 조성, 토종식물테마공원 조성, 친환경쌀재배단지구축, 야생화체험장 조성, 어연지 조성, 조류전시 및 체험장 조성 / 지리산계곡쉼터, 지리산삼새미골체험시설, 다목적광장 및 공익시설 / 동물사육실, 순환로, 별자리, 자전거, 등산로 정비, 안내판 / 마을안내도, 잣까기체험, 장승공원, 우물디딜방아정비, 봉수대복원, 우마차도로, 옷샘개발, 친환경축산교육관, 마을전시관, 약수터 정비, 야영장 조성, 친환경영농체험장 / 역사문화자원정비, 고인돌 주변정비, 마을활성화센터, 물레방아 복원, 안내판 / 전통농업체험관, 도농 교류센터, 주말농장, 허브길 조성 / 교통광장 건설, 황룡괴수랜드 조성, 요월정 및 용소복원, 북촌마을 우물 복원 / 방문자센터, 가재체험장, 월빙체험농원, 수변생태공원, 주차장, 전통문화체험관 리모델링, 대나무누사터, 어린이 동물체험장, 권역종합안내시스템 / 양화권역 종합교류시설, 민속체험장 조성, 생태공원, 주말농장 / 반산방문자센터, 어울마당 및 야생화정원, 곤충생태학습원 및 소형동물원, 농촌학습원 및 수서곤충생태학습원 / 북송아재체험장 조성, 갑곡북송아재제 운영 / 한방건강관리실, 종합안내센터, 전통문화체험관, 민속자료정비, 물레방아정비, 성황당정비, 공동빨래터정비, 보호수정비 / 체험장, 간이천문대, 얼음동산, 안내판 / 권역종합안내시스템, 전래놀이 체험공원, 산도라지 체험공원, 산촌유학민박 / 자연학습로 / 전망대설치, 녹차밭 체험로 조성, 홍보안내판, 마을유래비 / 특산물안내판, 개버리정비, 마을쉼터정비, 딸기공원 조성 / 지역특산물체험관, 한방체험센터, 저수지수변체험센터, 접경휴게지, 마을진입부정비, 농촌체험지 / 당산축제마당, 전통도자기체험장, 분청자요지 발굴보존, 고인돌정비, 소나무숲 삼림욕장, 산책로, 탐방로, 경관조망대, 마을안내시설 / 광활역사관, 자연체험장, 테마공원 / 체험장 조성, 구서도역주변보존, 활용 / 안내시설 확충, 마을상징물 설치, 저수조 차폐, 저수조 전망대활용, 서당터 복원, 고사리체험장 / 도천달빛공원 조성, 전원적 마을경관 조성, 지역활성화센터 설립, 전통·문화자원정비 / 소백산예술촌활성화, 체험시설기반정비, 테마조형물 및 안내판 /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양성 / 회룡포등산로정비, 향석폐교활성화, 테마조형물 및 안내판, 유교문화경관정비 / 그린투어센터, 안내판, 친환경영농시범포 / 해맞이 전망대, 등산로 정비, 해변야영장, 키조개 축제장정비, 생태텃밭, 습지관찰, 안내판 / 안내시설 설치, 안덕계곡 화장실정비, 해안 방문객 편의시설,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자연나눔테마파크 / 방문자센터, 다랭이논체험농원기반 조성, 권역종합안내 시스템 / 안내판, 체험시설 및 행사, 고로쇠 나무조림 / 황태체험장 조성, 야영 및 캠핑촌 정비, 친환경적 야영장 조성, 체험순회개방형관광버스구입, 장류체험프로그램, 야생자연학습장 / 도랑애쉼터, 풍산개 테마공원, 체험장, 종합안내판 / 김치체험테마파크, 다목적체험장, 권역종합안내시설 / 방문자센터, 체험장, 백골테마체험장, 다랭이논, 금강굴개발, 진입간판, 안내판 / 생태체험학습장, 체험학습센터, 환경농업역사관, 전통가옥 및 생태에너지 체험장, 축산가공체험장, 마을안내도 및 조형물 /</p>
<p>경관정비 (총 126개 사업)</p>	

부문별	투자항목	빈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경관 정비	마을 인근 숲 조성 및 정비																																				
	테마 거리 조성																																				
	기타(공동창고 정비 등)																																				
환경 시설	생태공원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정비																																				
	폐기물 수거 시설																																				
운동 휴양	기타(태양광 가로등, 주변정비 등)																																				
	등산로, 산책로 조성 및 복원																																				
	각종 휴게지 및 쉼터 조성																																				
재해 방지	소규모 마을 운동장 설치 등																																				
	기타(야영장, 공중화장실, 약수터 등)																																				
	천변정비																																				
권역 역량 강화	배수로정비																																				
	농로정비																																				
	기타(재해대비시설, 부대시설 등)																																				
권역 역량 강화	권역활성화 컨설팅																																				
	권역리더양성교육 및 지원																																				
	홍보마케팅 및 지원																																				
권역 역량 강화	권역정보화 구축 및 지원																																				
	마을주민 교육 및 견학 등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및 지원																																				
권역 역량 강화	권역브랜드 개발 및 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기타(기타프로그램 및 컨설팅, 교육 등)																																				
제경비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제경비	기타(잡지출, 추진예비비)																																				

36개 권역의 사업항목의 특성을 보면 “권역활성화 컨설팅과 권역리더양성교육”은 28개 권역, “특산물 가공처리장 및 저장시설, 체험장”은 26개 권역, “공가 및 담장정비” 24개 권역, “농업기반시설” 23개 권역, “주변도로경관개선” 21개 권역, “다목적 마을회관 성격, 복합문화복지센터”는 21개 권역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농촌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 체험장, 권역역량강화사업 그

리고 문화 복지 증진을 주민들은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해방지 사업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관심이 매우 낮았고, “특산물홍보관, 주차대, 물류센터, 복합영농센터” 등도 1~2개 권역에서만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이 승인된 36개 권역의 사업비 현황 [표 4-8] 을 보면 창녕 구계권역이 3,766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며, 홍천 화동권역은 6,980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총 사업비 규모가 50-55억원인 권역 수는 6개 권역, 55억원~60억원인 권역 수는 3개 권역, 60~65억원 범위인 권역 수는 5개 권역, 65억원 이상이 21개 권역임.

[표4-8] 기본계획이 수립된 36개 권역 단계별, 연차별 사업비 예산현황

권역별		총사업비 (자부담)	1단계				2단계		
도명	권역명		소계 (자부담)	1년차 (자부담)	2년차 (자부담)	3년차 (자부담)	소계 (자부담)	4년차 (자부담)	5년차 (자부담)
경기 (4)	양평 연수	6,736 (91)	4,528 (91)	1,250 (4)	1,767 (6)	1,511 (81)	2,208	1,232	976
	이천 석산	6,560 (180)	4,300	1,250	1,786	1,264	2,260 (180)	1,250 (80)	1,010 (100)
	안성 강촌	6,610 (154)	5,130 (96)	1,474 (11)	2,747 (30)	909 (55)	1,480 (58)	717	763 (58)
	연천 초성	6,849 (208)	5,438 (178)	1,250 (4)	2,977 (174)	1,211	1,411 (30)	872 (30)	539
강원 (4)	화천 토고미	6750 (193)	6,185 (103)	3,052 (66)	2,190 (3)	943 (34)	565 (90)	476 (90)	89
	인제 용대	5,040 (509)	3,977 (142)	773 (43)	1,592 (66)	1,612 (33)	1,063 (367)	802 (349)	261 (18)
	홍천 화동	6,980 (724)	3,655 (92)	700	1,963 (10)	992 (82)	3,325 (632)	2,001 (348)	1,324 (284)
	철원 자등	6,976 (381)	4,185 (21)	780 (3)	1,699 (2)	1,706 (16)	2,791 (360)	2,394 (360)	397
충북 (2)	음성 갑곡	6,150 (1,220)	4,881 (190)	1,727 (100)	2,101 (90)	1,053	1,269 (1,030)	844 (800)	425 (230)
	단양 가곡	6,667 (122)	4,061 (56)	1,556	1,557 (15)	948 (41)	2,606 (66)	1,322 (41)	1,284 (25)
충남 (5)	홍성 문당	6775 (597)	5237 (472)	1950 (302)	1688 (75)	1599 (95)	1538 (125)	862	676 (125)
	예산 둔리	6,130 (63)	5,334 (63)	1,870	1,733	1,731 (63)	796	499	297
	부여 반산	6,951 (78)	5,771 (78)	1,050	2,170	2,551 (78)	1,180	623	557
	공주 양화	5,442 (244)	3,713 (244)	890	2,136 (244)	687	1,729	1,236	493
	청양 서정	6,126 (182)	4,058 (130)	1,141 (65)	1,039 (65)	1,878	2,068 (52)	1,168	900 (52)

권역별		총사업비 (자부담)	1단계				2단계		
도명	권역명		소계 (자부담)	1년차 (자부담)	2년차 (자부담)	3년차 (자부담)	소계 (자부담)	4년차 (자부담)	5년차 (자부담)
전북 (4)	고창 선동	6,448 (90)	4,484 (30)	430	1,707 (20)	2,347 (10)	1,964 (60)	1,192 (50)	772 (10)
	남원 혼불	5,446 (283)	5,067	2,403	1,362	1,302 (283)	379	317	62
	부안 우동	5,288 (174)	3,756 (157)	1,238	1,682 (127)	836 (30)	1,532 (17)	757 (17)	775
	김제 광활	6,660 (257)	4,624 (32)	150	1,832 (16)	2,642 (16)	2,036 (225)	1,102 (113)	934 (112)
전남 (5)	장흥 수문	6,788 (76)	3,595 (76)	1,500 (6)	1,267 (70)	828	3,193	1,663	1,530
	구례 방광	6,811 (1,044)	5,580 (978)	1,431	2,025 (460)	2,124 (518)	1,231 (66)	609 (18)	622 (48)
	보성 오봉	6,789 (71)	3,871	875	1,519	1,477	2,918 (71)	1,465	1,453 (71)
	장성 황룡	6,126 (531)	3,889 (130)	725 (10)	1,543 (60)	1,621 (60)	2,237 (401)	1,511 (331)	726 (70)
	함평 상곡	5,009 (83)	2,976	875	1,032	1,069	2,033 (83)	947 (27)	1,086 (56)
경북 (6)	문경 상내	5,988 (154)	3,606 (63)	1,250	1,223 (63)	1,133	2,382 (91)	1,173 (46)	1,209 (45)
	안동 중가구	5,393 (275)	3,704 (100)	234	620	2,850 (100)	1,689 (175)	968 (100)	721 (75)
	영덕 도천	5,993 (245)	3,622 (182)	1,065	1,232 (161)	1,325 (21)	2,371 (63)	1,496 (63)	875
	영주 부석사	6,560 (79)	4,483	1,250	1,898	1,335	2,077 (79)	1,366 (59)	711 (20)
	영양 원리	6,891 (7)	3,780 (7)	1,238 (7)	1,298	1,244	3,111	2,091	1,020
	예천 회룡포	6,550 (27)	4,182	1,250	1,102	1,830	2,368 (27)	1,422 (27)	946
경남 (5)	하동 평사	6,843 (316)	4,811 (182)	2,222	1,388 (182)	1,201	2,032 (134)	1,122	910 (134)
	함양 이전	5,943 (848)	5,211 (334)	2,580 (100)	1,435 (214)	1,196 (20)	732 (514)	613 (514)	119
	사천 무고	6,855	5,068	1,085	2,392	1,591	1,787	1,146	641
	창녕 구계	3,766 (11)	2,787 (11)	976	1,133 (11)	678	979	543	436
	합천 영전	6,766 (432)	4,665 (396)	1,414	1,465 (133)	1,786 (263)	2,101 (36)	1,007 (36)	1,094
제주	남제주 감산	6,590 (202)	4,307 (182)	375	2,500 (182)	1,432	2,283 (20)	1,157 (10)	1,126 (10)
합계		226,245 (10,151)	158,521 (5,099)	45,279 (721)	60,800 (2,479)	52,442 (1,899)	67,724 (5,052)	39,965 (3,509)	27,759 (1,543)
평균		≒ 6,285 (≒ 282)	≒ 4,403 (≒ 142)	≒ 1,258 (≒ 20)	≒ 1,689 (≒ 68)	≒ 1,457 (≒ 53)	≒ 1,881 (≒ 52)	≒ 1,110 (≒ 97)	≒ 771 (≒ 43)
점유비		100.0(%)	70.0 (50.2)	22.0 (7.1)	26.8 (24.4)	23.2 (18.7)	29.9 (49.8)	17.6 (34.6)	12.3 (15.2)

* 자료: 36개 권역 기본계획

[표4-9] 기본계획이 수립된 36개 권역 부문별 사업비 예산현황

권역별		총사업비 (자부담)	부문별									
도명	권역명		기초 생활	소득 기반	경관 정비	문화 복지	농촌 관광	운동 휴양	환경 시설	재해 시설	역량 강화	제경비
경기 (4)	양평 연수	6,736 (91)	1,457	342 (87)	472	968	313	668	406	698	700 (4)	712
	이천 석산	6,560 (180)	600		1,200		3,544 (180)				526	690
	안성 강촌	6,610 (154)	1089	570 (130)	270		2,824 (20)	609	316		403 (4)	529
	연천 초성	6,849 (208)	530	563 (114)	1,120	300	1,956 (90)	395	720		555 (4)	710
강원 (4)	화천 토고미	6,750 (193)	200	190	1,469 (193)	220	2,992		150	520	413	596
	인제 용대	5,040 (509)	60	1,073 (229)	738	550	1,552 (280)		123		594	350
	홍천 화동	6,980 (724)		2,905 (724)	429	766	1,195	277	156		569	683
	철원 자등	6,976 (381)		1,537 (381)	600	234	1,785	1,270	200		612	738
충북 (2)	음성 감곡	6,150 (1,220)	200	540 (820)	690 (300)	2,155	150	500	905		340 (100)	670
	단양 가곡	6,667 (122)	318	487 (122)	1,524	929	1,302		779		700	628
충남 (5)	홍성 문당	6,775 (597)	935	2,388 (597)	5	750	1,254	530	30		172	711
	예산 둔리	6,130 (63)	636		28	388	1,602 (64)	1152	1240		520	564
	부여 반산	6,951 (78)	102	443 (78)	1,280	450	2,777		593		645	661
	공주 양화	5,442 (244)	292	1,216 (244)	286	143	2,560				320	625
	청양 서정	6,126 (182)		746 (182)	103	1,788	2,350				555	584
전북 (4)	고창 선동	6,448 (90)	1,000	400 (40)	1,155	820	325	80	1300		706 (50)	662
	남원 혼불	5,446 (283)	900	1,655 (283)	536	310	550	200	200	100	430	565
	부안 우동	5,288 (174)	587	697 (174)	629	942	1,327				593	513
	김제 광활	6,660 (257)		1,028 (257)	544	1,068	758	778	1184		705	595
전남 (5)	장흥 수문	6,788 (76)		308 (76)	809	2,717	1,157	85	509		565	638
	구례 방광	6,811 (1,044)		1,690 (600)	382	742	2,598 (444)		255		550	594
	보성 오봉	6,789 (71)	332	282 (71)	300	1,873	1,103	492	1253		528	626
	장성 황룡	6,126 (531)	520	1,657 (391)	897 (40)	735	1,186 (100)	170			488	473
	함평 상곡	5,009 (83)	15	336 (83)	811	282	1,949	87	982	272	466	472

권역별		총사업비 (자부담)	부문별									
도명	권역명		기초 생활	소득 기반	경관 정비	문화 복지	농촌 관광	운동 휴양	환경 시설	재해 시설	역량 강화	제경비
경북 (6)	문경 상내	5,988 (154)	662	924 (154)	588	793	332	434	1028	181	423	623
	안동 충기구	5,393 (275)	900	1250 (275)	100	1025	1145				405	568
	영덕 도천	5,993 (245)	1788	1224 (245)	411	1036	379				520	635
	영주 부석사	6,560 (79)	1349	1609 (79)	407	1094	793				693	615
	영양 원리	6,891 (7)	609	683 (7)	1259	2881	95				631	733
	예천 회룡포	6,550 (27)	1510	108 (27)	1367	914	1368				641	642
경남 (5)	하동 평사	6,843 (316)		1566 (316)	1071	885	530		1504 (생태)		676	611
	함양 이진	5,943 (848)	321	1718 (214)	521	240 (514)	688 (20)	1085			815 (100)	555
	사천 무고	6,855		289 (지역농 업)	1010	2200	1227		778		665	686
	창녕 구계	3,766 (11)	1446		301	432	367 (11)	487			429	304
	합천 영전	6,766 (432)	930	1726 (432)	546	472	1127	430		423	510	602
제주	남제주 감산	6,590 (202)	480	730 (182)	335	1158	2140	705			442 (20)	600
합계		226,245 (10,151)	27,815	32,880 (7,614)	24,193 (533)	32,260 (514)	49,300 (1,209)	10,434	14,611	2,194	19,505 (282)	21,763
평균		≒ 6,303 (≒ 282)	549	913 (212)	672 (15)	896 (14)	1369 (34)	290	406	61	542 (8)	605
점유비		100.0(%)	8.73	14.53	10.69	14.25	21.79	4.61	6.45	0.97	8.62	9.61

부문별 사업비의 점유상태[표4-9]를 보면 농촌관광 분야가 21.78%로 가장 높고 전권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득기반부문과 문화·복지부문이 14%대로 비슷하고, 주민 역량강화부문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이 집행된 후의 주민역량강화 결과가 크게 기대 됨.

소득기반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는 권역도 두 권역이나 있으며, 전반적인 경향이 하드웨어 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업선택 항목과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마을 재개발 항목 추가 필요

사업메뉴에 있어서 농촌마을에 도시민도 와서 정주하고 도시생활에 못지않게 변화시켜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인 손질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마을 재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할 사업메뉴가 없어 보완이 요구됨

나. 마을사무장 및 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항목 지원

“마을 기획 및 운영(S/W 분야)” 에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을 위한 예산은 가능하나 본 사업이 소프트랜딩(Soft landing) 할 일정기간 동안 사무국 및 마을사업추진위원회 운영항목은 없어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요구됨.

다. 노후 주택정비를 위한 융자금 지원 현실화

노후 된 주택정비를 위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주택신축의 경우 호당 2,000만원, 개량은 500만원 한도이며, 융자금리가 시중은행의 융자금리와 같은 수준이어서 쾌적한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주민부담이 너무 많아 신청할 수 있는 세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라. 소득사업 부문의 사업타당성조사 권고

주민들이 1차적으로 원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은 소득사업인데 다른 농림부 사업과는 달리 80%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사업 추진 요구가 높으나 소득사업의 실패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바 가능한 한 기본계획수립 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권장하여야 함.

시행계획과정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업이 더욱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인 바 소득사업부문은 "사업의 필요성, 주위 개발여건, 기본구상(사업목표, 전

략, 수요추정,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그리고 사업추진방법과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함.

4.5.2. 개선방향

(가) 사업메뉴에 마을재개발 항목 추가

사업메뉴에 “마을재개발” 항목을 추가하여 마을 전체의 주거환경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부문은 보조사업으로, 개인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보조, 융자, 보조와 자부담의 형식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함.

도시에서의 재건축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여 주거용지 및 주택도 추가로 확보하여 도시인 또는 귀농, 귀향자에게 분양할 수 있게 하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특히 마을 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보다 더 많은 지원(융자기간, 이율, 자부담 비율)을 줄 수 있도록 차별화가 가능하게 하고 특히 분양용 택지와 주택건설에 소요된 예산은 장기 저리융자가 가능하게 하며 분양용 택지나 주택은 사전분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 및 위험부담을 낮추어야 할 것임. 여기에 포함될 사업메뉴는 기존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메뉴” 외에 “분양용 택지 및 주택” 항목을 추가함.

(나) 유급사무장제도 도입 및 추진위원회 운영관리비 계상

사업비지원 한도가 70억원이나 되고 3~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마을종합개발 사업을 마을 개발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 등의 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만 맡길 수 없음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권역에 상주하면서 계획수립, 사업시행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보좌하는 유급사무장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사무장의 업무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보좌, 행정사무 전담 및 공동시설운영관리, 사업관련 주체들과의 연결고리, 주민의견 조율지원, 기타 추진위원장이 부여한 사항으로 하며, 사무장 채용 시의 자격조건으로는 이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농촌개발 및 농업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 해당사업권역 내에 정착을 희망하는 자, 계약기간 3~5년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자, 귀농 의사가 있는 권역출신 자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채용 및 신분>

대안1 : 해당권역 지자체가 선임하되 3~5년 임기보장

시와 군의 별정계약직 공무원신분이나 예산은 국고지원

대안2 : 법인화된 추진위원회가 선임, 국비, 지방비공동부담

채용된 사무장이 그 권역에 정착하고자 할 때는 주택신축자금 등 정책자금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농민후계자 확보, 청년실업해소 그리고 사업의 성공담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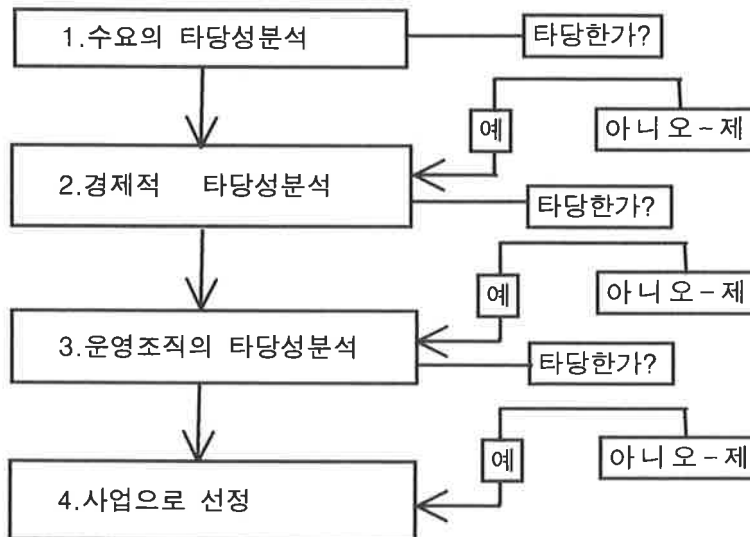
(다) 건강 및 복지 관리시설운영비 20%, 5년 지원

권역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강 및 복지증진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시설운영시작 이후 5년 동안 20%까지 이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항목은 “화재 및 시설이용자 안전관련 보험료 전액”, “에너지 및 시설보수비용 일부”로 구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일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별이용료의 성격은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라) 소득기반사업의 범위 및 타당성분석 권장

소득기반사업의 범위가 다른 유사사업과 차별화되고 또 연계되어야 하는데 다른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되 연계는 권장하여 사업의 상승효과를 높이도록 하며 주민 10명 이상의 작목반 및 법인이 추진하는 소득증대 및 부대지원사업으로 하고 이들의 이익의 일부를 권역공동발전기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함. 또한 농림부의 농특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하고 포함된 사업일지라도 적용기준이 상한선이 있는 경우 그 이내의 사업으로 하고 마을의 지속성 및 경제성을 바탕으로 권역 전략산업 (지역자원 바탕 우선)을 3~5개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농림부 및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소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그 부대 지원사업으로 범위를 정함.

[그림4-8]과 같이 각 단계별로 타당성분석을 하여 타당한 경우에만 다음단계의 타당성분석으로 이어지고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제외하는 단계별 타당성분석 접근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그림4-8] 소득기반사업의 타당성분석 흐름도

(마) 주택사업 지원제도 개선(지원단가 상향조정, 금리인하)

신축주택의 호당지원액이 2,000만원인데 현재 건축비로 보면 평당 250~300만원이 소요되어 25평의 농가주택을 건축한다고 가정할 때 총 6,000~7,5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됨에 따라 정책자금으로 2,000만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4,000~5,500만원이 추가 소요되므로 이 금액을 개별세대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주택개량시의 융자지원액도 500만원으로 이 금액으로 주택을 개량할 수요도 많지 않으며 이율도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므로 근본적으로 농촌주택을 도시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장기적인 수명을 갖는 주택이 신축되고 개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축주택의 경우 규모만 상한선을 정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융자로 지원하되 융자조건을 훨씬 탄력있게 적용하여야 함(Soft Loan).

이율을 국가 정책자금 중에서 최저로 낮추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영구임대주택보다 좋은 조건이 되도록 함. 그리고 주택개량사업도 주택개량에 필요한 전액까지 융자해주고 융자 조건의 이율은 신축의 경우보다 낮게 하고 거치 및 상환기간은 신축경우보다 짧게 하여 농촌의 주택과 주거환경이 장기적으로 자산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주민교육훈련비 지출시기 조정 등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사업내용의 충실도와 사업성공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되어야 비용을 지출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교육과 훈련비 및 선진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예비계획서 평가 시 이러한 교육, 훈련 그리고 선진지 견학 내용을 평가 항목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4.6.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4.6.1. 현황

현재 시행계획수립 단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예비계획서 작성,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은 시행계획이 될 우려가 있어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시·군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에 해당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권역개발효과(임금)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4.6.2. 개선방향

(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밀접한 연계

시행계획의 입찰 참여조건에 기본계획수립 참여자와 주민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전문연구기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받아야함을 명기하고, 시행계획의 내용을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연석회의에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문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나) 단계별 사업집행과 단계별 사업성과평가 및 다음단계 반영

○ 대안1(일괄 설계, 분리 시행)

세부설계의 경우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한 번에 수립하여 한 번에 일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 임. 사업비나 사업이 1단계에 끝날 수 있는 것을 1단계에 배치하고 예산은 전체예산 중 1단계에는 총사업비의 3/5, 2단계에는 2/5로 상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집행 계약은 1단계만 하고 1단계가 끝날 때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좋을 때 바로 2단계 집행절차를 받도록 함.

(장점) 단계별로 연계가 순조롭고 1단계평가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절감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사업추진 의지를 확신하여 그에 대응한 자기 준비를 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단점) 1단계평가결과가 나빠 2단계 추진을 중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경우 2단계부분의 시행계획 수립비용과 노력이 낭비 됨.

○ 대안2(분리 설계, 분리 시행)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단계별 사업내용에 따라 우선 제1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은 후 그 1단계사업만 집행하고, 1단계 사업의 집행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의 계속 시행, 중지, 축소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2단계의 계속시행 또는 축소의 경우 2단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함.

(장점) 제1단계 사업성과의 평가결과로 2단계의 시행여부 및 축소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1단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1단계결과 중지해야할 곳의 2단계 시행계획수립비용과 2단계 사업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단점) 두 단계간의 사업연계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제1단계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고 집행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하므로 이런 것을 고려하면 1단계 사업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평가는 1년 정도의 사업집행 평가일 가능성이 커 정확한 성과평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대안3(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3단계로 나누어 1, 2단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제 2안과 같이 1단계, 2단계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양호한 권역에 대해서는 포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여 권역에서 1, 2단계의 소프트랜딩(Soft landing) 또는 자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함.

(장점) 이것은 사업전체의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제(Incentives)로 제2안에서는 제1단계 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였는데 제3안에서는 주민과 지자체의 열성을 제2단계까지 연속시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보너스로 사업비는 지속적인 권역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임.

(단점) 보상을 위한 추가 예산이 요구되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다) 단계별 평가방안

농림부장관이 평가주체가 되어 “목표-달성 매트릭스 방법”(Goal-achievement Matrix Method)¹¹⁾을 원용하여 평가함.

평가항목은 각 사업별 계획목표의 달성정도,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의 실천정도, 그리고 주민역할에 대한 약속의 실행 정도(사업추진협약서, 법인구성 및 운영, 소득기반사업의 주민부담 등)의 세 분야로 나누어 [표4-10]가 같은 점검표를 만들어 평가함.

이와 같은 점검결과에 따라 95%이상은 아주 좋음, 90~94%는 좋음, 80~89%는 보통, 70~79%는 나쁨, 70%미만은 아주 나쁨의 5단계로 구분, 나쁨은 축소, 아주 나쁨은 2단계 사업을 중지하고 이 경우의 권역 지자체에게는 유사사업신청 시 별점을 부여함. 그리고 단계 사업비 총액의 50% 이상의 사업이 50%미만 성취율을 보인 경우도 중지함.

단 성취율이 5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이 타당한 근거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함.

11) 한국지역개발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 지역개발학 원론, 법문사, 1996, pp.290-293.

[표4-10] 단계별 사업성과평가 점검표(예)

00권역 제 0 단계 사업성과 점검표				
평가항목 대 구분	하위 평가항목	목표(A)	성취도(B)	성취율 ((A/B)*100)
사업별	1.마을회관건설	4	3	75%
	2.마을 생울타리 건설	1500m	1400m	93%
	3.			
지자체 역할	1.지방비확보	5억원	3억원	60%
	2.			
주민역할	1.소득기반사업 부담	5억원	4억원	80%
	2.			

0000년 00월 00일
평가자 0000 인

첨부 1. 성취율이 50%미만인 사업별 원인
2. 사업평가의 종합소견

(라) 시행계획승인과 예산확보의 연동화

시장·군수가 매년 사업비를 별도로 신청하고 확보해야 하는 현 제도를 단계별 사업비 상한선 제시, 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시, 농림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계획승인 내용이 곧 매년 사업비 확보를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업무부담도 줄이고 예산부서의 예산 수요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물론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을 것임.

(마)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방안 도입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사업들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의 사업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된 사업들 중에서도 응찰조건에 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도록 함.

이 사업의 집행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해야 하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의 재배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 및 대표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에 근거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제7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 사항과 부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정부" 및 "국고"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감사원"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1990.11.6, 1993.9.23, 1994.12.23, 1995.7.6, 1998.7.16, 2001.9.15>

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사업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2.11.29>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마련된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규칙(행정자치부령 198호:2003. 3.22 일부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사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소하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 소교량 및 암거의 가설공사, 농업용수시설의 설치·개수 또는 보수공사, 국토가꾸기 사업, 소규모의 사방공사, 재해복구공사, 주민공동이용의 소규모 시설공사, 소규모 야산개발사업, 소규모 어항축조공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사”로 설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공사감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이 규정에 의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시공하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추정금액의 상한선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상한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름.

4.7.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4.7.1. 현행 사업 지침에 의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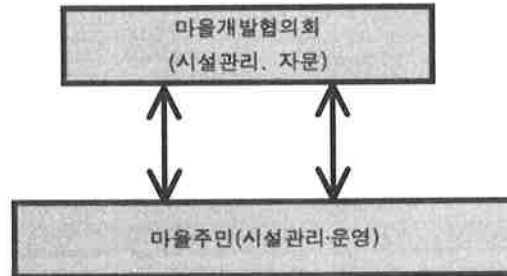
하나의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계획이고, 이 계획을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집행임. 집행 또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함.

사업집행 이후 사후유지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에 부여하고 있음.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은 시장·군수와 마을 간의 협약 등을 통해 마을 공동으로 소유, 운영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음. 물론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마을주민과 협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마을개발협의회는 사후관리 단계에 있어 자문과 모니터링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마을개발협의회와 주민간의 관계는 [그림 4-9]와 같이 나타남.



[그림4-9] 현행 사후관리 체계

현재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로 하고, 시장·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와 부분적으로는 주민조직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7.2. 개선방향

가. 모니터링 방안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기록” 12) 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a Situation)이나 개별사례의 밀접한 관찰을 통해 취해야 할 추가적인 활동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짐13).

- (1)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음.
- (2)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3) 어떤 상황에 대한 밀접한 관찰은 꾸준한 또는 반복적인 조사와 발전내용의 서류화를 통해 이루어짐.
- (4) 어떤 상황과 사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그들이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할 때는 사용할 기준이나 규범이 있어야함.
- (5) 기준이나 규범과 어떤 상황과 사례를 비교할 기법이 마련되어야 함.

12) South Yorkshire Funding Advice Bureau Information Sheets,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small groups
Last updated January 2004

13) Manuel Guzman & Bert Verstappen, What is monitoring, Human Rights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Series, Volume 1, Verioix, Switzerland, 2003, pp.4-6.

(6) 모니터링의 최종 내용은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서임.

(7) 이보고서에는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는 평가서이어야 함.

이러한 모니터링은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

(1) 모니터링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

(2) 누가 모니터링 할 것인가?

(3)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4) 계속적인 모니터링전략이 무엇인가?

(5)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정할 시스템(Updating system)이 구축되어 있는가?

(6)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업성과에 대한 건전한 여론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따라서 모니터링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것임. 그러나 2004년 신규 착수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2004년과 2005년도 착수지구는 벤치마킹할 만한 선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획수립과정이 배움과정(Learning Process)이 되었으며, 이 분야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해 사업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feedback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은 사업 추진 절차를 복잡하게 하며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예가 많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 잘 만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포괄보조금과 지방의 재량권이 증대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모니터링 업무가 갈수록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사업 추진과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음 “14)

14) 박시현, 박주영,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P75, 2004.12, pp.6-10.

모니터링의 대상은 본 사업의 주관기관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집행과 사후관리”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은 기존연구¹⁵⁾를 참조, 모니터링 담당 조직을 중앙단위와 지방단위로 2원화하여 제시함.

○ 중앙단위

- 사업 추진 부서인 농림부 주도 아래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 모니터링 전담조직은 지역개발, 마을계획수립경험자, 농업경제, 유통, 토목, 건축, 생태, 문화 및 관광,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가 약 30인 내외로 구성.
- 모니터링 업무 추진 방향, 주요 모니터링 항목 결정 등 모니터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
- 계획수립대상지역이 1년에 30개 이내일 경우 계획수립에 관한 모니터링도 담당. 이 경우 모니터링 요원 한 사람이 전국의 모든 계획수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을 4개 팀 정도로 나누어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모니터링 조직은 현재 농림부에 설치된 농촌지역개발 실무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무난하다고 판단되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가능.

○ 시도 단위

- 각 시도별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
- 10인 정도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조직이 바람직.
- 중앙 모니터링 조직에서 작성한 모니터링 실시 지침 등에 기초하여 관할지역 내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을 모니터링.
- 특히 계획수립 대상지역이 확대 될 경우 중앙단위 조직만 가지고 대상지역 모두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시도 단위에서 각 권역별 시행계획 및 사업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주로 계획수립이후의 사업추진(물리적인 사업의 시공, 소프트웨어분야 사업의 진행)을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함.
- 모니터링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 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15) 상계서, pp.6-10.

나. 사후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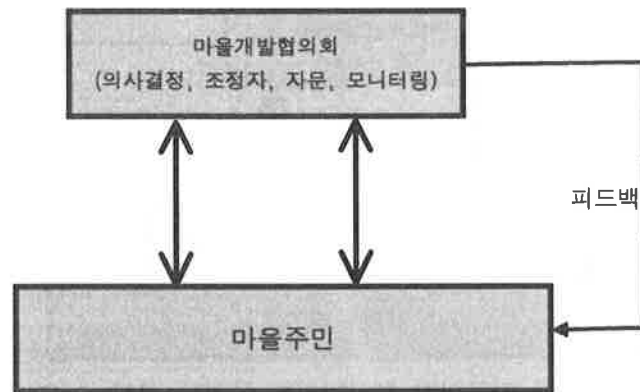
(1)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의 구축 방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 마을개발협의회와 마을주민은 사업의 예비계획, 사업추진 단계에서 중심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사후관리 및 평가단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사후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에 있어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 즉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와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i)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

먼저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는 사업단계에서 예비계획과 사업추진에 관해 조정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마을개발협의회가 사후관리 및 평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을주민대표, 시·군관계자, 지역 관련전문가들이 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험을 쌓은 만큼, 마을개발협의회가 사업 이후에도 [그림4-10]와 같이 시설물이용 지원 및 시설보수기술지원 등과 같은 시설의 유지관리 뿐만이 아니라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관리 및 평가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마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접근형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마을개발협의회에서는 구성원 중 각각의 마을지도자를 통해 주민들과 접촉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된 연대감을 활용하여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면서 주민들 및 권역 내 마을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원 중 지자체 및 전문가 그룹은 지역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조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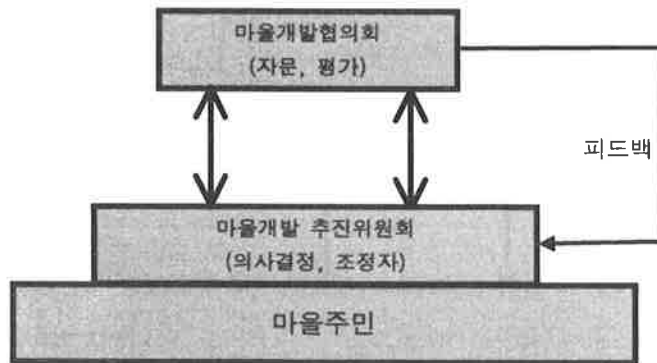
[그림4-10]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

ii)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는 [그림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주민자체로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한 주민의 자립적인 자치능력을 제고시켜 이 조직을 통해 향후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련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접근 방법임. 이 방법은 마을주민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마을개발 추진위원회를 육성하여 사후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는 기존의 마을개발협의회가 맡게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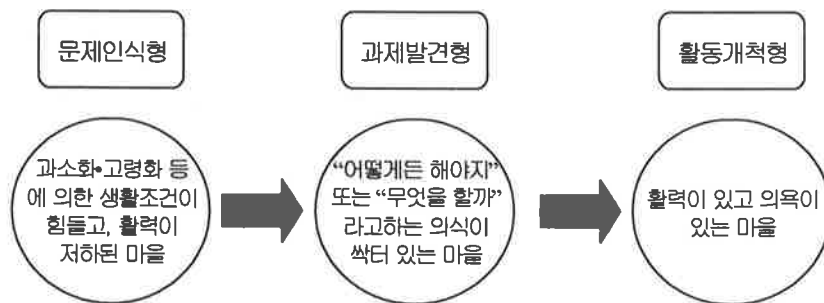
여기에서 마을개발 추진위원회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기반시설과 농촌관광시설 등 종합개발사업 메뉴에 의해 수행된 사업과 시설과 관련된 주민조직들과 연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주민조직을 통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함. 이처럼 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 간에 상호 연대감을 형성시켜 공동체意識을 고조시키고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것을 근간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와 권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그림4-11]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

마을개발 추진위원회가 가져야 할 진화적 기능은 [그림4-12]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파트너십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개발 추진위원회는 마을 주민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마을권역에 있어 문제 인식형, 과제 발견형, 활동개척형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마을 개발협의회에서는 조언과 모니터링의 역할을 통해 마을개발 추진위원회가 마을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유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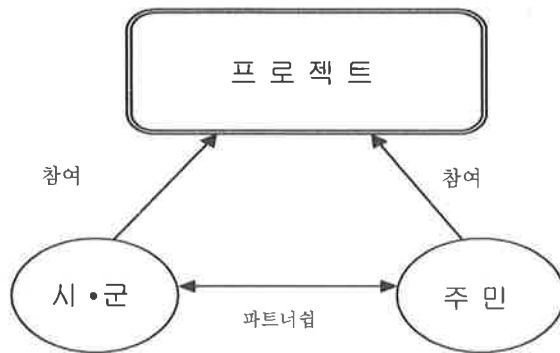
[그림4-12] 마을개발 추진위원회의 역할

(2)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의 구축방안에 따른 대안별 장단점

i)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마을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되며 사업시행단계인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 등에 수시 협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그림4-13]과 같이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프로젝

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림4-13] 프로젝트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

<사후관리에 있어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의 장점>

마을개발협의회가 사후관리 및 평가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업의 예비 계획, 사업추진, 사후관리에 있어 일관된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이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부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유도하기 용이하며,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수행한다면 민·관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형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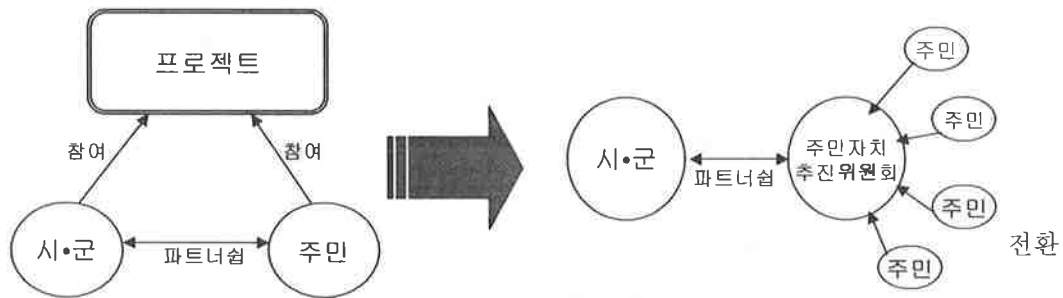
<사후관리에 있어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의 단점>

현행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사후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에 의해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후유지관리의 책임이 시설물 관리에만 한정되어 지자체의 장에게 주어져 있고 지역주민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지자체장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후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사후관리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사후관리 체계 속에서는 사업이 끝나 후의 마을개발협의회의 기능은 시설물관리에만 치중될 가능성이 높음.

사업시행이 끝난 후에도 마을개발협의회가 마을현안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마을문제를 파악하고 과제를 발견하며 자발적으로 활동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수행 후에 형성된 관·민 파트너십에 의한 경험과 지식을 살리지 못하고 향후 마을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ii)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는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보다 주민의 역량과 자율적 참여가 한층 요구되는 접근이라 할 수 있음. 이것은 [그림4-14]과 같이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 주체간의 파트너십의 경험을 토대로 강화된 주민의 역량을 한층 발전시키는 접근체계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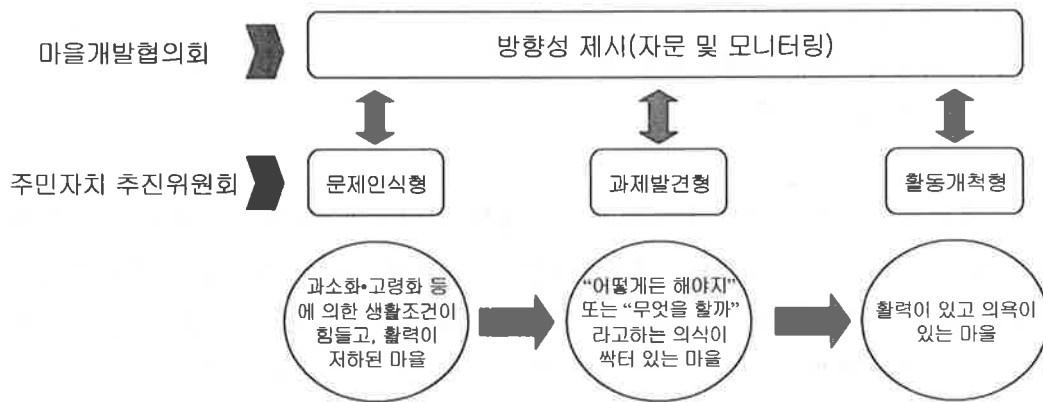
[그림4-14]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체계 흐름도

<사후관리에 있어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의 장점>

[그림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개발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사업의 예비계획, 사업추진을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조직을 주민자치 추진위원회로 전환시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수 있음.

마을개발 추진위원회는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부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개발협회의 자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 마을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받아, 향후 발전계획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마을개발협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수행하기가 용이하며 주민자율성을 보장한 민·관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형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 체제는 기존의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후관리에 그치지 않고 마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마을역량과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임.



[그림4-15]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체계의 역할의 장점

<사후관리에 있어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의 단점>

마을개발 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민자치에 대한 마을주민의 역량을 필요로 함.

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관·민 파트너십을 형성한 경험과 노하우를 마을개발 추진 위원회로 전환하여 향후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과제를 발견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마을에서는 기존의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설 유지라고 하는 단순한 요구 사항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계획과 의지가 요구됨.

따라서, 기존의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설의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마을개발 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려는 향후 발전계획의 변화에 대응하여 마을개발협의회가 지원을 하여야 함.

또한, 현재 마을종합개발사업에 가장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고령화와 인재의 부족은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체계의 수행에 있어 농촌마을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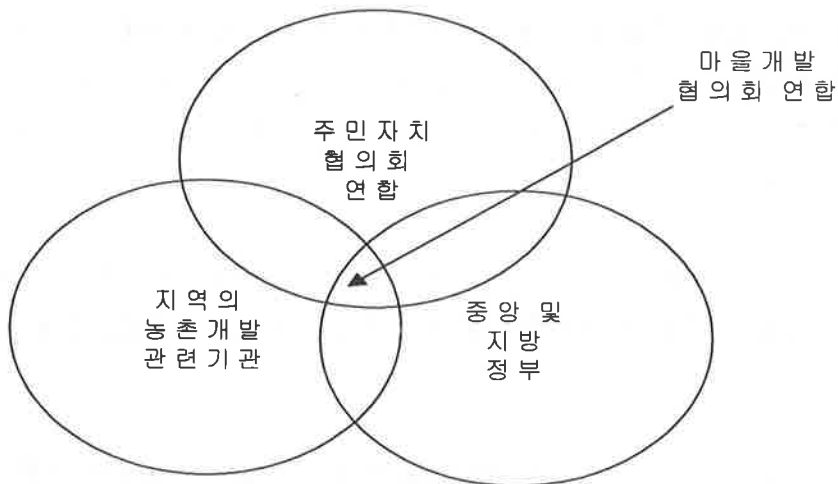
4.7.3. 선택대안에 대한 개선방안

사후관리 및 평가에 있어 선택대안별로 상호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마을의 진행상황과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에 의해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사업의 성과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음. 3년 동안 계획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민간의 상호학습의 경험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것임.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마을개발협의회의 자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역의 문제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마을개발 추진협의회 중심 체계의 대안은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여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할 수 있음.

이러한 사후관리체계가 보다 시너지효과를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림4-16]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여타 마을권역과 연합회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그림4-16] 마을개발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연합 형성

해당권역의 여건과 수준에 따라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나 마을개발 추진위원회 중심형 체계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중심체계가 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마을개발추진위원회는 법인화 하여야만 지속성, 책임성을 유지하고 본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마을개발 추진위원회의 법인화 방안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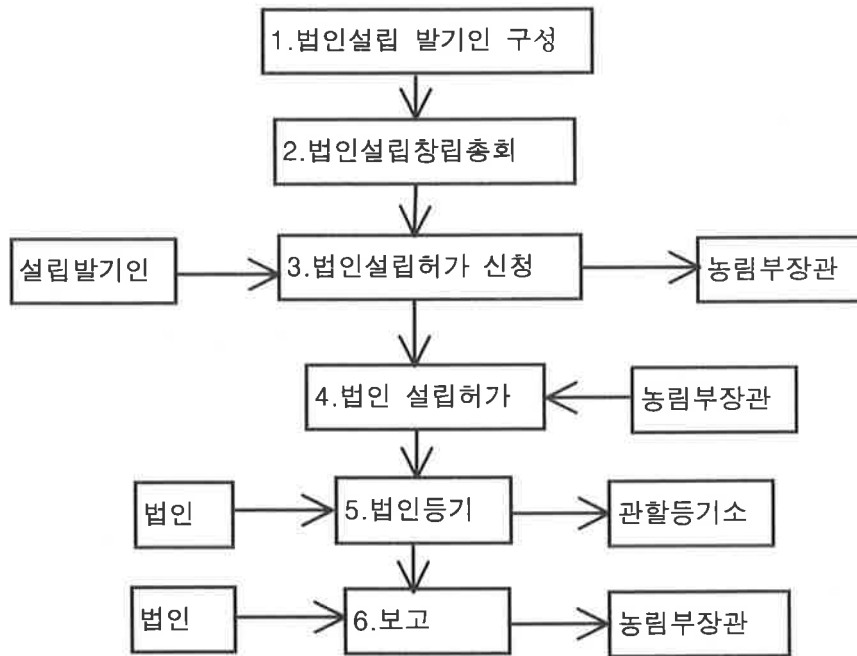
법인 [法人, juridical person: juristische Person] 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자연인에 의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임.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이 적합한데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教),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32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됨(33조).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며 그 성질은 합동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부가 의사의 흠결(欠缺)이나 하자(瑕疵)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때에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함.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 등이 있으며 이 중 사원총회와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임.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므로, 사원총회를 통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므로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는 해산사유가 되며(77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되므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적용이 가능함.

따라서, 사업권역별로 농림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가칭 “(사단법인) 00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회” (명칭은 주민들의 총의에 따라 다양하게 상징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농림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림부의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전문개정 2000. 3. 6 농림부령 제1357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추진절차는 [그림4-17]과 같음.



[그림 4-17]법인 설립절차

- 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가칭 “(사단법인)00 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전환함
- ② 법인설립발기인들은 법인설립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함. 창립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우선 “법인설립의 목적, 법인의 사업내용과 범위, 법인의 구성과 조직, 법인 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법인의 정관(안)을 만들.
- ③ 정관(안)에 포함될 내용을 예시하면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해당권역 마을개발추진 목적, 모니터링,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제3조(소재지)

제4조(사업회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취득)

정회원: 권역 거주 세대주

단체 회원: 본 권역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명예회원: 출향인사

특별회원: 본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비)정회원회비,단체회원회비,명예회원회비,특별회원회비

:연회비 또는 중신회비

:회비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함.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0조(임원의 종류)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녀 각 1명),총무이사 1명, 이사 (참여 마을별 2명 이상 5명 미만: 마을 별 세대 수 고려), 상임이사(마을별 이사 중에서 1명), 단체이사(단체 별 1명),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부회장은 회장추천에 의해 총회승인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

제13조(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각 권역별로 조정)

제14조(분과위원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것은

내부 규정으로 결정

제15조(임원 및 분과위원의 보수)

:무보수 원칙,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지급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의 종류):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제17조(총회)

:정관의 개폐 및 변경, 임원선출, 사업계획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주요사항

:총회는 정기총회(연 1회) 및 임시총회

: 재적정원의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출석한 자의 다수결로 의결.

제18조(이사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총회위임사항,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회비결정,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요구 시 소집,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다수결로 의결

제18조(상임이사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총무이사구성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기타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

:회장이 소집

제5장 사무국

제19조(사무국)본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 둠.

제20조(직원)

:사무국장 1명, 필요 시 간사 약간 명

:사무국직원은 유급, 상임이사회추천으로 회장 임명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1조(자산)자산은 참여마을이 제공한 공동자산, 회비, 정부지원금, 사업회 활동에 따른 수입, 찬조금, 기타 수입

제22조(특별회계) 필요한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둘 수 있음.

제23조(예산결산 및 자산의 승인)

제24조(총회결과의 승인 등)

;다음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회계연도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제25조(회계연도) 정부회계연도와 동일

부 칙

제1조(준거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의 관례에 따름

제2조(최초회원 및 임원) 창립총회 시 등록된 회원 및 임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

제3조(해산 및 자산의 처리)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정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함.

제4조(시행) 본 장관은 창립총회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일자로부터 효력발생.

④ 발기인 회의에서 마련된 정관(안)을 각 마을회의에서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음. 모든 세대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선출함.

⑤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

이때 필요한 서류는

- 법인설립허가신청서(“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 규칙(전문개정 2000. 03. 06 농림부령 제1357호)” 별지 1호 서식)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⑥ 농림부장관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허가를 하여야 함.
- ⑦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으면 허가증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필하고[표4-11] 그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법인으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획득하게 됨.

[표4-11] 법인 등기 설립신청서 양식

법인설립등기신청									
접 수 번호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법인의 설립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도착연월일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 사 무 소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이사의 대표권 에 대한 제한									
목 적									
분 사 무 소									

설립허가연월일			
준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			
기 타			
과세표준액	금	원	등 록 세
교육세	금	원	세 액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정관	총	1. 주민등록표등본	총
1. 총회의사록(이사 선임서)	총	1. 인감신고서	총
1. 허가서	총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봉지서	총
1. 재산목록	총	<기 타>	
1. 취임송낙서	총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등기할 사항 중 당해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용지규격 21cm×29.7cm)

4.8. 사업기간의 적정성

4.8.1. 현재의 사업기간

2004년에서 2005년 기간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음.

- '03. 12. 31 : '04년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확정·통보(농림부)
- '04. 1. 30 : 도별 사업예정지를 선정, 농림부에 추천
- '04. 3. 10 : 제1차 중앙지역개발심의회 개최
(대상지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협의)
- '04. 3. 26 : 제2차 중앙지역개발심의회 개최(36권역 선정)
- '04. 4. 1 : '0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기본계획수립 추진지시(농림부 → 시·도, 농업기반공사)
- '04. 4월~'05. 6월 : '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3단계(구상, 중간, 최종) 평가 실시
- '05. 7월~'05. 8월 : 권역별 기본계획승인 절차
- '05. 9월~ : 권역별 시행계획수립 중
- '04. 12. 20 : '05년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확정·통보
(농림부→시·도)
- '05. 5. 19~7. 29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50권역, 외부전문가와 공동조사 및 평가 실시)
- '05. 8. 12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05년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확정
(40권역) 및 기본계획수립 추진지시(농림부 → 시·도, 농기공)
- '05. 8. 26 : '05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
(계획수립 중)-'05.12월 31일 완료 예정
- '05. 11. 7~ : '05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기본계획(안) 1단계 평가자문회의 실시

이를 분석해 보면 첫째인 2004년의 경우 사업시행지침 통보에서 대상지역 선정까지 약 4개월, 기본계획수립은 약 14개월, 그 승인 절차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2005년도 사업추진은 사업시행지침 통보에서 예비계획서작성 제출까지 약 4개월, 예비타당성조사와 대상지 선정은 3개월,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은 약 5개월을 산정하고 있음.

예비계획서 작성에 약 4개월이 소요된 것은 2004년, 2005년 모두 같으나, 2004년도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된 기간은 2005년도 5개월(예비타당성조사 기간 3개월을 포함시키면 8개월)에 비하여 훨씬 긴 14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이어서 신중을 기하고 바른 모형을 정리해가는 학습과정 이어서 소요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앞으로 2-3년의 추진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체계가 안정화되고, 행정 노하우가 축적될 경우에는 보다 원활한 일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8.2. 개선방향

각 단계별 사업기간은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사업기간에 대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그 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다음은 현 지침과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수립과정을 참고하여 각 단계별 최소 소요기간을 상정한 것이나, 기초 자료구축 등 사업신청마을의 사전준비가 더욱 잘 이루어지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사전지침이 공개되고 관심있는 마을 지도자들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서 예비계획서 내용도 충실해지고 사업 준비기간의 단축도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 됨.

- (1) 예비계획서 작성: 4개월(사전에 지침이 공개 되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실제 작성하는 기간만 계상함)
- (2) 예비타당성 조사: 3개월(기본계획수립 시 100%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조사 및 예비계획서의 추진가능성 파악·제시)
- (3) 선정기간: 15일(중앙지역개발심의회 개최)
- (4) 기본계획수립기관 선정: 1개월(입찰절차)
- (5) 기본계획수립: 6개월(계약 후 순수 수립기간)
- (6)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관련 행정절차: 1~2개월
- (7) 승인절차: 1개월
- (8) 시행계획수립기관 선정: 1개월(입찰절차)

- (9) 시행계획수립: 6개월
- (10) 승인절차: 1개월
- (11) 사업자 선정: 1개월 (입찰절차를 통하여 선정)
- (12)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3년~5년(가능하면 3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예외적으로 5년까지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함.)

사업시행기간은 사업비만 확보될 수 있다면 5년까지 길게 계상할 필요가 없이 3년 이내에 완료하여 사업의 효과를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안

5.1. 핵심내용 요약

우리나라 농촌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므로 농촌과 농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1) 농촌의 문제와 농촌지역개발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문제를 보면 첫째, 농촌의 생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인 인구, 세대 수의 감소와 농촌사회의 초고령화 그리고 낮은 인구밀도에서 오는 농촌사회에 필요한 간접자본 투자의 어려움, 둘째 정주기반이 도시에 비하여 낙후되고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도시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이촌 및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됨, 셋째,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도시와 농촌의 동등한 교류를 어렵게 하고 도시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으로 잘 못 인식되어지면서 도시민 특히 도시의 어린이는 농촌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여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분리가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의 큰 원인이 될 것임, 넷째, 농촌은 식량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식량기지의 주인인 농민의 위상이 낮아지고 영농의욕이 상실되어 영농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생태계 균형자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촌지역개발이 필요한 것은 첫째, 좁은 국토공간에서 정주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둘째, 다가오는 식량안보시대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농촌을 개발하여 식량기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셋째, 생태계 균형자로서 농촌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넷째,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문화의 본래 뿌리는 농촌마을 그리고 농촌사회였으므로 공동체문화의 복원을 위해서 임.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연혁 및 현황

2003년 8월부터 추진해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5년 10월 현재,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에는 40개 권역을 선정하여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36개권역의 권역 당 평균사업비는 약 63억원, 권역 당 평균 면적은 1,697ha이고, 법정리는 2.8, 행정리는 5.4, 참여마을 수는 8.8, 가구 수는 456세대이고, 이중 농가세대는 286세대, 인구는 1,178명임. 이들 권역의 개발방향을 보면 농촌관광 14권역, 생활환경 5권역, 소득기반 7권역, 복합형 10권역으로 농촌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각 부문별 사업비 구성을 보면 기초생활부문 8.73%, 소득기반부문 14.53%, 경관정비부문 10.69%, 문화·복지부문 14.25%, 농촌관광부문 21.79%, 운동·휴양부문 4.61%, 환경시설부문 6.45%, 재해시설 부문 0.97%, 주민역량강화 8.62%, 그리고 제 경비 부문 9.61%로 농촌관광부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정체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으나 각각 추구하는 특정 주제를 갖고 있으며, 부분별 단기적인 사업인 반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 정주공간 구조개편의 첨병이고 장기적이고 단일 주체가 아닌 종합적 농촌지역개발이며 과정을 중시하는 상향식 농촌 공동체 복원 사업이고 농촌다움과 마을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농림부 및 다른 부서의 유사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업임.

(4) 사업권역 설정방법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36개권역의 규모는 농촌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이 고려되어 매우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인구나 세대수 모두 얼굴을 맞대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규모여야 할 것임. 면에 있는 마을들의 연합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마을이란 자연마을을 말하고 법정리 1개 이상에 자연마을 3개 이상을 최소한의 규모로 함.

사업권역 설정은 주민참여(주민참여와 마을간 협조, 경제활동단위 연계), 자원 활용(자원분포와 연계성; 자연자원 및 인적자원)을 1차적으로 고려한 후, 지리적 동질성, 체험방문자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미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만 어느 경우든 권역의 규모(마을 수, 인구 수 등)와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의 차등화지원 원칙은 강조되어야 함

한편, 시장·군수와 지역주민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주민협약에 의한 난개발방지조례를 제정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 라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 조례로 지정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5) 기본계획수립

예비계획서를 주민 친화적(User-friendly)사업신청이 되도록 「권역개발주민제안서」로 전환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 책임연구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본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마을개발협의회의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사업추진의 적합성 조사로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외지인 등에 의해 권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부재, 평가체계의 간소화, 권역 내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 주민 교육훈련비 지출시기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는

- 권역선정 후 난개발방지조치 및 법정 개발지역 지정
- 기본계획평가시스템을 자문시스템으로 전환
- 농촌마을 기초자료 DB구축관리
- 계획수립기간의 일정제시(Road map)
- 농림부 지정 전문연구기관의 책임 있는 자문참여 및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 시행계획의 설계지침이 될 수준의 기본계획 내용
- 수립내용 중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조기집행 모색
- 소득사업 부문의 사업타당성조사 권고
- 주민 및 관계인의 상설 교육체계 구축
- 시군 지역개발직군 신설
- 지역계획사 제도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농림부 및 시도 공동 선정과 시도의 선정방법 등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사업이 정착 단계로 가는 것과 병행하여 분권과 지방자치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나, 이 사업의 바람직한 모형이 정립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농림부 및 시도 공동 선정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사업의 내용(메뉴) 및 사업비

현행 사업내용(메뉴)에서 마을재개발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마을사무국 및 마을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역별 기본계획에 연계지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미 반영 및 농촌주택정비 용자금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므로 유급사무장 제도 도입,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관리비 계상, 건강 및 복지 관리시설비 운영비의 20%한도 내에서 사업기간인 5년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촌주택정비 용자금 지원제도 개선(지원단가 상향조정, 금리 인하), 주민교육훈련비 지출시기 조정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됨.

(8) 사업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때 중앙단위 모니터링은 농림부 주도로, 시도 단위는 각 시도별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의 구축은 마을개발협의회 중심형 체계와 마을개발추진 위원회 중심형 체계중에서 마을개발추진위원회 중심체계가 더 바람직하므로, 추진위원회를 법인화 하여 지속성, 책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5.2. 정책제안

첫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철학의 근간은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접근 및 그들을 신뢰하는 데 두어야 함.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호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바람직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임.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해가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을 건전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여야 함

농촌을 단순히 농업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과거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서 약무농촌(若無農村)이면 시무국가(是無國家)임을 늦기 전에 모두 인식하고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둘째,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집중에 대한 정책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화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할 부분이 어디까지이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기는 쉽지 않음. 즉 이번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국가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토대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토대 위에서 바람직한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역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원칙적으로는 분권화의 정책흐름에 맞추어 농림부는 정책방향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그러나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제도구축과 지역개발모형 정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농림부의 역할이 중요한 실정임. 따라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되고 개발모형이 정립되는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분권의 정책원칙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셋째, 이 사업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시행근거를 두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추진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데, 각 법률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뒷받침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하위규정과 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함. 그동안 농촌개발에 관한 법규가 시차를 두고 많이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농촌의 여건도 크게 변하였기 때문에 농촌개발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재정비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림부 내의 다른 농촌·농업 개발 관련 사업 그리고 다른 정부부처들의 유사사업들과의 중복배제 및 연계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함.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통합방안은 중·장기과제로 하고 우선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섯째, 농촌지역개발을 지원하고 농촌 기초자료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Master Plan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마을개발추진위원회(차후 사단법인 마을개발사업회)의 업무를 현지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유급사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하여 사업지구로 선정됨과 동시에 유급사무장을 채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일곱째,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규보다 지역 공동체 정신이 해결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모두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역별 마을규약(협약)의 제정·운용을 유도해야 함. 특히 권역에서 이어져 온 오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이 되어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조정하고 실행해 가도록 하는 것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임.

— 약무농촌(若無農村) 시무국가(是無國家) —

제6장 참고 문헌

- 강신겸, 황명철, 농업·농촌발전과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4. 10 .6.
- 국토개발연구원, 지역계획기법연구, 1980. 12
- 김선기 외, 『오지 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방안』, 행정자치부, 2002.
-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지역발전론, 한울, 2003.
- 김정호, “농업·농촌정비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과제”,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정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1.
- 김찬호 역(엔도 야스히로),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황금가지, 1997.
- 남영우, 일본의 국토종합개발정책과 농촌지역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완대책, 2004.10.
- 농림부(공문), '05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추진계획(변경) 통보, 2005.1.27.
- 농림부(공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별 기본계획(안) 평가지침통보, 2004.10.
- 농림부(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개선을 통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2003.11.
- 농림부(농촌진흥과), 0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 2005.5.
- 농림부,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자문단』 제1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결과, 2004.8.
-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침, 2005.
-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기준(안) 검토 자료, 2004.
-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침, 2004, 2005.
- 농림부,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 제2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충북·경북지역), 2004. 8.21-22.
- 농림부,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 제3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강원지역), 2004. 11.13-14.
- 농림부,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자문단 제1차 현장방문 및 간담회결과, 2004.8.
- 농림부, 마을지도자, 시장·군수 합동워크숍 자료(전북·전남·제주, 경북·경남지역), 2004. 7.
- 농림부, 전원마을조성사업지침, 2005.
- 농림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제1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05-'09), 2005.4.
-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관계기관협의 결과에 따른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개선방안, 2004.10.
-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침, 2005.
- 문병채, 정보화마을부문 연구자료, 2005.4.
- 박대식, 박경철, 농촌지역사회의 변화동향과 전망-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84, 2003.12.
- 박시현, 박주영,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박시현, 박주영,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P75/2004.12.
- 송미령, 농촌지역 활력증진방안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10.25.
- 송미령, 박주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방안, 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P70/2004.9.
- 송인성, 독일의 농촌개발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송인성, 우리나라 소도시계획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mall Town Planning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 Strategies in Korea-, 1988, 전남대학교 논문집(경상편), 제33집, pp.27-52.
- 송인성, 농촌중심지와 농촌개발 - 통합된 공간개발전략으로써 농촌개발 -Rural Centre and Rural Development-Rural Development as an Integrated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1982.2, 도시문제, 제17권 제2호, pp.20-36.
- 송인성, 독일연방공화국의 농업공간재편성에 관한 연구 - 경지정리적 접근 - Laendliche Neuordn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lurbereinigung-, 1981, 12, 국토계획, 제 16권 제 2 호, pp. 110-120.
- 엄기철 외 4명, 논의 공익기능, 한국토비지, Vol.26(4),1993.,pp.314-333.
- 오마이뉴스, 2003.12.17.
- 윤원근, 국토정책과 농촌계획-일본과 한국의 농촌계획제도의 비교, 보성각, 2003.
- 윤원근, 농촌전통테마마을 & 농촌건강장수마을, 연구자료, 2005.
- 이성근,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사제도 도입방안,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발전방향-전문가 워크샵-, 2005.9.9-9.10,pp.61-85.
- 임경수, 문화역사마을, 연구자료, 2005.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2005. 4월.
- 한겨레신문 2004.02.22(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12.
- 한국개발연구원,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여건 정비, 어디까지 갈 것인가?:현황과 쟁점”,2001.
- 한국지역개발학회 교재편찬위원회, 지역개발학원론, 법문사, 1996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활용한 어촌·어항관광활성화 방안,2002.
- 해양수산부, 어촌체험조성사업 지침,2005.
- 행정자치부 대변인실,보도자료, 21세기 새로운 농촌(아름마을)가구기 시범사업추진,2002.10.24.
- 행정자치부, 2004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2004.10.
- 행정자치부,혁신매뉴얼과 사례,어떻게 만들 것인가?,매뉴얼 /사례제작 가이드,2005.4.
- 환경부(자연정책과),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지침,2003.10.
- 高橋巖, 高齢者 地域農業 家 光協會,2002
- 國土廳地方振興局過疎對策室, 過疎對策現況,平成7年版
- 山田晴義編著, 地域再生のまちづくり・むらづくり, ぎょうせい,2003.
- 大森彌 외3인, 自立と協働によるまちづくり 讀本 づぎょうせい,2004.
- Arend,Randall, Rural by Design,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Chicago, U.S.A., 1994.
- Bundesminister des Innern(Hrsg.), Empfehlungen, Beirat für Raumordnung, Bonn,1969,
Empfehlungen des Beirats für Raumordnung, Zielsystem fuer die raemliche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28, Oktober 1971), in: Raumordnungsbericht 1972 der Bundesregierung, BT Drucksache VI/3793,p.155.
- Glasson,John, An Introduction to Regional Planning, Hutchinson of London, 1974.
- Guzman,Manuel & Bert Verstappen, What is monitoring,Human Rights Monitoring and

-
- Documentation Series, Volume 1, Veröix, Switzerland, 2003.
- Raumordn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68, Raumordn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71,
- Song, IN-Sung, Strategies for Rural Urbanization (Rurbanization) in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aet Dortmund, 1981.
- South Yorkshire Funding Advice Bureau Information Sheets,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small groups Last updated January 2004.
- Worriefeld, Schöne-Ziele und Maßnahmen der Dorferneuerung bei der Neuordnung des ländlichen Raumes, in :Dorferneuerung Flurbereinigung und Bauleitplanung, Franz Walk(ed.) Institut für Staedtebau, Berlin, Heft 15, 1978, p.20.

부록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

1. 머리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 제안서 작성에 관한 매뉴얼의 필요성

지금까지 농촌마을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이농,탈농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음.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렇게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하나의 사업 활동으로써 필요하게 됨.

여기서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지역사회나 마을주민의 정주환경·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체는 마을 주민이며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함.

현실적으로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결코 하나의 모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권역 내 주민들이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단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제안할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써 매뉴얼화 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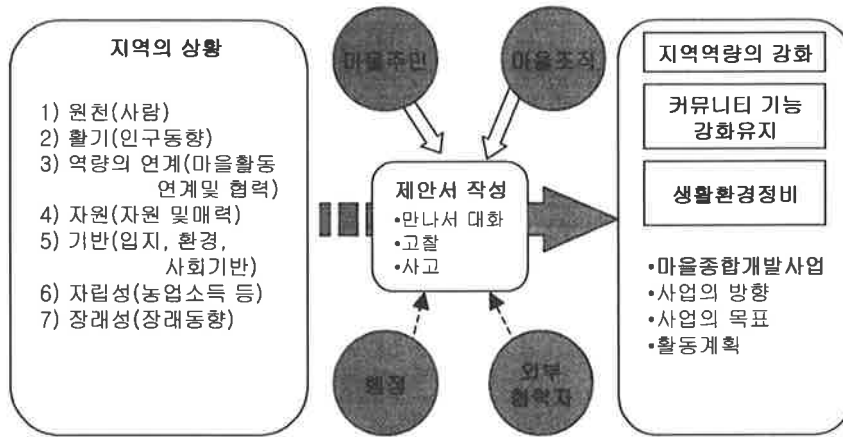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에 이해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작업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음.

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제안서의 기능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주민제안서는 기본적으로 마을주민 또는 마을조직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나 외부협력자는 지역의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주민들이 만나서 지역을 고찰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함.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마을주민들은 현재의 마을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마을의 잠재적 역량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지역을 재발견의 계기는 마을을 특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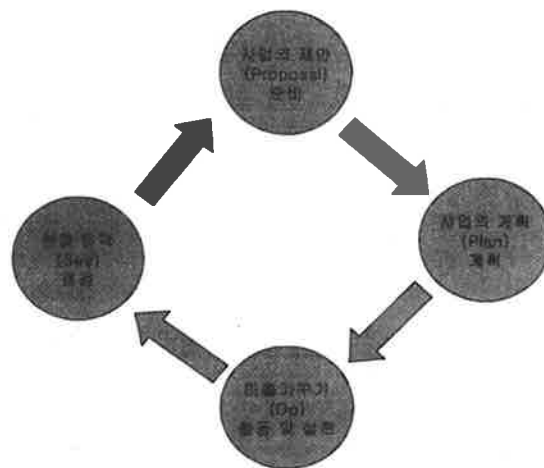


<그림1> 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제안서 작성의 기능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은 전체적인 추진과정 속에서 사업이 계획화 되고 이것이 주민조직의 활동과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가꾸기의 토대를 만들어 주며 이러한 성과가 마을권역에 나타나게 됨.

이러한 과정이 누적적으로 피드백과정을 통해 반복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2. 주민제안서 작성의 전제조건



<그림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자립기반구축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의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의 문제에 있어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마을주민이 스스로가 발견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함.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지역의 과제가 어느 정도 머리에 떠올라 마을의 종합개발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알고 그것을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것을 전제로 마을종합개발사업 제안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야 함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방향성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마을 권역의 주민 및 주민조직들이 사업을 제안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합의에 의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함

또한 마을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권역에 있어 연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에 바탕을 두어야 함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각오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지와 각오가 필수적임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제안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사업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성공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을 주민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열성 있는 마을 지도자 존재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이해하고 마을발전에 열정을 갖고 있는 마을 지도자가 있어야 함.
- 이 지도자가 자기가 속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 동의를 받고 인근마을지도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참여를 동의한 인근마을 지도자들이 각기 속한 마을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에 대하여 동의를 얻음.

3. 주민제안서 작성 단계

제1단계: 마을의 주민자치조직 결성 단계-00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마을주민의 공감대와 파트너십이 형성된 마을 권역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을 결성하고 “외부 전문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마을의 시급한 문제와 종합적인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과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참여마을별로 해당 마을의 회의를 통하여 마을별로 5명을 대표로 선정함. 이 5명에는 마을 대표(이장),부녀회장, 청년회장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킴.

마을별 대표가 모여 권역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이 추진위원회에서 마을별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5명 이상의 마을대표를 선정하게 할 수 있음. 가령 4개 마을이 참여하는 어떤

권역의 경우 각 마을의 인구가 50명, 60명, 70명, 80명이라고 하면 제일 인구가 적은 50명의 마을이 5명이기에 10명당 1명의 대표가 나올 것임. 따라서 60명, 70명, 80명인 마을은 각각 1, 2, 3명의 추가 대표를 선정하도록 할 수도 있음.

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는 마을대표자(추진위원) 과반 수 참석과 참석자들의 다수결로 모든 의견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외적인 절차를 정할 수 있음. 가령 마을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만장일치제 또는 재적대표 2/3이상 찬선으로 하는 것과 같음.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남,여 각 1인),총무이사(사무 및 재정 담당, 회의록 작성, 자료정리),교육홍보이사(위원 및 주민 교육, 마을 홍보 및 대회협력) 그리고 필요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의 역할

- 권역 개발 예비계획서(종합개발제안서) 작성
- 마을 개발협의회 참여
- 주민교육
- 사업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지원, 시행계획 참여 및 사후관리 참여

- 외부지원기관과의 연계

- 농촌마을 전문가집단과의 연계
- 추진위원회가 속한 시·군이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협정을 체결한 농림부 지정 “농촌마을 종합개발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함.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상호 공감대 형성을 마련함.

-주민제안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참여 마을별 1인씩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위원장,부위원장,총무이사,교육홍보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미만으로 구성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함. 참여마을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을 도울 전문가 집단을 확정하고 초빙함.
- 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함.

제2단계: 권역의 현황분석 및 관련계획파악

권역 전체는 물론 참여 마을별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권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기존개발사업과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 내용을 파악하여 권역발전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도록 함. 농림부의 지침에 따른 제안서 권역현황 및 관련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권역개요분야는 권역범위와 지역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권역범위에는 권역의 위치, 위치를

보여줄 위치도, 가구 및 인구, 권역에 포함된 행정리, 면적, 그리고 범위 설정배경을 기술함. 지역현황에는 권역 연혁, 권역 내 마을 현황, 농업현황(주요 재배작목, 지역특산물, 환경농업현황), 전통 역사·문화현황(지역문화재, 지역문화행사),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인적자원현황(마을별 지도자 현황, 협조 가능한 전문가 현황) 그리고 마을별 자원분포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함. 협조 가능한 전문가는 지역 내외를 아우르고 특히 출향인사 중 적합한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지역자원현황조사를 할 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지역과 마을에는 없거나 역사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원을 별도로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함(양식1 참조).

지역개발관련계획 및 추진계획분야는 국토계획, 도계획, 시·군 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은 물론 해당 시·군에서 마련한 임의계획들과의 관련 상황을 기술하는 관련 상위계획, 권역 내 취약구조개선사업, 패키지마을조성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산촌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각종 농촌 및 농업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을 명시하는 지역개발사업추진실적, 본 사업 외에 농어촌도로사업, 환경보전사업, 농촌공원녹지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소득원확충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업을 사업추진현황은 계획수립 중, 계획수립완료, 사업시행 중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향후관련사업추진계획을 기술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사업계획은 확실한 것만을 기술하여야 함(양식 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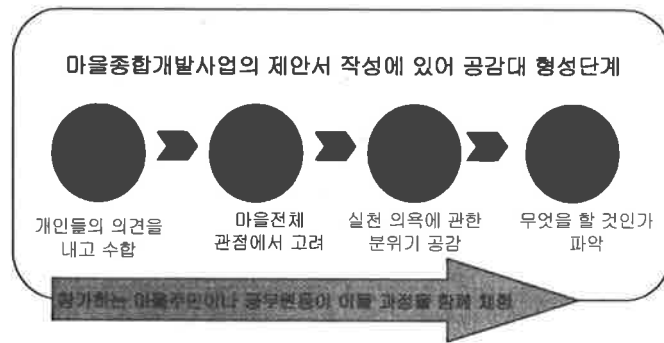
제3단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의 관련공무원 그리고 지자체 의회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마을 별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고 가능하면 추진위원 및 주민들이 함께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또는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 관계인을 초빙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의식의 공유, 의욕의 공유, 목표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가하는 구성원 간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마을의 현상과 종합적인 잠재력을 고찰하고, 장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함.

또한,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참가하는 마을주민이나 지자체 공무원 등도 이러한 과정을 함께 체험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역의 문제점, 잠재력 그리고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할 당위성을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함께 인식하도록 함.



참여마을들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정보의 공유, 의식의 공유, 의욕의 공유, 목표의 공유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연대감을 갖게 된 마을들끼리 파트너십을 통해 앞으로 목표의 공유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

마을 권역에서는 파트너로서 상호간에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표에 찬성하고 동일한 사명감을 강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 상호간에 신뢰감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때때로 약간의 상이한 의견을 생길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있어야 함. 또한 역할분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마을에 있어 지역사회 기능의 유지-강화나 지역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마을종합개발사업방향을 설정할 기틀을 마련함.

여기서 지역의 종합적인 잠재력의 인식은 사람을 토대로 한 원천, 활기(인구 동향 등), 역량의 연계(마을활동 연계 및 협력), 자원(자원 및 매력), 기반(입지, 환경, 사회기반 등), 자립성(농업소득 등), 장래성(장래의 동향 등)을 여러 가지 요소를 고찰해 보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는 것임.

제4단계: 권역발전방향 도출-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성단계

권역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예비계획서 작성의 실제 목적인 바 기본방향, 마을별 발전방향, 주요사업 그리고 사업추진의견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함.

권역발전의 비전과 발전 목표를 제시하는 권역발전 기본방향과 마을별 발전방향은 다음 예시한 간단한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서를 통해 기본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축소해 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체주민들에게 사업신청을 알리는 1차적인 목적도 있음.

※ 주민설문사례

마을이름:	성명:	전화:
선생님 마을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세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다섯 :권역구성마을 수) 개 마을발전에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을 두개만 기입해 주십시오 첫째 둘째		

가. 기본방향

- 기본방향의 설정에는 권역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함.
- 비전은 “권역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인 바 주민들이 꿈꾸고 만들고 싶은 권역의 모습임.
- 권역발전의 비전은 권역발전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구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들이 노래하듯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야 함.
- 2004년도에 선정된 권역들이 제시한 비전을 사례로 보면 “삶의 가치가 넘치는 꽃피는 산골마을”, “햇살 머금은 사람들이 사는 복숭아 빛 마을”, “친환경농업의 메카”, “문학과 전통, 자연이 숨쉬는 섬진강변 생명마을”, “도시에 사는 것이 부럽지 않는 00공동체” 등으로 아직은 권역의 미래모습이 확연히 떠오르게 하는 데는 미흡하겠지만 마을발전을 위한 좋은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임.
- 발전목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비전을 실현하게 할 내용으로 너무 많이 제시하지 말고 1~5개 내에서 설정함.
 - 지역특화자원 항목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가능하면 달성여부를 평가 가능한 구체성을 가진 목표가 제시되는 것이 좋음.
 - 사례
- 권역 내 마을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마을 간 인접성제고
- 0000년까지 상하수도체계 완성으로 복지기반 구축
- 농촌다움이 가장 잘 보존되어 그 것이 권역발전의 지속적인 자원이 되는 곳 등등

나. 마을별 발전방향

- 권역 전체로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마을 단위별로 개발방향을 제시함.
- 권역공동체 속에서 마을별 발전방향이 설정되어 상호 협조가 가능해야 개별 마을별 발전 효과가 상승하고 권역전체로의 발전속도도 지속될 수 있음.
- 너무 힘에 겨운 개발방향을 설정하지 말고 마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박한 발전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당연히 권역전체의 발전방향보다 더욱 구체성을 가져야 할 것임.
- 전체 권역 내 마을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테마를 설정.(필요시 마을개발협의회에 자문)
- 권역 내 마을들의 동질성이 큰 경우에는 마을별 발전방향을 꼭 마련할 필요는 없음.
- 마을별 발전방향은 마을의 주민회의를 반복적으로 개최하여 2개 이상의 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각 안을 좀 더 상세하게 마련함. 상세하게 마련된 안을 가지고 다시 마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선정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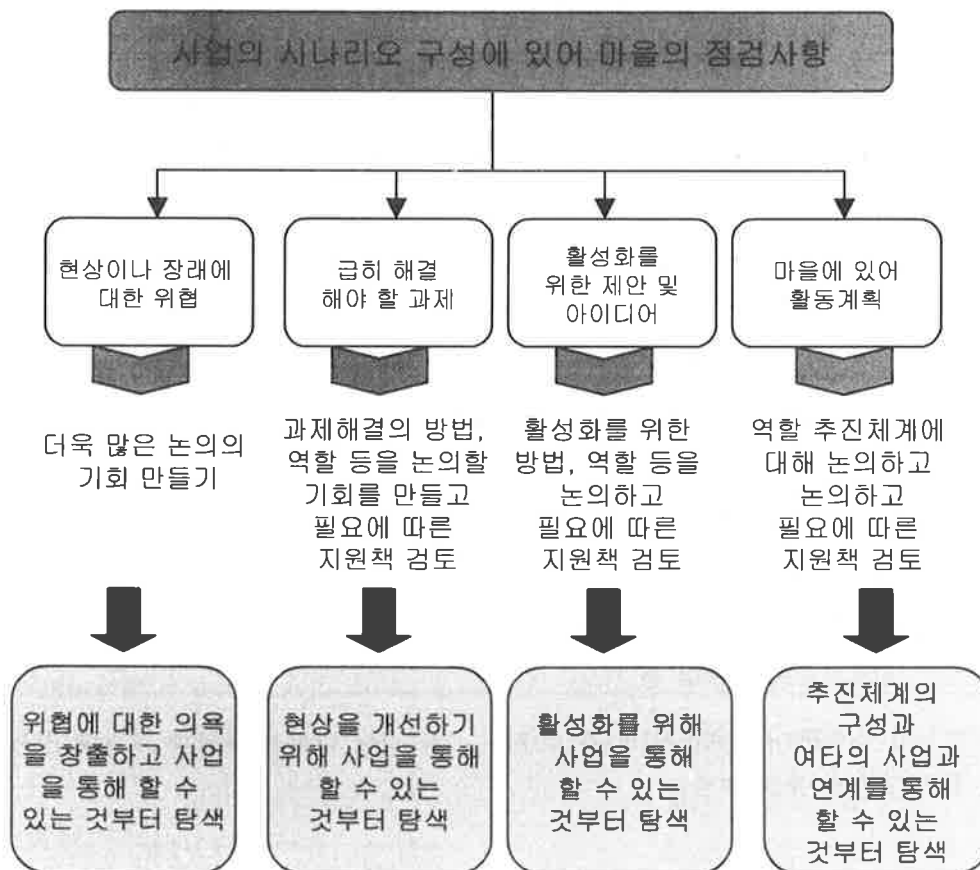
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사업은 권역전체의 발전비전과 목표 그리고 마을별 발전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함.
- 투자비용, 유지관리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마련하여야 함.
- 마을경관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마을공동경관개선분야가 있고 생울타리 복원과 같이 개별 가구에 속하는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개별 가구에 속하는 경관개선사업은 가구의 부담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임.
- 마을주민 소득확충 분야는 사업비의 20%를 참여주민이 부담하여야 하고 5명 이상의 작목 반이나 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전문가의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함. 완벽한 타당성분석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차후 지원대상 지구로 선정되었을 때 그 소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기존 자원과 주민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어야 함. 따라서 소득확충사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구성원들이 자기 소관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마을개발협의회와 전문가집단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외부에서 사업을 개발해 주는 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런 사업의 성공성은 높지 않을 것임.
- 생활환경정비 분야는 도로, 상하수도, 주택, 정보화시설 등인데 도시생활에 뒤지지 않는 기초정주기반시설임. 정부의 다른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마을 전체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을주민 교육 등 S/W 분야에서는 마을 지도자 및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과 훈련, 마을 홍보 그리고 마을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 내용을 마련하는데 다른 분야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야 함.
- 이러한 사업의 마련은 마을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들이 발전시키는 방안을 취할 수 있을 것임.
- 소득 사업 등은 어느 특정 마을에만 집중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하면 여러 개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소득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마을 권역에 있어 점검사항을 고려하여 마을 권역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단계임. 시나리오 도출과정에서 형성된 합의는 주민제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됨.

특히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아이디어 발굴 작업은 중요하며 이것을 발굴하는 작업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보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도출이 가능함.



라. 사업 추진 의견

-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인 지역주민, 마을개발협의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다짐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각 기구는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지역주민의 의견은 주민대표인 추진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 주요 사업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중심으로 서술.
- 마을개발협의회 의견은 주민들이 제출한 권역개발제안서를 숙지하고 그 적합성을 인식하여 대상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함.
- 시·군의 의견은 시·군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시·군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서술함.
- 시·도의 의견은 실제로 제시하기가 어려운 바 시·도가 제1단계 선정의 책임을 지기 때문임.
- 양식 3참조

제5단계: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예비계획서(제안서)작성 단계

-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제안서는 상기의 주민참가형 의견수렴과정을 중시하여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작성되어야 함.
주민참가형 의견수렴과정은 마을권역의 주민조직이 주민주체로 합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권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함.
- 예비계획서(제안서)에는 다음 사례와 같은 주민결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요결의 내용을 권역실정에 맞추어 작성하되 주민이 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할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함.
- 예비계획서를 집필하는 것은 전단계까지 권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합의한 사항을 예비계획서 작성지침과 양식에 맞추어 기술하는 것임.
- 실질적인 기술은 마을개발추진위원회에서 예비계획서 작성분과위원회를 추진위원 5명내외로 구성하여 이 분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지원 가능한 전문가와 마을개발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도록 함.
- 예비계획서는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지도 등을 잘 배치하고 논리적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마련된 예비계획서(안)에 대하여 마을별로 다시 설명회와 합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함.

◇ 주민결의서(예시)

○○시·도 ○○시·군 ○○읍·면 ○○리 외 ○개리

우리 마을 대표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자원의 발굴과 마을환경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 주요 결의 내용 >

1.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2.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원 발굴하기
3. 예비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4. 지역 주민 의견수렴
5. 마을개발협의회 지원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 등

200 년 월 일

회장	○○리 대표	인
	○○리 대표	인
	○○리 대표	인

첨부물 : 1. 주민결의회 기록사본 1부
 2. 회의전경 등 사진대지 1부

시장·군수 귀하

4.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발견과 합의도출의 다양한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주민참여형 실행목적에 파악하는 것으로 “취락 점검·진단 항목표”방법부터 “TN”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TN방법임.

그리고 마을의 발전 잠재력을 파악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마을 잠재력 점검표 방법”이 있는데 마을 별로 마을의 가로, 세대가 표시된 기본도를 크게 확대하여 주민들이 표시해 가는 방법임.

- TN방법과 “마을 잠재력점검표 방법”이 다음에 기술되어 있음.

◇ 주민합의를 도출하는 수단

방 법	내 용
취락 점검·진단 항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락 점검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점검·진단하는 내용을 분류해, 기본적인 항목을 정리한 표임. • 이것을 기초로 점검 수법과 프로그램등을 작성.
양케이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따라 조사표(설문과 회답 용지)를 작성해, 배포·회수·집계를 실시 • 지역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한편 양적으로 파악하거나 주민의 관심을 높 이거나 실행의 의사를 확인.
취락 점검 맵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스스로가 지도를 가지고 실제로 지역을 걸어 도는 것으로, • 생산·생활 환경을 점검해, 지역의 문제점이나 좋은 점등을 서로 이야기하 면서, 점검 결과를 도면상에 공동으로 기입해 맵을 작성.
농업용지 한필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지적 지도를 준비해, 농업용지를 일필 단위에, 토지 이용 조건과 기 반 조건, 농지 대차의 상태 및 장래 의향, 현상의 토지 이용 상황, 농지 전용·매각의 의향 등을 조사. • 그 결과를 지도에 기입.
서들·서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항목을 정리한 일람표를 작성해, 그것을 게시하고, 참가자와 논의하 면서 그 표를 공동으로 채워감. • 정리한 결과를 재차 현지에서 수정, 추가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검토.
친화 도법(KJ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의견·발상을 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그것들의 상호간 친화성 에 의해 통합한 그림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소재를 확실히 하거 나 과제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결정.
패턴 언어작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환경에 공통되는 요소를 추출해, 전부 253의 「패턴(공통 과제와 그 해결책)」에 집계한 것. • 이것을 참고에 점검 항목이나 서로 이야기하는 테마 등을 검토.
마을 만들기 인생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로부터 고령자까지 여러가지 연대의 입장이 되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해 주기 위한 양케이트 설문 카드 • 주민이 안고 있는 생각이나 문제 등을 파악.
TN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출·분석·평가하거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의욕을 높이 거나 적극적인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만들기의 수법.

- TN방법의 활용방안

가. 목적

- 참가자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도식적으로 구조화함.
- 참가자 전원에게 과제에 대한 공통 이해를 만들어 냄.
- 감정적인 논의나 선입관, 믿음을 배제해,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
- 아이디어 평가표를 이용해 과제의 가중을 구하고 우선순위 등을 결정함.
- 통계 처리를 통해 과제의 객관 지표로 설정함.

나. 절차(TN법진행의 개요)

① 팀의 결성

서포트 팀: 아이디어 발상 작업의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스태프 등의 지원팀을 결성.

추출 팀: 일반적으로 10명 정도가 바람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게, 성별·연령별·지구별 등에 팀 편성.

② 브레인스토밍

테마에 대해 추출 팀의 전원이 자유로운 발상으로 서로 이야기 함.

③ 카드 만들기

추출 팀원이 테마에 대해 생각난 것을, 1매의 카드로 1개의 아이디어를 기입.

(기입 시간은 20분 이내가 바람직함)

④ 멤버에 의한 추출 아이디어의 설명

멤버로부터 차례로 간단하게 아이디어의 설명을 받음.

다른 멤버는 그 아이디어의 불분명한 점에 대한 질의를 허용하나, 자신의 의견이나 비판은 금지함.

⑤ 아이디어의 수정과 추가

나온 아이디어를 참고로 해, 자신의 아이디어의 수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추가 실시.

수정·추가가 없어질 때까지 몇 차례 반복.

⑥ 아이디어의 그룹

추출 아이디어의 설명을 들어,

소지한 자신의 카드 중에서 유사하는 카드를 설명이 있던 카드가 있는 곳에 붙임.

⑦ 아이디어의 평가

추출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각도로부터 평가함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보조하는 사람이 PC에 입력해 아이디어 평가표를 작성
평가 기준은 3~4항목 설정.

다. 유의점

브레인스토밍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을 것.

1매의 카드에는, 1개의 내용을 쓴다음 누가 읽어도 알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카드의 내용을 확대 해석해 무리하게 그룹 하지 않게 함.

자신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룹 중에 들어갈 수 없게 함.

어디에도 같은 것이 없는 카드는, 1매인 상태로 놓아 둠.

-마을잠재력 점검표 방법(예시)

마을잠재력 점검표는 마을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항목을 첨삭하여 조정해야 함. 마을지도를 준비하여 문방용구를 이용하여 마을주민들이 작성해 감.

마을잠재력 점검표

마을 :

장 소 :

일 시 :

◆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1-1	주민이 살고 있는 곳(세대)는 어디입니까.	→ ○을 붙인다
<input type="checkbox"/> 1-2	고령자만으로 살고 있는 세대는 어디입니까.	→ 0에 빨강을 칠한다
<input type="checkbox"/> 1-3	후계자나 계승자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세대는 어디입니까.	→ 0에 파랑을 칠한다
<input type="checkbox"/> 1-4	현재 함께는 살지 않지만, 후계자나 계승자가 있는 세대는 어디입니까.	→ 0에 초록을 칠한다
<input type="checkbox"/> 1-5	마을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있습니까.	→ ⊙을 붙인다

◆ 마을의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2-1	마을에서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곳(세대)는 어디입니까.	→ ○을 붙인다
<input type="checkbox"/> 2-2	마을에서 특산물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 0에 빨강을 칠한다
<input type="checkbox"/> 2-3	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 0에 파랑을 칠한다
<input type="checkbox"/> 2-4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세대는 어디입니까.	→ 0에 초록을 칠한다

◆ 마을의 자산과 활동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3-1	공동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시설, 광장 등은 있습니까.	→ 매직으로 기입
<input type="checkbox"/> 3-2	공동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산림 등은 있습니까.	→ 매직으로 기입
<input type="checkbox"/> 3-3	공동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있습니까.	→ 매직으로 기입
<input type="checkbox"/> 3-4	마을로서 어떠한 작업·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스티커 사용
<input type="checkbox"/> 3-5	일상생활에 있어, 마을 내에서 어떠한 서로 돕기가 이루어집니까.	→ 스티커 사용
<input type="checkbox"/> 3-6	마을에 있어서의 일상생활, 가사 등을 도와주는 그룹이나 조직 등은 있습니까(마을 내·마을 외).	→ 스티커 사용
<input type="checkbox"/> 3-7	다른 마을과 협력·제휴해, 무엇인가 활동이나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스티커 사용

◆마을의 자원·매력에 대해

□ 4-1	마을의 자원으로 우선 생각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 스티커 사용
□ 4-2	마을의 매력으로서 우선 생각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 스티커 사용
□ 4-3	마을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스티커 사용
□ 4-4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스티커 사용
□ 4-5	마을만이 가능한 산업(직장)은 있습니까	→ 스티커 사용
□ 4-6	마을의 자원이나 매력을 점검합시다.	→ 스티커 사용
	(예)	
	아름다운 자연 환경·자연 경관	
	아름다운 거리풍경, 건물	
	전망이 좋은 장소	
	통풍이 좋은 장소	
	기분이 좋은 장소	
	아름다운 식물이 나 있는 곳(중)	
	야성의 동물이 생식 하고 있는 곳(중)	
	온천이 끓고 있는 곳(중)	
	유적·사적 등	
	매력적인 사람	
	향토 예능, 전통적 예술, 공예 등	
	향토 요리, 식생활 문화 등	
	전통 행사, 축제 등	
	지역의 특산물	

◆ 마을의 환경기반으로 부터

□ 5-1	마을의 환경을 점검합니다.	→ 스티커 사용
	(예)	
	아이가 놀 수 있는 장소	
	어른이 놀 수 있는 장소	
	피난할 수 있는 장소	
	빈 집	
	재해의 발생하기 쉬운 장소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	
	전망이 나쁜 장소	
	소량의 비로 수량이 늘어나는 강	
	위험한 장소	
	소음·악취가 있는 장소	
	수해가 있는 장소	
	경관이 손상되고 있는 장소	
□ 5-2	마을의 환경을 점검합니다.	→ 스티커 사용
	도로·농도로 거칠어지고 있는 장소	
	수로·상하수도 등으로 거칠어지고 있는 장소	
	농지, 산림에서 거칠어지고 있는 개소	
	공공 시설이나 건물에서 황폐해지고 있는 장소	

5. 사례를 통한 가상 시나리오

5.1. 가상시나리오 전제조건

주민들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제안 단계에서는 현재 마을에 대해 느끼는 주민들의 인식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의 문제의식을 마을주민들이 공유하고 이것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함. 즉 마을에 대한 3가지 인식형태는 문제인식형, 과제발견형, 활동개척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① 문제인식형 단계에서는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② 과제발견형 단계에서는 문제인식형의 단계보다 진일보한 상태로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③ 활동개척형은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과제를 발견하여 어떠한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 까지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마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간단히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때 우리 농촌의 현실은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 문제인식형 단계이거나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단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제안서 작성 단계에 있어 문제 인식형을 전제로 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고자 함

현재의 마을에 대한 인식상황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좋은 미래의 마을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

5.2. 예비계획서(주민제안서) 작성의 사례(00권역)

다음 사례는 00권역에서 마을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한 것임.

(1) 00권역의 주민제안서 작성 절차

- 사업제안의 계기

00권역은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별곡과 무성서원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이러한 문화 자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에 대한 인식은 잠재적 의식으로만 남아 있을 뿐 농촌

마을의 실제 생산활동 및 생활환경과는 무관한 것들로 이에 대한 관심을 점점 없어지게 됨
이때 정읍시를 떠나 전주에서 사업을 하던 김 모씨는 태산선비권역의 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했고 나이가 들어서 태산선비권역에 다시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주민들에게 태산선비권역의 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것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함.

이러한 노력으로 태산선비권역의 “문화재 보호 회장”이 되었고 주민들에게 00권역의 문화
자원의 중요성을 주민은 물론 행정기관에도 호소함.

제1단계: 사업제안 조직의 결성과 주체자의 사전교육

마을주민과 지자체는 00권역의 전통문화자원을 살려 지역을 특성화를 도모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함.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함.

마을 권역 사업의 제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별, 직업별, 연령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가칭 “마을개발추진위원회”를 조직함.

이후에 권역 사업의 제안은 “마을개발추진위원회가 중심이 추진하게 됨

한편 주민에 의해 권역사업을 제안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그룹이 참가함.

지자체에서는 마을 권역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 마을개발추진위원회의 회원과 지자체 담당자는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받도록 권유
지자체에서는 선진지역을 탐방하는 등 지자체 담당자와 추진위원 간에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특히 지자체 담당자는 주민들의 사업제안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을 권역에 대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제2단계: 마을 권역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 도출

마을권역에서 각각의 마을에서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마을
잠재력 점검표”를 통해 마을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연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예를 들어 마을 잠재력 점검표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마을에서는 지도를 펴놓고 마을 잠재력
점검표를 통해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마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마련함.

각각의 마을에서는 마을 회의를 통해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록함.

각각의 마을에서 제시된 시급히 해결해야할 마을의 문제점을 수집하여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
예를 들어 “농업활성화전략을 확립하는 어려움”,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정비가 미흡”, “농업
생산기반정비가 미흡”,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과 행정의 연계 문제“,
자연자원의 보호가 미흡”, “문화재 관리 미흡”, 등 다양하게 제시.

한편, 당해 마을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협동심, 농업생산에 대한 추진, 풍요로운 자연
환경, 전통적인 문화 및 경관 등 중요한 농촌마을의 자원으로 평가하고 함께 인식을 공유함.

제3단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

마을 권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마을 권역의 문화자원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함.

마을권역의 문제점과 문화자원을 통한 지역특성화에 공감하여 사업을 통해 마을권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특성화를 통해 연대감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공유함

각각의 마을은 마을 권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식을 공유하며, 의욕을 공유하여야 하며 이것을 통해 마을 권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제4단계: 사업 제언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파트너의 전략적 선택 단계

마을 권역에 있어 사업제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주민조직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파트너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예를 들어 마을 권역은 당초 태산 선비권역의문화재와 수변도로를 중심으로 마을권역의 특성화 전략을 세움.

그러나 수변도로를 수변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인접에 있는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수변도로 자원에 인접한 마을을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선택 하고 동참시킬 필요가 있음.

이때 참가마을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상호간에 이 사업을 통한 연대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제5단계: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성단계

주민의 아이디어 발견과 체계적 합의 도출 과정을 통해 사업제언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해 봄(TN방법에 의할 경우:TN법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가꾸기의 3단계에 있어 문제해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된 지원수단임)

제6단계: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제안단계

지금까지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참여형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특성, 개발방향, 특이사항을 도출할 수 있음.

이렇게 작성된 사업제안서를 관련기관에 신청서 제출함.

OO권역의 사례지역과 개발방향을 도출은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며 현지의 활동상황과는 상관이 없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마을제안서를 자체평가리스트를 통해 자체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실시함.

자체평가리스트의 착안상황: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활용 잠재성, 사업추진지역역량, 제안서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

<참고자료2> :평가표(05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용)

1. 권역설정의 적정성

중분류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 착안 사항
동일생활권 영농권여부	8	지리적, 문화적 통합성	◦동일 생활권, 영농권 설정여부 ◦권역설정시 지형지세, 농지분포, 마을 분포 등 고려여부
		인문 사회적 통합성	◦동질문화권 내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통합된 의사결정 시스템진행이 가능여부 ◦권역 및 마을단위 경제권 형성의 가능 여부
계획단위규모 적정성	7	마을, 가구, 인구 분포 적정 여부	◦적정한 법정리, 행정리 포함 여부 ◦권역개발에 적합한 가구수, 인구수설정 여부 ◦발전적 권역조정 필요성 및 가능성
개발제약요인	5	법적 제도적 제약여부	◦법적, 제도적으로 저촉여부 ◦적극적 개발행위 규제 여부 ◦위해시설분포 등 개발규제 시설분포여부
소계	20		

2. 지역자원 활용잠재성

중분류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 착안 사항
자원현황 및 활용실적	5	자원활용실적 및 잠재자원분포현 황	◦권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의 분포현황 ◦자원의 활용실적 및 직접적인 소득증대 연계 여부 ◦권역내에 우수 인적자원 등 잠재자원분포현황 및 활용실적
자원 활용가능성	5	자원활용가능성 및 연계성	◦지역 활성화 잠재력 자원존재 여부 ◦자원연계 등을 통한 지역발전가능성 ◦권역자원, 잠재력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설정여부
지역농업현황	10	친환경영농 및 공동조직체 운영실태	◦권역내 공동영농조직체 현황 및 운영실적 ◦친환경영농 및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 ◦대체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노력 및 계획수립여부
소 계	20		

3. 사업추진 지역역량

중분류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 착안 사항
주민들의 지역개발 추진의지	15	지역주민 참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 정도 주민들의 지역개발사업 참여실적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가능성 및 참여의지
		마을리더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내 지도자 사업이해 정도 지도자의 사업추진역량 및 교육실적 여부 권역 및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여부
사업 경영능력	8	주민들의 사업경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사업경영능력 및 인적자원존재여부 (마케팅, 사업개발능력, 기술적 능력 등)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실적 마을공동기금 및 운영실태 마을축제 등 공동행사 운영실태 공동사업 추진실적 및 가능성여부
지자체의 추진의지	7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사업목적 및 추진방식의 이해정도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정도 (지방비지원, 관련사업 연계 등) 마을개발협의회 등 지역개발관련 조직운영 및 실적
소 계	30		

4. 제안서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중분류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 착안 사항
예비계획 실현가능성	12	개발방향적정성 및 사업내용의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계획의 개발방향 및 마을별 발전방향의 적정성 여부 마을간 나눠먹기식 계획수립여부 판단 예비계획 사업내용의 타당성여부 예비계획 작성시 주민참여 여부
타 관련계획과 연계성	6	관련사업 연계성 및 중복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투자사업과의 중복 여부 분산투자의 우려 여부 타 관련사업 과의 연계가능성
성장잠재력 및 파급효과	12	성장잠재력 및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지원, 주민역량, 관련지역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발잠재력 여부 향후 인근지역 거점공간 역할 가능여부 주변의 다른 마을, 지역과 연계를 통해 거시적인 지역발전기대 여부 권역주변 지원의 연계를 통한 사업파급 범위 확대여부
소 계	18		

참고자료 양식1.2

1. 권역개요

1. 권역범위

위 치: 00시·군 00 면 00 리 외 0 개리

위 치 도: 대상권역 위치도를 1/50,000~1/25,000 지형도에 표기하는데 한 지도에 도와 군을 표시하고 그 곳에서 위치를 파악하도록 함.

가구 및 인구: 총가구수 000가구, 농가수 00가구(00%), 비농가수 000가구(00%), 총인구 0000명, 농가인구 0000명(00%)

권역 행정 리: 00리(00마을,00마을...),00리(00마을,00마을...), 등등.

면 적: 000ha(농경지: 00ha, 대지: 00ha, 산림: 00ha, 기타: 00ha)

범위설정 배경:

-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로 역사와 유래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들녘에서 영농을 하거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이나 강으로 구분되어 일정한 범위로 구분되는 지역임을 기재 등
-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마을이 공동으로 권역발전을 추진할 의지가 확실함을 제시하고 특히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어 이를 명시하면 더욱 바람직함.

2. 지역현황

가. 권역연혁

- 00권역은 0개의 법정리, 0개의 행정리, 그리고 0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음.
- 권역 전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권역전체의 연혁으로 서술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마을별로만 서술하면 됨.
- 마을별로 서술할 때는 마을의 자연풍광에서부터 마을이 생긴 유래, 마을 이름이 만들어 진 유래 그리고 행정구역이 변화했던 역사 등을 간략하게 서술함.
- 각 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을 명시하면서 그 곳들과의 관계를 설명함.

나. 권역 내 마을현황

본 권역은 시(군)과 인접해 있고 00ha의 면적에 000가구,000명이 거주하고 있음.

마을별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	남	여	계 (%)	농가	비농가	계 (%)	답	전 (과수원)	임야	기타
계	0000 (100.00)										
00리	00										
	00										

다. 농업현황

◦ 주요 재배작목 [표2]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유통경로	비 고
○○리 00마을	벼			존재하는 모든 영농조직	특이한 유통경로	
	고추					
	콩 · ·					
○○리 00마을						
○○리 00마을						

◦ 지역 특산물 [표3]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유통경로	비 고
○○리 00마을	밤					
	표고버섯					
	인삼 · ·					
○○리 00마을						
○○리 00마을						

◦ 환경농업현황 [표4]

마을명	품명	재배면적 (ha)	수확량 (ton)	영농조직	유통경로	인증내용
○○리 00마을	쌀					
	상추					
	배추					
	·					
○○리 00마을						
○○리 00마을						

라. 전통역사문화 현황

(해당행정구역의 문화재, 관광자원 분포현황, 향토문화축제 현황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중심으로 작성)

◦ 지역문화재 현황 [표5]

구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민 속자료	주요무형 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 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군														
()면														
() 권역														

◦ 지역문화행사 현황 [표6]

향토문화축제	시행월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
○○ 축제				
○○ 행사				

마. 지역공동체 활동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현황 [표7]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비고
○○리 00마을	영 농 회 청 년 회 부 녀 회 4-H클럽 · ·	○○명	○회/월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리 00마을						

바. 인적 자원 현황

◦ 마을별 지도자 현황 [표8]

마을명	구 분	성 명	연 령 (세)	교육수료현황	주요활동 실적	비고
계		명				
○○리 00마을	이 장 새마을지도자 추진위원 · ·					
○○리 00마을						

*교육수료현황은 농업 및 농촌발전에 관한 모든 교육을 명시하고 주요활동실적은 지도자로서 마을을 위해 하였던 사실을 서술함.

◦ 협조 가능한 전문가 현황

- 제안서 마련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및 사업집행과 사후관리까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내외 전문가 명단을 마련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함.

성 명	소 속	전 공	협조가능분야

사. 자원 분포 현황

(권역내의 유형, 무형자원을 파악하여 상세하게 작성 : 매우 중요)

(주민들 위주로 작성하되, 마을 내 느티나무, 물레방아, 전통가옥, 마을내 예술가, 문화가 등 인적자원, 역사, 전통 등 다양한 자원을 기재)

◦ 마을별 자원현황 [표9]

자원명	위 치	자 원 현 황	비 고
물레방아			
연 못			
우 물			

※ 지역특성과 자원활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참고1> 지역자원 목록(예시)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할 것

<참고1>

구 분	자 원 목 록	
	자원구분	조 사 대 상
자연자원	산지	국공립공원
	해양	해상공원지정여부, 갯벌, 항, 포구
	하천	지방하천개수
	습지	습지, 늪 분포현황
	지질자원	동굴, 특이지질(공룡발자국, 특이광물 등)현황 분포현황
	정자목	보호수
	마을숲	마을숲존재여부
생활환경자원	마을입지	풍수지리적내력, 주택배치형태
	전통구조물	전통가옥, 정자, 누각, 돌담, 장승, 기타전통구조물 등
	교육자원	폐교, 대안학교, 생태학습장, 전문화교육시설, 연구시설 여부
농어업자원	농지자원	다랭이논, 목초지, 특정재배작물단지(약초, 허브 등)
	어업자원	양식단지, 특이어종어획여부
	산지자원	약초재배, 고랭지채소, 산지특산물 재배여부
	지역특화농어업	지역특산물, 친환경농업 현황
관광자원	산지관광자원	자연휴양림, 산림수목원, 등산로
	해양관광자원	해수욕장, 낚시터
	수변관광자원	낚시터, 온천시설, 수영장
	레포츠자원	스키장, 골프장, 레프팅, 수렵장, 마리나, 유원지
	전통관광자원	민속마을, 역사유적지, 사찰,종교성지
	숙박시설	전문숙박시설(콘도, 호텔 등), 민박마을
역사문화자원	역사자원	마을연혁, 전통음악, 인물, 교육시설
	향토자원	향토음식, 전통풍습 및 행사
	문화재	문화재현황
	전통구조물	정자, 누각, 전통상징물(장승, 표석 등), 종교시설, 교육시설

II. 지역개발 관련 실적 및 추진 계획

(시·군에서 당해 권역내 그동안 사업시행 실적과 향후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작성)

1. 상위계획 관련사항 (도, 군 및 면단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권역의 발전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상위계획을 소개하고 권역발전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차후 제안서 작성이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수립 시 기본이 되게 하여야 함.
- 대부분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시·군계획 등이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권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2.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 관련사업 추진실적 [표10]

사업명	위 치	시설명	지원년도	지원비용 (백만원)	비 고
○○ 사업 · · ·		○○ 시설 · · ·	년 ~ 년 · · ·	○○○ · · ·	
총 계					

※ 권역내 관련사업 실적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 패키지마을조성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오지 종합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산촌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각종 농촌 및 농업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을 명시함.

3. 향후 관련사업 추진계획

추진계획인 사업내용('05~'10기간 계획사업) [표11]

사업명	위 치	시설명	지원년도	지원비용 (백만원)	사업추진현황
○○ 사업 · · ·		○○ 시설 · · ·	년 ~ 년 · · ·	○○○ · · ·	
총 계					

※ 본 사업 외에 농어촌도로사업, 환경보전사업, 농촌공원녹지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소득원확충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업만 명기
(사업추진현황은 계획수립 중, 계획수립완료, 사업시행중으로 구분하여 표기)

양식 3.

구 분	사업 추진 의견	비 고
지역주민		
마을개발 협의회		
시·군		
시·도		

부록2: 200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사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나. 장기사업목표

- '04년부터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소권역을 우선 지원
 ※ 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 3~5개마을(법정리, 예시적규모)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
 - 소권역내 포함되는 마을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내지 제40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목 표	'04까지	'05계획	'06~'13	비 고
사업량	마을종합개발	1,000권역	16	20	964	착수기준
	농촌주택정비	16,610호	1,400	780	14,430	
계		6,317,300	52,000	75,175	6,190,125	
사업비	국 고 보 조	4,693,200	20,000	48,870	4,624,330	
	지방비 보조	1,148,100	4,000	10,705	1,133,395	
	국 고 용 자	476,000	28,000	15,600	432,40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별표1]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나. 지원조건

- 보조사업비
 - 농촌마을개발 : 권역당 3~5년간 70억원 수준 지원 (국고80%, 지방비20%)
 - ※ 권역 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의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
 -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 농특회계로 별도 지원
 - ※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포함
- 융자사업비 : 호당 지원기준은 정주기반확충사업 지침내용을 준용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0백만원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 : 호당 5백만원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 정주권면 주택신축·개량 융자금 지원 포함

다. 2005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계		75,175	64,470	48,870	15,600	10,705	-
◦농촌마을종합개발		59,575	48,870	48,870	-	10,705	-
- 사업비(균특)	36권역	53,525	42,820	42,820	-	10,705	-
·계속사업	16권역	31,625	25,300	25,300	-	6,325	-
·신규사업	20권역	21,900	17,520	17,520	-	4,380	-
- 계획수립비(농특)	40권역	4,000	4,000	4,000	-	-	-
- 예비당량조사(농특)	50권역	2,000	2,000	2,000	-	-	-
- 행정 경비(농특)	1식	50	50	50	-	-	-
◦농촌주택정비(농특)	780호	15,600	15,600	-	15,600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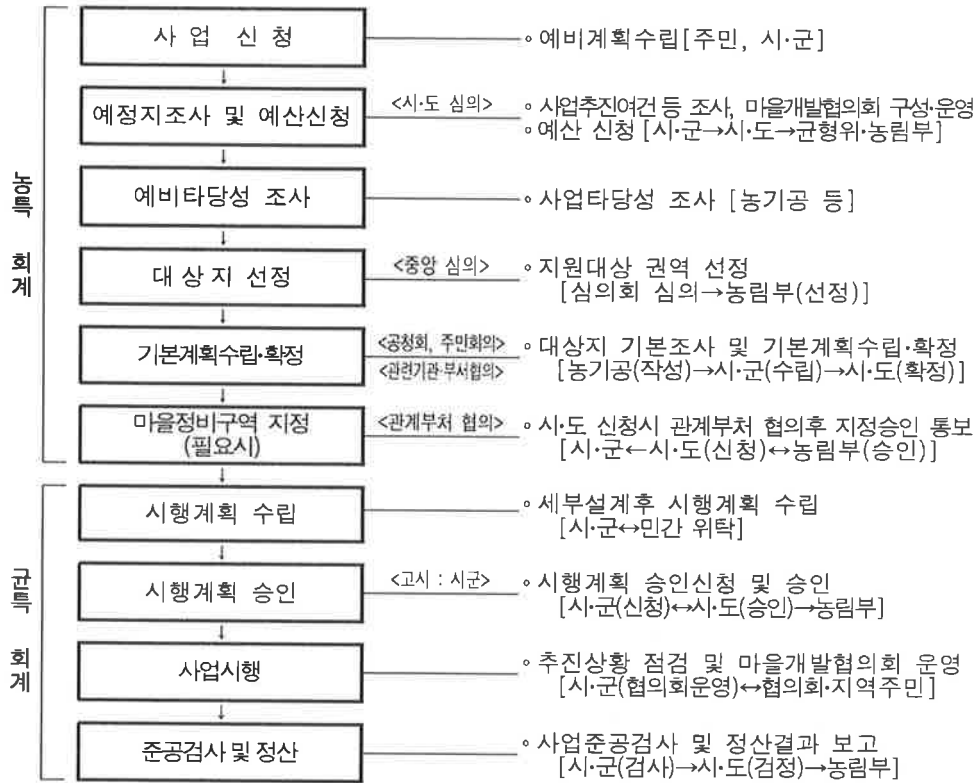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전화 02-500-1964~5)
- 시·도 : 농정(농림수산)국 : 농정과(경기,충북), 기반조성과(충남), 농업기반과(전북,전남, 경남)
 농수축산국 : 농업특작과(제주)
 건설도시국 : 주택지적과(강원)
 자치행정국 : 새마을자원봉사과(경북)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 시·군·구 : 농정과, 건설과
- 농업기반공사 : 본사, 도본부 및 지사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수탁시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라. 사업추진체계



마. 기관별 역할분담

-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예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명예 공사감독 운영, 유지관리
-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시·군농정(지역개발)심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마을정비구역 고시,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 사업시행 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 적극 활용
 - 사업대상권역 마을지도자 활동 지원
- 시·도지사 : 예산신청, 시·도농정(지역개발)심의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 사업시행계획 승인
 - 시·군을 지도·감독하면서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 농업기반공사 : 권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안 작성(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 조사 포함) 및 기술지원(설계, 감리, 사후관리),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마을주민 교육 지원
- 농림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 지원,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농특회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농촌주택정비 관련】

<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

가. 대상지 선정조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의 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소규모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
 - 인문 사회적으로 역사·문화적 특성이 같고, 주민간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지역리더가 육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지역발전을 위해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쾌적성)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물, 유적, 풍습 등을 간직한 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 농외소득증대사업과 연계시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

나. 선정절차

(1) 예정지 신청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대상 권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권역단위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 농촌마을종합개발 예비계획서 작성요령[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예비계획수립을 지원함
 - 자체적으로 예비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역주민 및 마을개발협의회는 영농권, 생활권 등 지역여건과 주민간 공동체 형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권역 범위를 설정
 -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별표2] 및 소권역 구분 요령[별표3]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신청 또는 시군 중장기계획 등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시·군지역개발심의회' 심의(시·군농정심의회 심의 가능)를 거쳐 우선 개발이 필요한 권역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예정지 신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예정지중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시·도지역개발심의회' 심의(시·도농정심의회 심의 가능)를 거쳐,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예정지 신청
- 예정지 추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
 - 시·군, 시·도농정(지역개발)심의회 심의 의견
 - 위치평면도(1:50,000지형도), 권역개발계획도(1:25,000지형도)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2) 예비타당성조사

-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을 토대로 사업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자연·사회적 입지여건, 주민참여 의지, 각종 제약요인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농업기반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행
-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권역범위 설정의 적정여부
 - 지역자원의 분포현황 및 활용가능여부
 -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 및 개발 저촉여부
 - 다른 상하위 관련계획과 중복, 또는 배치여부
 - 주민의 개발의지와 지역리더 확보 여부
 - 개발후 인근 지역으로 파급기대효과 등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3)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 농림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농업기반공사사장에게 기본계획수립을 지시

< 기본계획수립 >

- 농업기반공사는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상위 계획과 현지조사 및 지역주민의견 등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4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 인력육성계획-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활용계획

- 기초생활기반시설계획, 산업·소득원 확충계획, 권역특성화시설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한 소도읍 등 지역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보호법(제47조의2)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경비는 기본계획 수립비와는 별도로 사업비에서 계상 할 수 있음
- 마을공동으로 주택의 경관형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색채, 재질,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지붕·담장의 도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역발전 목표 등 기본계획(안)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마을개발협의회와 협의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시행후 시설물의 이용도 증대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알린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지역공청회, 주민회의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내용(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경우,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및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내용중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함.
 - 기본계획서(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포함)
 -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사업계획 평면도(1:50,000 지형도)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의견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확정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함

< 농촌주택정비 용자금 지원 >

◦ 주택정비 용자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역내 주민들의 주택정비 신청을 받아 공정한 방법으로 용자대상자를 확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 여부, 타 부문용자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용자대상자 선정시 용자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제공능력 등 용자가능성에 대하여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용자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연내에 용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건축을 완료한 대상자를 용자대상자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용자방법

- 용자금 대출은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시설물 수반시 후취담보 적극 활용)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 용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자금의 용도

- 주택신축 :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자금
- 주택개량 : 부엌·목욕탕·화장실·담장 등의 개량에 소요되는 자금

【균특회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사업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수립된 계획과 사업시행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1단계 : 1~3년차, 2단계 : 4~5년차)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가능
 - 2단계 사업시행계획은 1단계 사업시행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수립
- 시행계획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시행계획수립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인가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주민교육·훈련, 홍보, 마을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사업계획은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함
- 주택정비를 위한 융자사업비의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공사시행

- 사업시행은 당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정계획 수립시 타부문 관련계획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사시기, 설치규모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설치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행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 등을 마을주민과 협의 후 시행
- 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라.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주택정비

- 사업시행자는 마을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권역내 경관주택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주택정비시 지붕 또는 담장이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재질, 색채,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개별 주택정비로 마을경관형성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약서'에 포함하여 마을공동 경관주택정비를 시행토록 유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역내에서 마을공동으로 경관주택을 정비할 경우에는 색채, 재질,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지붕·담장의 도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주택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을 권장 하고, 마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마.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 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감안하여 수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 사업시행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공동 소득기반시설 설치시 사업시행자는 참여주민과 협의하여 소요액의 부담과 정산 절차 및 사업 완료후 시설물 인계방법 등을 확정하여야 함
 - 참여주민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확정된 기간내에 주민 부담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에는 정산확인후 시설물을 인계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
-

하여야 함

바. 공사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예비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명예감독원)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관리.
 - 농촌관광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은 시장·군수와 마을간에 협약 등을 통해 마을공동으로 소유, 운영 및 관리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사. 사후 유지관리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여야하며,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마을주인과 협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업비지원 >

가. 사업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소요사업비를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하여 확보
- 지구별 총사업비는 지원규모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확보 지원
-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사업비의 연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 개발계획에 포함된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사업 등)은 가능한 연계 지원하여야 함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사업지구내 상호 연계하여 종합 지원되도록 추진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농특·군특회계 공통사항】

< 행정사항 >

가.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예비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대표, 관내 관련기관의 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기본계획수립자에게 제공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회의개최 등 행정처리 지원
-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별표2]

- 시장·군수는 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나.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

- 사업대상권역의 개발방향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과 역할,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간, 마을간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 운영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및 마을별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함
 - 협약 체결내용은 지역주민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함

다. 보고사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확정 : 권역별 기본계획확정시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 :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 : 시행계획승인(변경)시[별지 제3,4,5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 :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준공결과보고 : 사업준공후[별지 제7호 서식]

라. 사업의 평가

-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적정 수립여부 및 사업시행 여부
 - 사업시행시 권역별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마을개발협의회'의 적정 운영 여부
 -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및 주민교육 등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시행 여부
 - 사업시행과정에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협약서 체결 및 유지관리조직 구성·운영 여부
 - 국고보조사업비 지원조건에 따른 지방비 적정 확보, 지원 여부
 - 사업시행과정에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는 사업공종의 추가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합리적 처리 여부

마. 참고사항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의 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마을종합개발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 '04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한 권역에도 본 지침을 적용함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 안내(농특회계)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정과, 건설과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지역주민 → 시장·군수 ('05.2월까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권역단위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된 지역에 대하여 예정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 대상지 추천 등에 대비
- 시장·군수 → 시·도지사 ('05.3월까지)
 -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이 사업신청한 권역별 예비계획에 대하여 예정지조사를 거쳐, 우선 개발이 필요한 권역을 시·도지사에게 신청

-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05.4월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농림부에 사업대상지를 신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예정지중 '시·도농정(지역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예정지로 신청('05년 하반기)

다. 구비서류

-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
- 시·군, 시·도농정(지역개발)심의회 심의의견
- 위치평면도(1:50,000지형도), 권역개발계획도(1:25,000지형도)
- 타 부문 투자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별지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구 분	주 시설	세 부 내 용
기초생활시설	도 로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
	주 택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기 타	정보화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문 화	다목적회관, 야외소공연장, 마을박물관, 고인돌보존, 시골장터정비, 향토문화재(효열각, 효자문, 열녀문 등)·마을유래비 등
	복 지	건강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소득기반시설	소득기반	농산물 공동가공·건조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움저장고, 버섯재배사, 비가림하우스 등
농촌관광시설	관 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권역 안내도, 장승, 방앗간복원, 빨래터조성, 정자·원두막, 간이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등
경 관 시 설	경 관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 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사립문 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환 경 시 설	환 경	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생태공원, 야생화 군락지 복원, 어류서식지 정비, 생태하천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
운동·휴양시설	운 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눈썰매장 등 레포츠시설
	휴 양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원두막, 삼림욕장, 심신단련장 등
재해대비시설	생산기반	농로, 용·배수로, 관정시설, 옹벽, 취입보 정비 등
	재 해	소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기획 및 운영(S/W)	교육·훈련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장비, 마을해설사 양성 등
	홍 보	홍보와 마케팅 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마을캐릭터(브랜드) 개발, 마을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장비 설치 등
	마을 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프로그램개발·보급,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 마을 컨설팅 등

[별지 2] 마을개발협의회 운영지침(안)

지역주민이 마을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과 지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

□ 필요성

-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체계적 참여(파트너십)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과 지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주민협의회 운영 필요
 -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마을종합개발계획의 실현성 및 효율성 제고
- 지역주민 주도의 예비계획수립 및 지속적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 및 관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지원 필요
- 지역발전 목표(장기 비전) 달성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필요
 -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및 지역리더 육성 등

□ 구 성

- 구성시기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로 신청한 경우
- 구 성 원 : 지구내 마을대표(여성농업인 포함),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의 기관장 또는 실무책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인, 시장·군수 등 10인 내외
 - 협의회 회장 : 민간전문가 및 시장·군수 공동
 - 구성 및 운영전담기관 : 시·군

□ 주요기능

- 예비계획(주민제안서) 수립 지원
 -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주민 계획수립 자문지원
- 사업시행단계별 협의·지원
 -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 단계별 수시 협의 지원
 - 계획수립자 및 사업시행자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 협의회 결과는 조사설계 보고서에 반드시 수록
 - 주요 협의·지원 내용

-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 지역발전 비전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협의
- 투자우선순위 설정, 자원부담방안 등 투자계획 협의
- 기관별 관련사업계획 연계추진방안 협의
- 지역특화작목재배, 산지유통 등 농업기술지원
- 주민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설물 이용·관리 지원 등
- 협의회 구성기관별 전담 지원분야
 - 시·군 : 협의회 구성, 회의개최, 지방비관련 투자계획 등 총괄지원
 - 농기공 : 생산·소득기반, 재해시설, 상하수도 등 SOC분야, 영농규모화 등
 - 농업기술센터 : 고소득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재배기술 지도, 환경농업지원 등
 - 농 협 : 농산물 가공·유통계획, 자금지원정보, 등
 - 민간전문가 : 주민교육, 지역특성 및 잠재자원 발굴, 환경보전계획 등
- ※ 붙임 : 마을개발협의회 활동 범위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 사업권역별로 당해 지방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위촉
 - 주민과 상시 접촉하면서 주민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 활동
-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 활동에 따른 비용을 실비 지원

[별지 3] 마을개발협의회 활동 범위

사업단계	활동범위	회의형식
예비계획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예비계획수립 지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주민 예비계획수립 지원</div>	주민간담회
사업 추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본계획내용 협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지역특성 및 개발과제도출 지원, 지역발전 비전설정 협의,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협의, 투자우선순위설정 등 투자계획협의, 기관별 관련사업 연계추진방안 협의 등</div>	기본계획(안) 설명회
세부설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시행계획내용 협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주요시설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내용검토, 관련사업과의 연계 중점검토 및 협의</div>	시행계획 내용 설명회
사업시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 추진내용 협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사업시행과정, 시설물이용계획, 타시설과 연계여부, 컨설팅의뢰, S/W사업 추진 등 협의</div>	사업추진 상황 및 설계변경 설명회
사후관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후관리 지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주민자체 추진위원회운영 지원, 시설물 이용지원, 시설보수 기술지원 등 지역발전 지속적 지원 등</div>	지역발전 자문

[별지 4] 소권역 구분 요령

□ 권역범위 설정기준

- 마을간 역사·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간 유대감이 강하여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범위로 설정
 - 일반적으로 동일한 영농권이나, 생활권으로 포함되는 몇 개의 마을이 포함되어 한 개의 권역을 이루는 범위로 하되, 지속적으로 주민간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지역은 제외
- 권역경계는 지형여건상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을 위주로 설정
 - 마을간 거리가 멀거나 하천, 임야가 위치하여 권역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지역은 제외
- 권역구분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나, 무리하게 광역화된 권역설정은 피하여 특성있는 권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

□ 권역범위 설정시 참고자료

- 소권역구분 기초자료는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의 ‘농촌지형정보’에서 검색
 - 홈페이지 주소 : www.karico.co.kr
- 검색 요령
 - ①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www.karico.co.kr)에 접속
 - ② ‘농촌지형정보’ 클릭 : <http://rgis.karico.co.kr> (바로가기 가능)
 - ③ RGIS 지형정보주제도 검색 클릭
 - ④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 : 도, 군, 면
 - ⑤ 상단위 주제도 선택에서 ‘농지관리도’를 선택
 - ⑥ 우측의 도면표시 옵션 창에서 ‘영농지구구분도’를 체크하여 하단부의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권역구분 경계선(연두색)이 행정구역 경계선과 함께 표시됨
 - ⑦ 도면표시 창 상단의 메뉴얼을 이용하여 확대, 축소, 이동 등 검색

[별지 5] 농촌마을종합개발 예비계획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 예비계획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구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상권역의 자원현황, 발전방향 등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필요
- 마을개발협의회(관련기관 등)는 주민들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

2. 작성요령

- 본 계획서는 대상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은 여기에 수반되는 통계, 문헌, 사업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계획서의 현황자료는 현지자료 중심으로 작성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토록 함
- 대상지구의 개발필요성, 발전방향 등의 계획내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토록 하며,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근거자료를 첨부물로 제출
 - 주민결의서, 관련계획 자료 등
- 지역주민이 작성하는 권역내 자원분포현황은 [별지 1] 지역자원목록(예)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자원을 조사하며, 목록외 자원도 표시
- 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주민, 공무원, 전문가명단과 시·군 대상지구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계획서 양식은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작성, 분량은 A4용지 30매 이내(사진, 도면 별도) ※ 양식 임의변경 및 과다 작성 지양

3. 주민결의

- 권역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결의서' 작성
 - 마을당 대표 5인 이상 선발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마을대표)

부록3: 해외사례지역

◇ 사례1: 나가노현(長野縣) 호다카마치(穗高町)의 마을만들기 조례

1. 추진의 개요

호다카마치는 마즈모토시(松本市)의 베드타운으로 토요시나 IC의 개설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의 입지에 의해 인구가 급증하고 토지이용이 변화하고 있음.

한편 마을(町)에는 북 알프스의 산 경치나 논과 밭, 집락의 수림,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한 와사비 밭 등의 귀중한 지하자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

이 때문에 자연과 조화된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에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것을 조정하는 체제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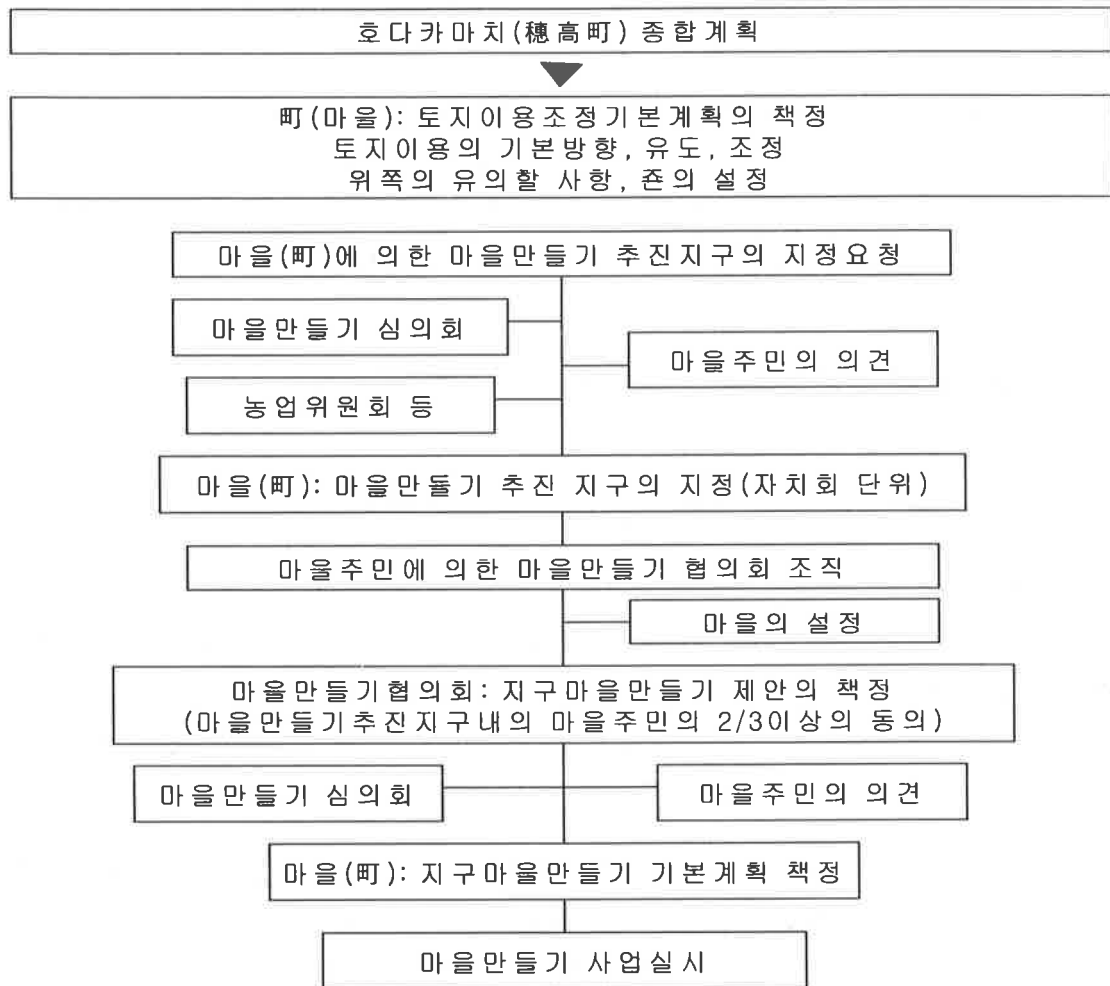
호다카마치에서는 토지이용을 질서화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1999년에 정비되었음. 호다카마치 마을만들기 조례에 기초하여 ①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 ②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 있음.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은 마을(町)이 작성하는 토지이용의 기본계획이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이것을 받아들여 지역구역마다 작성되는 보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임.

마을만들기 조례 이전에는 호다카마치 택지개발 등 지도요령(1984)에 의해 개별 개발에 대한 지도를 해왔지만 1999년 이후에는 마을만들기 조례의 하부조례로써 이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하나로 관련지어 짐.

(1) 호다카마치 마을만들기 조례

호다카마치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임. 호다카마치에 있어서 종래의 개발은 지주와 업자만이 결정했지만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의 진행이 지역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음. 그 결과 토지이용은 주변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용도변경은 침예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호다카마치에서 싹트기 시작했음. 마을이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의 75%는 무엇인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호다카마치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기초한 토지이용 질서화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주민의 합의가 배경이 됨.

[그림-1] 마을만들기 조례 흐름도



마을만들기 조례의 특징은 이하의 3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음. ①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사적인 이용보다 공공적인 이익을 중시해야만 할 것 ②주민참여를 계획작성 및 관리에 있어서 중시했다는 것 ③ 주민이나 개발업자의 책임을 규정했다는 것임.

(2)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

마을만들기 조례(제8조)에 기초하여 정장(町長)이 작성한 지역지구제(zoning)에 기반한 토지이용 기본계획임. 여기서 흥미 있는 것은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에 “조정”의 단어를 삽입했다는 것임. 지역지구제(zoning)의 목적은 지역공간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려고 하면 용도와 건폐율 등의 규제가 필요

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된 규제에 대해서는 현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부정적이었음. 마을에서도 개발규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개발권리도 있다는 생각으로 규제에 중점을 두지 않고 “조정”을 핵심단어로 하여 접근하였음.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① 우량농지의 보전, ②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확산의 억제와 디자인 통제, ③고차원적인 전원 거주형 주택 형성, ④양질의 토지자질의 형성과 네트워크의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음.

호다카마치 전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지구제(zoning)로 구분되어 있음. 지역지구제(zoning)는 9개 지구로 ①전원풍경보전 지구, ②농업보전지구, ③농업관광지구, ④집락거주지구, ⑤주거교류지구, ⑥공공시설지구, ⑦산업창조지구, ⑧문화보양지구, ⑨자연보호지구로 구분되어 있음.

계획작성은 정장(町長)이 마을만들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함.. 마을만들기 심의회는 정장(町長)이 지명하는 12명이하의 구성원에 의한 위원회임. 위원장은 현재 동경대학교수가 맡고 있지만 위원에는 의회, 상공회, 농업위원회, 구청장, 남·여공동참가위원회 등의 대표 외에 공모에 의해 선정된 위원이 2명 참가하고 있음. 계획의 수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음. 마을(町)에서는 계획작성 후에 4년째에 한번 수정했지만 향후의 수정 계획은 없음.

(3)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지역구역단위의 토지이용계획임. 지구의 주민조직인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계획작성의 실질적 주체인 점이 특징임.

계획작성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첫째로 지역구역에 조직된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마을만들기 제안서”를 작성함. 둘째로 이것을 받아서 정장(町長)이 “지구마을만들기 계획”을 작성함. 지구 마을 만들기 계획은 지구마을만들기 제안의 내용과 계획과의 차이는 없지만 정장(町長)이 작성한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짐.

2. 추진의 성과

마을만들기지구는 2001년까지 23개 지구로 지정되어 이중 1개 지구(호타가구 326ha)에 있어서 지구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음.

마을주민 조직에 의해 지구 마을만들기 제안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가 가능하게 됨.

3. 과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권의 제약 때문에 실제로 승인, 권고 등의 조치에 머물러 있음.

개발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시사점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몇 개 마을의 권역개발인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에 원용하기는 무리한 점이 많음.

그러나 상위계획을 구체화하는 마을 토지이용계획의 실천은 권역단위 토지이용 계획보다는 점 단위의 사업위주의 우리나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보완을 할 수 있는 접근방법임.

주민과 주민조직이 사업의주체가 되고 조례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 것도 우리나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도입하여야 할 내용임.

◇ 사례2: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 사업(New Deal for Communities)

1. 개요

커뮤니티·뉴딜사업은 잉글랜드에 있어 가장 황폐상태가 심한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황폐지역(deprived area)에 대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의해, 지역간 격차의 시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이 보조금의 수급대상이 되어지고 있다.

뉴딜자금의 대상 파트너십은 모두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공통적인 중점과제의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 어려운 고용상황
- ▷ 높은 범죄 발생률
- ▷ 교육 분야에 있어 성적부진
- ▷ 보건의료분야의 부진
- ▷ 주택 및 물리적 환경에 관한 문제

2. 도입배경

정부는 황폐상황이 심한 근린지역 내의 주민이 직면한 제반 문제(적절한 행정 서비스, 일반교육, 직업교육, 고용 및 주택제공의 기회가 폐쇄적인 것 등)의 극복을 도모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사회적 소외 대책부가 1998년에 공표한 보고서 “영국을 하나로 하기(Bringing Britain Together)” 는 이러한 잉글랜드 내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과 함께 황폐지역에서 구체적인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제언이 함의 되어 있음

이 보고서가 작성·공표된 배경에는 ①과거 약 20년간에 걸쳐 정부는 황폐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별 행정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는 축소되지 않고 확대일로에 있어 왔다는 것, ② 이에 대한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건전한 지역사회 창출을 도모하거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정책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강한 반성이 있었음.

황폐 상황의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을 수 없다면

영속적인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점에서 뉴딜자금의 교부대상에 대상지역 내의 파트너십이 반영되고 있음.

이 보고서를 받은 정부는 근린지역의 재생을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뉴딜자금이 정책의 기둥이 되는 재정지원제도 임.

1998년에 17개의 파트너십이 처음으로 인정(제1라운드)을 받고, 다음 해(1999년)에는 22개의 파트너십이 추가인정(제2라운드)을 받게 되었음. 따라서 총 39개의 파트너십에 대해 총액 약20억 파운드의 기금조성이 결정되었음.

3. 수급절차

뉴딜자금의 수급절차는 다음의 3단계로 대별된다.

(1) 제1단계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근린지역을 선정하고, 현재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어느 부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누가 무엇을 수행하는가 그리고 누가 사업의 실시책임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점을 검토·정리함.

더욱이 파트너십은 이러한 논의 결과에 기초하여 구상을 정리한 “개요제안서(outline proposal)를 작성하여, 당해 지역을 소관하는 정부 지역사무소에 제출함.

[표-1] 개요제안서(outline proposal)에 기입사항

• 제안표제
• 개요제안서의 제출에 해당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단체명
• 연락처(주소, 성명, 전화, FAX번호)
• 커뮤니티의 명칭
• 커뮤니티의 세대수(커뮤니티의 세대수 및 총인구를 기재함. 또한 가능하면 연령별, 인종별 내역을 병행 기입)
• 지역의 선정이유(실업률, 교육수준 등의 현상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당해지역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에 대해 기재)
• 파트너십의 명칭 및 가맹단체(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장래 참가가 전망되는 단체명도 포함하여 기재, 이 때 현시점에서 진행 상황 등을 분류하여 생략기호로 병행기입)
• 파트너십 운영 책임 팀의 개요 및 파트너십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의 장기적인 전망(보다 상세한 목표는 제2단계에서 작성되는 실행 계획 중에 작성함. 이 단계에서는 장기적인 목표 및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는 능력이 파트너십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묻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할 점(장기적 관점에 기초하여 개선에 있어 무엇이 저해요인이 되는가, 특히 범죄, 보건의료, 교육, 실업 등에 관련한 문제점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항(현시점에서 구상의 방향이 요구되며 제2단계에서 실행계획 작성 시 수정하는 것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시점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방법(현재 실시되어지고 있는 지역재생, 주택, 그 이외 관련된 전략적 접근방법을 기재함과 더불어 뉴딜정책이 이들의 기존 정책과 어느 정도 부합되고 보완시킬 수 있는 가를 설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딜자금 이외에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기존자금(보조금 등)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있어서 각종 서비스의 운영, 집행상황의 개요 및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계획(제2단계에서 작성이 의무화되어짐)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전망(제2단계에서 부여된 보조금의 활용방법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딜자금을 받을 때 파트너십에서는 어떻게 명확한 책임체계를 구축할 것인가(파트너십에 있어서 설명 책임을 갖는 주체)

(2) 제2단계

파트너십이 지역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직되어 있고, 또한 근린지역의 장래상에 관한 명확한 전망 및 개선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파트너십에 대해 상세한 “실시계획(Delivery Plan)”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최장9개월)과 보조금(상한액 20 만 파운드)가 주어짐. 반면에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어도, 지역의 주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획을 얻어내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요제안서의 내용이 지역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음.

(3) 제3단계

실시계획을 제출 받아서 장관은 뉴딜자금을 받을 파트너십을 결정하고 공표함.

4. 대상지역

뉴딜자금대상지역에 지정된 지자체(제2라운드)는 22개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보면 정부는 지침과 기준에 따라, 대상지역의 선정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잉글랜드에서도 황폐상황이 가장 현저한 기초적 자치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황폐상황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998년 지방황폐지표(Index of Local

Deprivation 1998)”가 이용되고 있음.

정부는 뉴딜자금을 활용하여 개선된 근린지역이 잉글랜드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이것은 9개로 구분된 지역마다 최소 하나의 지자체는 선정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음.

황폐지구가 집중된 특정지역에는 가능한 한 많은 지자체가 선정되도록 특별히 배려되어지고 있음. 이것과 관련하여 대도시부는 황폐지역의 거주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버밍엄시(City of Birmingham)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제1라운드에 있어서 기존 파트너의 시험적 도입을 인정받은 지자체가 다시 한번 2라운드라도 지정을 받고 있음.

더욱이 뉴딜자금이 있어서 근린지역(NDC; neighbourhood)의 적정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1,000세대부터 4000세대를 상정하고 있음.

근린지역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지리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3자가 인정 가능한 하나로 정리된 지역이어야 함. 예를 들어 원격지에 입지하고 복수의 지구를 무리하게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지역재생의 제안을 수행하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임.

5. 커뮤니티·뉴딜자금을 활용한 사업의 사례

레스터시 동부에 위치한 부론스톤(Braunstone)지구는 시내에서도 가장 황폐상태가 현저한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음. 커뮤니티·뉴딜자금을 활용한 지역재생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레스터시 및 지구주민의 대표가 중심이 되어, 1999년에 주민의 요구(needs)를 모아 커뮤니티·뉴딜자금의 교부를 정부에 신청한 결과, 2001년 1월에 4,950만 파운드의 교부가 결정되었음.

(1) 부론스톤 주민협의회(Braunstone Community Association),

부론스톤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고 약칭)는 부론스톤지구에 있어서 커뮤니티·뉴딜자금 활용사업의 실시 및 운영주체로 유한책임보증회사를 2000년6월에 설립했음. 이 주민협의회는 협의회를 해산할 경우 전회원은 1파운드씩 부담금을 거출할 의무가 주어짐.

현재 지구에는 4,100세대, 약1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음. 주민협의회에는 정원 20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12명은 지구주민으로부터 선출한 있음. 주민대표 이외의 이사의 구성은 2004년2월말 현재, 레스터시, 학습·기능평의회, 초기 의료 트러스터, 커넥션, 레스터사제관 및 엔벌론(Environ)으로부터 각각 1명의 대표가 이사로 취임하고 있음.

(2) 재원 및 사업내용

커뮤니티·뉴딜자금에 있어서는 여타 공적·민간부문에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이 주민협의회는 커뮤니티·뉴딜자금의 투자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해 발족 당초부터 적극적으로 여타 재원의 조달에 노력하고 있음.

사업의 내용은 주민협의회가 지출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음.

주민협회의 세출예산액의 사업내용 중에 사업평가에 필요한 경비 및 관리적 경비를 제외한 6분야는 지자체의 사업내용과 유사하지만 분야별로 구체적인 예산 배분액은 주민협의회가 결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3년에 조사한 주민 청취조사의 결과, 분야별 예산 배분액이 대폭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자본경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감 가능한 여지가 적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이용하여 미실시사업에서 사업 간에 필요한 조정을 하였음.

[표-2] 주민협의회에 있어서 세출예산액(2006년도까지 전망액)

(단위:파운드)

사업내용	커뮤니티자금	여타재원	합계
범죄대책 및 커뮤니티 보전	5,500,000	314,000	5,814,000
고용·기업	7,500,000	2,900,000	10,400,000
주택·환경	7,500,000	13,024,000	20,524,000
보건의료·복지	10,000,000	15,849,000	25,849,000
교육·학습	9,500,000	3,850,000	13,350,000
지역사회의 발전	7,500,000	0	7,500,000
사업평가에 필요한 경비	326,000	0	326,000
관리적 경비	5,314,000	0	5,314,000
합계	53,140,000	35,937,000	89,077,000

출처: 브론스턴주민협회의 2003년도 사업행동계획에 기초하여 작성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시사점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 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사업의 성격과 내용면에서 상이한점들이 많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기는 어려움. 그러나 영국의 황폐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활동과 초기에 주민의 자립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의 추진과정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법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후평가관리를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고 있다는 점과 실행계획에 들어가기 전 여러 단계를 통해 커뮤니티 형성의 목적과 시행할 사업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사례3: 독일에서의 농촌마을 재개발

1. 서론

독일에서는 농촌기능을 크게 경지에 연계된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음. 우선 경지에 연계된 기능(Flächengebundene Funktionen)으로는 독일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식량생산기지, 상업 공업의 중요한 입지지역 기능, 독일국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정주지기능, 대도시들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균형유지 기능,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에 연계된 여가선용 및 휴양의 가능성 제공기능,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수원(水源)이 존재기능, 각종 위험 및 특수시설들이 입지 기능 그리고 미래개발수요의 보존기능(Die Reservefunktion)을 들 수 있음. 사회적 기능은 독일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능과 현대사회에서 희미해져 가는 전통문화와 국민 의식의 계승과 유지발전 기능을 들고 있음¹⁾.

이상의 농촌기능들은 농촌의 존립 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사회의 존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해 오고 있음.

농촌개발정책은 국토개발정책의 틀에서 추진되는데 국토개발정책의 이념은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서 내세운 “사회법치국가”(Sozialen Rechtsstaat)²⁾이고, 이 이념에서 출발한 “자유 (Freiheit), 사회평등(Sozialer Ausgleich), 안전 (Sicherheit), 평화(Frieden), 그리고 복지(Wohlstand)”를 최고의 기본원리로 하였음. 적정한 집중과 분산, 위급지역의 제거(Beseitigung der Notstandsgebiete), 사회 공동체 파괴의 저지(Verhinderung einer sozialen Erosion), 건전한 농업지역의 개발촉진(Förderung gesunder Agrargebiete), 도시-주변지역관계의 개선(Verbesserung der Stadt-Umland Verhältnisse), 직(職)·주(住)의 합리적 배치(Bessere Zuordnung Von Wohnung und Arbeitsplatz), 경관의 보존 및 관리라는 7가지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이념과 기본원리 그리고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농촌개발목표를 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법”(Raumordnungsgesetz:ROG)으로 농촌을 특수지역의 범주에 넣고 농촌지역개발의 상위목표를 제 1장 제 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Konrad-Adenauer-Stiftung, Entwicklung Ländlicher Räume , Eichholz Verlag, Bonn, W-Germany, 1974, pp.39~46.

(1) 제 1 항: 건전한 삶과 고용조건 그리고 균형된 경제, 사회, 문화여건을 갖춘 공간구조를 보장하고 또 계속 발전시킨다. 이러한 공간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이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구조개선수단이 투입 되어져야 한다.

(2) 제 2 항: 건전한 삶과 고용조건 그리고 균형된 경제, 사회, 문화여건을 갖춘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개선하며 또는 창출할 수 있게 할 직·주(職·住)의 적정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제 3 항: 전체적으로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뒤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일반적인 경제·사회여건과 문화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게마인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특히 주거환경, 교통 및 각종 공급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거리에 중심기능을 갖춘 「게마인데(Gemeinde)」²⁾를 (농촌중심지:소도시) 개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행정시설 등을 입지·진흥시켜야 한다.

(4) 제 5 항: 농촌지역에서는 충분한 인구밀도, 적절한 경제수행능력, 농업 및 비농 부문에서 만족할만한 소득기회를 확보시켜야 한다.

(5) 제 7 항: 산림을 포함, 경관의 유지, 보존, 관리와 휴양지의 설비 및 보장을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물(水)은 깨끗하게 하고, 충분한 물공급을 보장하며, 대기를 보전하고 소음공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이상의 농촌개발의 상위목표는 국토종합개발계획법(R.O.G) 제 8조에 근거 연방 정부와 주정부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구성된 국토종합개발목표설정의 구체기관인 “국토종합개발을 위한 州 장관회의(Minister Konferenz für Raumordnung: M.K.R.O)”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되었음³⁾. 실질적으로 농촌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에 속한 “국토개발자문 회의”(Der Beirat für Raumordnung be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에서 1969년 11월, 농촌개발에 관한 목표성 전략을 건의하였는데⁴⁾, 이것은 독일의 농촌 개발정책목표에 실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음.

2)독일의 행정구조는 '연방정부(Bundesregierung)-연방주(Land)- 광역행정청(Regierungsbezirk)-군(Kreis)-특별 시(Kreisfreie Stadt) 및 시·읍·면(Gemeinde)-'의 순서로 짜여져 있다. 이중 우리의 시·읍·면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는 가장 하위의 기초자치체인데 독일에서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

3)Raumordn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68, p..149와 Raumordn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71, p.142.

4)Bundesminister des Innern(Hrsg.), Empfehlungen, Beirat für Raumordnung, Bonn,1969,p.7.

(1) 기존의 부문별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농촌의 유형에 따라 모든 부문, 기간, 목표,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2) 농촌을 경제수준 및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그 동질성에 따라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강한 경제력을 갖는 농촌지역(Gebiete mit Starker Wirtschaftskräfte), 중간경제력을 갖는 농촌지역(Gebiete mit Mittlerer Wirtschaftskraft) 그리고 낮은 수준의 약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약한 경제력을 갖는 농촌지역(Gebiete mit SchwacherWirtschaftskraft)으로 구분하여 개발의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이 1971년에 수정이 가해진 농촌개발목표는 다음과 같음⁵⁾.

- (1)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집된 대도시와 똑같은 생활여건을 농촌에서도 창출한다.
- (2) 개발중심지를 사전에 확정하여 건설한다.
- (3)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에 부응할 농림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한다.
- (4) 농촌주민들에게 공급될 각종 중심서비스 및 하부구조를 확보하고 개선한다.
- (5) 고용기회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득기회를 충분히 창출한다.
- (6) 농촌중심도시(농촌소도시)건설 및 주택건설수단을 개선한다.
- (7) 자연생태계의 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원하고 만약, 바람직스럽지 못한 환경상황이 나타날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지속적인 개발이 제한되도록 한다.

이러한 독일연방정부의 농촌개발의 목표와 기본전략에 바탕을 두고 바이에른 주 자체도 농촌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음.

- (1)농업발전지원
- (2)농촌 계마인테의 생활여건 개선
- (3)대규모 공공건설사업 입지 취약점 제거
- (4)문화경관정비 및 건강한 환경 보장
- (5)마을 재개발을 통한 농민,주민 농촌계마인테 지원
- (6)생활공간정비 시 이해 관련 주민들의 참여보장

5)Empfehlungen des Beirats für Raumordnung, Zielsystem fuer die raemliche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28, Oktober 1971), in: Raumordnungsbericht 1972 der Bundesregierung, BT Drucksache VI/3793,p.155.

이러한 목적의 농촌개발정책은 우선 독일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정책목표인 국민 모두에 대한 “사회적 기회균등(Sozialer Chancengleichheit)”의 보장을 실현할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필요한데 이것은 국민이 어느 곳에 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발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할 모든 기회에의 동일한 접근성을 뜻함. 따라서 낙후지역인 농촌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향상으로 여타 다른 지역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여건 및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개발잠재력을 100%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국가정책의 최고목표를 달성하고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할 여러 가지 분배정책수단을 포함한 사회정책으로서 농촌개발정책이 필요한 것임.

둘째 이미 설명한 농촌기능의 원활화를 위한 것임. 농촌개발은 그 공간이 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한 기능들의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 농촌공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상 전 국토공간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수단들이 요구되는 것임. 사회의 존립에는 농촌공간만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꼭 필요함. 이들 기능들과 별개로 농촌개발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음.

결국, 독일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주민들에게도 도시민들과 동일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 그들의 개발잠재력을 100% 발휘하게 하여 전체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사회정책적 당위성과 독일 국토와 사회의 지속적인 존립을 가능케 하기 위해 농촌공간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케 하려는 기능상의 필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음.

2. 마을 재개발 사업(Dorferneuerung)

가. 기본개념과 목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농촌의 기능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특히 도시와의 생활환경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새로운 기능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의 생활환경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와 차이가 없도록 하려는 통합된 농촌마을개발 방식을 추진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1977년 3월, 연방정부는 “미래투자사업계획”(Programm für Zukunftsinvestitionen)을 확정하고 동년 5월, 주정부대표와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 사이에 상기 계획집행에 대하여 구체적 합의를 보았으며 이를 위해 총 160억DM을 확보하였고 이중, 137억DM을 공공부문(연방정부, 주정부, 「게마인데」에서 지출하게 되었음. 1977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교통체계의 개선, 합리적이고 환경에 유리한 에너지

이용, 미래공급을 위한 수자원개발,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직업교육 ”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마을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부문에서 지원됨. 이상의 미래투자사업계획 말고도 1977년 확정된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란 공동과제법률에 의하여 마을재개발이 지원을 받게 되었음. 1984년부터는 “미래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은” 주 개발사업계획 (Länderprogramme)의 내용으로 대체되었음. 이러한 정책적인 배경을 가진 마을재개발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수준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진 농촌 및 경제개발과 농업 및 경제구조개선, 그리고 농촌주거에서의 건물재정비를 위한 사회정책수단⁶⁾임.

다시 말하면 “경제, 각종 공급시설, 사회, 문화 분야에서 농촌주민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아래 경관 및 문화재보존,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수단들과 연계된 농촌마을의 종합된 도시재정비 및 개발수단들임. 즉 농촌을 도시계획적 수단을 적용하여 현대적인 주민요구의 충족과 도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농촌마을을 재정비하는 방법을 말함.

이러한 마을재개발은 인간복지와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반보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마을재개발이 추구하는 미래는 “각 마을의 발전 잠재력의 활성화, 각 마을의 특수 입지여건 이용, 주민들의 능력 활성화, 지역특화목표 설정 그리고 확정된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추진력을 제공하고 모든 분야의 상호접근성을 제고하며, 생태적 목표를 설정하고 토수(용지)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 등임.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수단은, 농업경영입지의 개선, 농촌지역내의 교통망 개선, 기초적인 각종 지역사회기초시설의 개선, 농촌마을의 도시계획적 정비, 농촌공동체의식의 제고 등임.

나. 마을재개발의 추진절차

마을재개발은 계획적인 농촌마을재개발로써 이 재개발은” 경지정리법” (Das Flurbereinigengesetz), 연방건축법(Das Bundesbaugesetz), 도시개발촉진법(Das Städtebauförderungsgegesetz),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의 공동과제법(Das Gemeinschaftsaufgabengesetz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Küstenschutz) 그리고 미래투자사업계획(Das Programm für

6)Schöne-Wornefeld, Ziele und Maßnahmen der Dorferneuerung bei der Neuordnung des ländlichen Raumes, in : Dorferneuerung Flurbereinigung und Bauleitplanung, Franz Walk(ed.) Institut für Staedtebau, Berlin, Heft 15, 1978, p.20.

Zukunftsinvestitionen) 등의 각종 연방 및 주정부의 개발촉진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주민과 주민조합이 주체가 되고 공공의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는 재개발과정임.

이러한 마을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접근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사전준비조사단계”, “계획단계” 그리고 “집행단계”로 구분되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전준비조사단계

관련농촌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는 관련 공. 사조직 및 주민들에 의해서 바람직스러운 개선수단, 개선의 필요성(문제의 제기), 개선수단의 집행가능성 등이 자세히 조사되어 짐. 이 사전조사는 농업구조사전계획(Agrarstruktur Vorplanung)과 긴밀하게 연계되거나 이 농업구조계획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으로써 대체되는데 농업구조사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즉,

- (1) 현상과 구조의 분석 및 추세계획(지역의 일반현황과 미래의 발전, 농업구조에 있어서 농림업의 문제)
- (2) 수자원현황(농업용수의 수요, 지상, 지하수 현황)
- (3) 농촌개발계획 실현을 위한 기본개념과 제안(상기 두 가지 조사사항 결과에서 얻어지는 농업구조의 문제점 제시를 위한 결론 단계)

이 조사결과에 따라 마을재개발의 바람직스러운 수단, 필요성, 집행가능성, 목표 그리고 개발의 우선순위가, 연방, 주 그리고 지역계획의 고려아래 결정, 정의됨.

② 계획단계

마을재개발을 위한 획일적인 규정은 없음. 왜냐 하면 모든 촌락의 규모와 현상 그리고 그들의 개발목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임.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마을재개발은 초기에는 경지정리청(Flurbereinigungsbehörde)에 의해 입안되었었지만 지금은 「게마인데」와 마을 주민에 의해 추진됨. 근본적으로 이 계획은 “연방건설법”과 “경지정리법”에 의한 도시-농촌혼합형 개발계획임. 이 계획은 보통 지도와 보고서로 이루어지며 특히 비용과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과 집행에 대한 제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리고 각각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분명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시행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시행자들의 공동작업과 개별수단들의 조정이 보장될 수 있게 때문임.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으로 집행

될 수 없는 재개발사업들은 잘 명기하여 두어 「계마인데」가 발전하여감에 따라 계속하여 수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함. 계획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주민 및 단체 그리고 해당지역의 공공기관의 참여보장임. 계획내용은 최고(Maximum), 최소(Minimum)의 두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데, 전자는 모두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후자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의미함.

③ 집행단계

입안되어 확정된 계획(Plan)을 집행하는 단계로서 공간상으로 특징 있는 건축물의 보존, 관리, 주거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등에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및 현대화, 토지 수용, 건물들의 철거 그리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의 주요 사업을 포함함.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에 의하여 현실화되며 보통 마을재개발의 전체 과정은 5~7년이 소요됨.

농촌 마을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 가능한 사업 분야와 현재 지원수준이[표 부록3-2]에 나타나 있음. 1978년만 해도 지원율이 대개 75% 선으로 지금보다는 더 높았었음(바이에른 주, 마을 재개발지침, 1978).경지정리의 지원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촌마을의 경제력 변화에 맞추어 지원율도 달라진 것임.

[표-3] 마을재개발의 지원내역 및 수준

전제	지원내역	지원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000명 이하의 농촌 게마인데 또는 그 게마인데의 일부 ◦ 신청은 Direktion für Ländliche Entwicklung의 Das Landwirtschaftsamt에 함 	전반적으로 공동, 공용 또는 개인분야에 지원할 수 있음	
	◦ 정보 및 교육	70%이하
	◦ 계획 및 개념설정	70%이하
	◦ 주민 및 Gemeinde 자문	60%이하, 가난한 곳 65%이하
	◦ 경작지정리, 측량, 경계표시	70%이하
	◦ 지역내 교통환경개선	60%이하, 가난한 곳 65%이하
	◦ 하천의 개보수, 자원복원 및 홍수위험저감	60%이하, 가난한 곳 65%이하
	◦ 필수시설(마을, 광장, 놀이터, 환경친화적 공급 및 폐기시설, 동식물 서식 공간 등)	60%이하, 가난한 곳 65%이하
	◦ 지역특성경관개선(광장, 도로, 등)	60%이하, 가난한 곳 65%이하
	◦ 마을공동 및 문화시설(마을회관, 마을박물관)	60%이하, 최고120,000DM
	◦ Gemeinde와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건물의 유지, 보수	60%이하, 최고120,000DM
	◦ 건물 및 대지의 취득 및 평가	60%이하, 유적지 및 생태적 의미 건물은 100%
	◦ 농업, 수공업, 마을지역, 상업, 서비스업의 건설수단 및 투자	15%이하, 최고 40,000DM
	◦ 주거지의 농촌 건축자재에 의한 개축, 확장, 신축	건축비의 20% 이하, 최고 40,000DM, 다른 지원이 있으면 최고 20,000DM
◦ 중요한 건축설계	파사드 설계비의 40%, 최고 20,000DM	
◦ 개인소유의 정원 및 전정의 정비	40%, 최고 10,000DM	
◦ 공동시설의 설치	30%이하	
◦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은 지원가능비용의 65%까지 -사적수단은 각 종류별 20-60% -전체적으로 비용의 50% 초과 불가 		

자료: Dorferneuerungsrichtlinien, Anlage 1.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시사점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있고 농촌공간에서 국민의 60%가 살고 있는 독일의 여건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원용하기는 무리가 많음.

농촌재개발사업별 지원기준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어 사업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마을별 사업총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경우 권역당 70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어 무리하게 이 금액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3단계의 단계적 접근방법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접근방법은 우리나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도 원용할 수 있을 것임.

부록4: 각 부처 유사사업들과의 관계

[각 부처 유사사업들과의 관계]

구 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B) ⁷⁾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 교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삶의 질 법 제35조	•A와 B 모두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 있음..
사업단위	• 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	•A가 B보다 사업의 범위가 큼
사업기간	•1년 기본 2년까지 가능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5년, B는 1년으로 A사업기간이 더 김
사업비 규모	•마을당 2억원의 수준에서 지원. 추가지원도 가능(국비50%,지방비 50%)	•A가 B보다 총 사업비 규모가 큼
선정기준	•마을심사평가기준인 관광자원 및 여건(100),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사(100),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100)	•A사업은 신청서의 충실성 및 주민 합의성에 중점을 둠 •B사업은 사전 기본계획내용에 우선
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시달(농림부)→마을협정체결 및 사업계획수립(마을)→대상지 신청(마을→시·군→시도)→대상지 선정(시도)→사업시행계획수립(마을)사업시행승인(시도승인→농림부보고)→사업추진(마을)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B사업은 마을이 작성
추진주체	•마을, 관할 시장 및 군수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마을
계획수립	•수립주체 -마을 •수립내용 -마을여건, 마을공동체 활동, 주요농산물 및 특산물,녹색체험사업 참여계획, 관광객유치계획,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을 정비계획,녹색농촌체험사업 시행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계획,재정계획,운영계획	•A는 계획수립은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용역, B는 마을
계획추진	•사업계획, 시행계획 그리고 사업추진 모두 마을에서 추진	•A는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으나 B는 없음. •A와 B사업 모두 주민참여가 강하고 중요함.
사업비 집행기준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경관조성,편의시설,기타S/W관련사업에 포괄지원.국비보조 및 지방비 사업 •지원대상 제외 사업 정해짐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지원대상 제외사업이 있음.
사업비 집행방법	•마을이 직접 또는 시공업체 선정 사업시행	•A는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에 대해 나누어 집행. B는 국고, 지방비로 일괄집행
사후관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반기별 점검,농림부 매년 점검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가능. B는 마을 이 관리 책임.
사업내용	•도시민 유치를 위한 생활편의시설,체험기반시설,마을경관조성,기타 S/W관련사업	•A사업은 권역의 삶의 질에 관련된 종합개발,B는 농촌체험관광,도농교류거점 시설 등
목표	•친환경농업,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A는 정주공간조성, 농촌사회유지 B는 농촌체험관광활성화 및 도 농 교류 거점

7)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지침, 2005.

구 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B)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 교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13조 제1항	•A는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이 있음. B는 근거법 모호
사업단위	•마을단위(자연부락)	•A가 B보다 사업의 범위가 큼
사업기간	•4년 (사업비 투입기간 2년)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년, B는 2년으로 A사업기간이 더 김
사업비 규모	•총 2억(국고50%, 지방비50%)	•A가 B보다 총 사업비 규모가 크고 국고비중 높음
선정기준	•농촌전통테마자원 보유마을 •주민역량을 갖춘 마을 •농진청 유관사업연계 마을	•A의 사업은 농촌의 포괄적 내용이나 B사업은 농촌 자원 중 전통테마자원에 중점을 둠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심사 및 선정→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추진주체	•마을주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기술센터10) 시행
계획수립	•수립주체 - 마을주민 (대부분 컨설팅 업체) •수립내용 - 마을체험프로그램 등	•A는 계획수립은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용역, B는 마을주민, 컨설팅 업체
계획추진	•주민교육 - 특강 및 전문가 초빙	•A는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음 •B는 지침서상 연차적 사업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A사업은 전체 사업기간만 명시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비 일괄보조 •사업권장 항목 제시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사업비 권장항목이 있음
사업비 집행방법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한 일괄 집행	•A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해 나누어 집행, B는 일괄집행
사후관리	•농업기술센터의 3년간 기술지도 •마을단위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하도록 규정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가능. B는 사업단위의 운영조직 외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도를 지침에 명기
목표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보전하여 체험·학습, 농가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하여 농촌생활의 활력화, 도농교류기여할 매력과 이미지 갖춘 농촌마을	•A는 정주공간조성, 농촌사회유지 B는 농촌전통문화중심 관광자원화

9)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침, 2005.

구 분	문화역사마을사업(B)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 교
근거법령	•문화관광부 시책	•A는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이 있으나 B는 없음.
사업단위	• 마을	•A가 B보다 사업공간 범위가 큼
사업기간	•2년(1단계)4년(2단계)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년, B는 1-2년으로 A 사업기간이 더 김
사업비 규모	•1단계 사업 당 1억원,2단계 1개사업 10억원-80억원	•A가 B보다 총 사업비 규모가 큼.
선정기준	•지역추진협의회 수립 계획을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문화관광부에 보고함. •1단계 평가기준(기획의 창의성 및 특수성,사업의 전통성과 역사성,전통의 보존성과 계승성,사업프로그램의 합목적성,추진주체 및 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지역주민의 참여도와 호응,사업의 기재 및 파급효과)	•A사업은 신청서의 충실성 및 주민 합의성에 중점을 둠 •B사업은 사전 기본계획내용에 우선
추진절차	•문화관광부의 기본지침마련-전국문화원협회 사업응모계획통보-지역추진협의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전국문화원협의회 심의 선정, 문광부에 보고-지역추진협의회 사업시행-전국문화원협의회 사업평가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B사업은 지방문화원 중심의 지역추진협의회가 신청서 작성
추진주체	•지역추진협의회(지방문화원) •전국문화원협의회 •문화관광부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지역추진협의회
계획수립	•수립주체 -지역추진협의회 •수립내용 -정보화마을 사업개요,추천지역 선정요인,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 기대효과	•A는 계획수립은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용역, B는 지역추진협의회
계획추진	•국고지원부분은 추진협의회에 직접 지원하여 집행하게 함.	•A는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으나 B는 없음. • A는 주민참여가 B보다 강함.
사업비 집행기준	• 원칙적으로 1억원 이내 지원(1단계) 2단계는 10억-30억원) • 지원대상사업 정해짐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사업내용이 제한되어 있음.
사업비 집행방법	•지역추진협의회가 집행	•A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해 나누어 집행. B는 국고, 지방비,자체 부담으로 나누어 일괄집행
사후관리	•전국문화원연합회 사후 평가 및 지역추진협의회관리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가능. B는 사업집행주체가 관리 책임.
사업내용	•지역문화발굴·보존·계승사업,현장체험프로그램개발,문화콘텐츠사업,마을 고유 향토문화보존·계승사업,교육·홍보·체험·문화관광활성화연계된 S/W개발	•A사업은 권역의 삶의 질에 관련된 종합개발, B는 마을의 문화역사부분 사업
목표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다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A는 정주공간조성, 농촌사회유지 B는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구 분	정보화마을사업(B) ¹¹⁾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 교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촉진기본법[본조시설 99.1.21]제2조의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법률제6795호 일부개정 2002.12.18] 제3조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조성계획(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이 있으나 B는 없음.
사업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마을, 300가구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가 B보다 사업의 공간범위가 큼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년, B는 1-2년으로 A사업기간이 더 김
사업비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교부세 및 지방비, 마을별 3억 5 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가 B보다 총 사업비 규모가 큼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치단체가 적정인원의 담당부서, 지방비 확보, 운영요원상주가능 성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의 참여 및 운영의지, 50가구 이상 ADSL이용자 확보 및 통신료 지불의사, 정보화 교육이수율, 마을정보센터 구축공간 확보 및 운영, 수익모델 창출, 마을 장기발전 계획 있는 곳, 다른 부처 사업사업연계효과 큰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사업은 신청서의 충실성 및 주민 합의 성에 중점을 둠 •B사업은 사전 기본계획내용에 우선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사업계획서 작성 시·도제출-시·도평가 후보 및 예비지역 행자부추천-행자부 현지조사 및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지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B사업은 시·군이 별도로 신청처 작성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주민 •시장 및 군수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마을 주민 및 자치단체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립주체 -자치단체(시·군·구) •수립내용 -정보화마을 사업개요, 추천지역 선정요인,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계획수립은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 용역, B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통보(행자부→시·도-시·군·구)⇒통합발주요청(시·군·구→행자부)⇒통합발주의뢰(행자부→조달청)⇒사업자 선정(조달청)⇒계약(시·군·구↔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으나 B는 없음. •A는 주민참여가 B보다 강함.
사업비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콘텐츠구축은 전액 특별교부세 •마을 정보센터(20평기준)조성은 특별교부세, 지방(도)비 각 50% •가구별 PC보급은 전액 지방비(도, 시·군·구) 부담 •마을별 사업비 3억 5천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사업내용이 제한되어 있음.
사업비 집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선정 사업자와 시·군·구의 계약에 의해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해 나누어 집행. B는 특별교부세, 지방비로 나누어 일괄집행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통신망 및 센터 운영비 주민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가능. B는 위탁관리 또는 사업집행주체가 관리 책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마을 홈페이지구축)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 초고속통신망, 정보센터 조성 및 PC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사업은 권역의 삶의 질에 관련된 종합 개발, B는 마을 정보화부서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보화 거점, 미래농촌개발모델, 지역공동체 형성, 마을 수익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는 정주공간조성, 농촌사회유지 B는 마을정보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수익모델 개발

11) 2004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기본계획(행정자치부, 2004.10)과 제4차(2005)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 추진계획(전자정부본부, 2005.4)의 자료를 참고함.

구 분	전원마을조성사업(B) ¹²⁾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 교
근거법령	•농어촌 정비법제2조,제29조-제42조,제85조 •삶의 질 법	•A와 B 모두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 있음
사업단위	•전원주거단지 또는 영농체험농장	•A가 B보다 사업의 공간범위가 큼
사업기간	•3년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5년, B는 3년으로 A사업기간이 더 김
사업비 규모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보조 10-20억원범위,용자 4-10억원),체재형 주말농장(보조 10억원이내,용자4억원),주택임대형 은퇴농장(보조 10억원이내,용자4억원),실버농업형 은퇴농장(보조 15억원이내,용자 10억원),종합복지형 은퇴농장(보조 20억원이내,용자 20-30억원)	•A가 B보다 총 사업비 규모가 큼
선정기준	•농어촌 정비법 제31조의 면지역 등 타 법에 개발제한 없는 지역,사업신청자 및 입주예정자가 토지매이하였거나 매입하기로 한 지역, 체재형 및 은퇴농장은 체제시설과 인접하여 농지가분포된(될) 곳,기존 바울과 인접 기반 시설연계활용도 높은 곳,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지 나오는 곳	•A사업은 신청서의 충실성 및 주민 합의성에 중점을 둠 •B사업은 사전 기본계획내용에 우선
추진절차	•후보지 선정(시·군·사업신청자,농기공)→대상지 신청 및 선정(사업신청자→시·군↔시도)→기본계획서 제출 및 마을정비구역지정신청(사업신청자→시·군→시도→농림부)→마을정비구역지정 및 기본계획확정(농림부→시도)→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시·군↔시도↔농림부)→사업시행(기반시설:시·군,단지 및 주택건설:사업신청자,시·군)→준공(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부장관)→운영 및 유지관리(시·군,민간)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B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작성
추진주체	•시장 및 군수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계획수립	•수립주체 -사업신청자 •수립내용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체재형 주말농원,은퇴농장 조성계획	•A는 계획수립은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용역, B는 사업신청자
계획추진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서업계획승인을 얻은 민간주택업체가 추진	•A는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으나 B는 없음. •A는 주민참여가 강하고 B는 별로 없음.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비가 다르고 보조금은 정해진 기초생활시설에 한함. •지원대상사업 정해집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유형별사업내용이 제한되어 있음.
사업비 집행방법	•사업신청자가 집행	•A는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에 대해 나누어 집행. B는 국고, 지방비, 용자,자체 부담으로 나누어 일괄집행
사후관리	•시·군 및 입주자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가능. B는 사업집행주체가 관리 책임.
사업내용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조성,체재형 주말농원 조성,은퇴농장 조성	•A사업은 권역의 삶의 질에 관련된 종합개발,B는 새로운 전원생활영위공간 조성
목표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용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및 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활성화 도모	•A는 정주공간조성,농촌사회유지 B사업은 전원생활영위,농촌으로 인구유입

12) 농림부, 전원마을조성사업지침, 2005.

구 분	자연생태우수마을조성사업(B) ¹³⁾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 교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	•A와 B 모두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 있음
사업단위	•20호~50호정도 자연마을	•A가 B보다 사업의 범위가 큼
사업기간	•지정기간 3년(재신청 연장)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5년, B는 지정유효기간만 3년.
사업비 규모	•없음, 단 국고보조사업 인센티브 부여	•A는 사업비가 있으나 B는 사업비가 없음.
선정기준	•마을심사평가기준인 지역 환경 여건(지역 자연환경 생태적 가치, 경관/녹지공간 확보, 친환경생활양식)75점,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 25점에 의한 심사평가.	•A사업은 신청서의 충실성 및 주민 합의성에 중점을 둠 •B사업은 사전 신청서의 현지평가에 따름.
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시달(환경부)→신청서제출(시·군·구)→광역자치단체(시도)1차평가→환경부 평가(심사평가 위원회)→최종 선정결과 통보(환경부→시도)→지정서수여(인증 표식판 포함)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B사업은 마을 또는 환경단체가 신청
추진주체	•마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마을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환경부 및 마을
계획수립	•신청 -마을 또는 환경단체 •신청내용 -개요(마을개요, 우수분야개괄, 프로그램개발운영),지역환경여건(지역환경여건,경관/녹지,친환경생활상),지역주민활동(주민활동,지역문화)	•A는 계획수립은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영역, B는 마을
계획추진	•마을에서 추진	•A는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으나 B는 없음. •A와 B사업 모두 주민참여가 강하고 중요함.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비 없음.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사어비가 없음.
사업비 집행방법	•사업비가 없어 집행 불필요	•A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해 나누어 집행. B는 사업비 없음
사후관리	•선정지역 국고보조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 주민소득사업연계 생태탐방활성화 유도, 지정기간 경과 시 재 지정추진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가능. B는 사업이 없음.
사업내용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고 지정된 상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노력	•A사업은 권역의 삶의 질에 관련된 종합개발, B는 마을의 자연생태환경의 보전
목표	•보전가치가 큰 자연마을과 주민과 합심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함.	•A는 정주공간조성, 농촌사회유지 B는 주민의 자연환경보전의식 함양, 자연자산의 자율적 보전관리

13)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2005.

구 분	산촌체험마을사업(B) ¹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 교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A와 B 모두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이 있음.
사업단위	•마을단위(자연부락)	•A가 B보다 사업의 범위가 큼
사업기간	•3년 (사업비 투입기간 2년)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년, B는 2년으로 A사업기간이 더 김
사업비 규모	•보조 12억원(생산기반7억원) •용자 2억원	•A가 B보다 총 사업비 규모가 큼
선정기준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 (1999.10.21 예규 제486)에 의거 정의된 산촌지역의 산촌마을 중 산 촌개발대상지로 확정된 마을(기 지 정)	•A사업은 신청에 의해 평가 후 권역 선정 •B사업은 예규에 의해 산촌마을을 지정하고 이 마을 중에서 시장 군수가 대상마을 결정
추진절차	•대상지 기본계획수립→타당성검토→ 기본계획승인→사업시행→사후관리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B사업은 시장군수가 자비로 수립
추진주체	•시장 군수 •마을 주민 •산촌개발협의회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시장. 군수가 시행
계획수립	•수립주체 -시장.군수 (대부분 컨설팅 업체) •수립내용 - 주거환경개선,소득기반 조성,소득원개발의 종합개발사업	•A는 계획수립은 농업기반공사,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용역, B는 시장·군수(컨설팅 업체)
계획추진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체계적,계 획적으로 추진 •산촌개발협의회심의 •전문가 자문 및 심사평가회	•A는 상향식 계획 및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음. 지역개발협의회구성 운영 •B는 초기단계 주민의견수렴, 산촌개발협의회 구성 ,운영 •A와 B는 사업 모두 전체 사업기간 명시
사업비 집행기준	•보조금에는 생활환경 5억원,생산기 반7억원),용자사업은 소득원개발 및 주택개량 2억원으로 상한 선 제시 •사업비 지원 사업내역 제시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사업내역과 사 업 분야별 사업비 한도액 있음
사업비 집행방법	•시장 군수 직접 또는 •전문업체 선정 시행	•A와 B사업 모두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으로 나누 어 집행.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외 사용,처분제한 •공공(공동)시설은 관리자 지정 또는 마을대표에 위탁 •시장 군수의 보완사업 및 유지관리 비 지원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가능. B는 사업단위의 운영조직 및 마을대표회의가 주체,시 장.군수가 관리
사업내용	•주거환경개선,소득기반조성,소득원개 발	•A와 B사업 모두 사업내용 유사함
목표	•산촌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 로 살기 좋은 산촌조성	•A와 B사업 모두 산촌,농촌의 살기 좋은 곳 만드 는 것

14) 산림청 국유림경과,2002 산촌종합개발사업계획.

구 분	아름마을사업(B) ¹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 교
근거법령	•행정자치부 시책	•A는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이 있으나 B는 없음.
사업단위	•마을	•A가 B보다 사업의 범위가 큼
사업기간	•2-3년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년, B는 1-2년으로 A사업기간이 더 김
사업비 규모	•교부세 10억원 •기타 5억원 범위 추가	•A가 B보다 총 사업비 규모가 큼
선정기준	•옛농촌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관광자원화가 용이한 마을,높은 개발잠재력이 있는 마을 •마을 자체 사업계획안마련 시군별심사,도 심사, 행자부 심사 단계 거침	•A사업은 신청서의 충실성 및 주민 합의성에 중점을 둠 •B사업은 사전기본계획내용에 우선
추진절차	•마을주민기본계획작성-행자부 마을 선정-마을 주민 집행→마을 주민 관리 운영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B사업은 시·군이 별도로 지방비로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 수립
추진주체	•마을 주민(계획·집행,운영 관리) •자치단체: 자문단구성, 사업계획 검토, 다른 부처사업과 연계추진, 마을 사업 지원 •행정자치부: 사업추진지침시달, 사업비 지원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마을 주민 및 자치단체
계획수립	•수립주체 -마을 주민,전문가 자문 •수립내용 -판매망 구축·운영, 다양한 소득원개발(관광 상품, 특화상품),환경친화적 사유시설정비	•A는 계획수립은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용역, B는 전문가 지원을 받아 마을에서 수립
계획추진	•마을 지도자 중심 마을 운영체제로 마을계획수립, 전문가 참여 •기반시설정비는 자치단체 지원, 판매망 구축·운영, 다양한 소득원개발(관광 상품, 특화상품),환경친화적 사유시설정비는 마을 주민추진 •협약에 따라 주민들이 자체사업추진	•A는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으나 B는 없음. •A는 주민참여가 B보다 강함.
사업비 집행기준	•판매망 구축·운영, 다양한 소득원개발(관광 상품, 특화상품),환경친화적 사유시설정비에 관한 사업 •특별한 집행 지침 없음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사업내용이 제한되어 있음
사업비 집행방법	•불분명	•A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해 나누어 집행. B는 특별교부세, 지방비로 나누어 일괄 집행
사후관리	•마을 주민들이 지도자 중심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킴. •자치단체 품질보증제 도입, 홍보, 관광객 유치지원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가능. B는 사업집행주체가 관리 책임
사업내용	•지자체공공인프라사업(기반시설) •마을 주민:판매망 구축·운영, 다양한 소득원개발(관광 상품, 특화상품),환경친화적 사유시설정비	•A사업은 권역의 삶의 질에 관련된 종합개발,B는 전통농촌형, 생태녹색 관광형, 21세기 선도형으로 구분한 마을의 종합개발
목표	•고유한 테마가 살아 숨쉬는 농촌마을, 푸른 환경과 도시편익이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조성, 이웃간 정이 살아 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재건	•A는 정주공간조성, 농촌사회유지 B도 A와 유사

15) 행정자치부 대변인실,보도자료, 21세기 새로운 농촌(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추진,2002.10.24.

구 분	어촌체험마을사업(B) ¹⁶⁾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A)과의 비교
근거법령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제28조,농어촌정비법 제89조	•A와 B 모두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근거법이 있음.
사업단위	•어촌계	•A가 B보다 사업의 범위가 큼
사업기간	•1년	•A는 사업비 투입기간이 3-5년, B는 1년으로 A사업기간이 더 김
사업비 규모	•개소당 500만원,가감 가능 국고보조50%,지방비45%,자부담5%	•B의 사업규모는 A에 비해 매우 작음.
선정기준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한 지역 우선 지원	•A사업은 신청에 의해 평가 후 권역 선정 •B사업은 시장 군수가 대상 후보 어촌계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지자체가 마련한 곳 우선선정
추진절차	•시도지사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신청	•A사업은 예비 및 기본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별도(1억원)로 책정함 •B사업은 시장군수가 자비로 수립
추진주체	•어촌계	•A는 농림부 주관, 농업기반공사 시행 B는 시장.군수가 주관
계획수립	•수립주체 -시·도지사 •수립내용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 어촌조성	•A는 계획수립은 농업기반공사, 전문가 컨소시엄, 외부용역, B는 시장·군수(컨설팅 업체)
계획추진	•어촌계와 해당 시·군이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로 추진	•A는 상향식 계획 및 주민교육 중 선진지 견학 항목이 있음. 마을개발협의회구성 운영 •B는 수산조정위원회심의 •A와 B는 사업 모두 전체 사업기간 명시
사업비 집행기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자부담금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	•A는 사업비 제한항목이 있고, B는 사업항목이 제시되어 있음.
사업비 집행방법	•공공사업은 시장 군수 •어촌계사업은 대행 집행	•A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누어 집행하나 B는 국고보조,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면서 공공부문사업,어촌계사업으로 구분 집행.
사후관리	•본 사업비로 지원된 시설 및 사업장 관리는 사업집행주체 책임. •어촌계 직접수행 시설물은 등기 후 손해보험가입. •사업시행주체는 어촌관광시설관리부비치 및 매년 익년 1월 말까지 관리 상황을 해수부장관에게 보고	•A는 전문기관에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가능. B는 사업시행 주체가 관리
사업내용	•주거환경개선,소득기반조성,소득원개발	•A와 B사업 모두 사업내용 유사하나 B사업은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목표	•어촌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조성으로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활성화도모, 도시와 어촌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제공	•A와 B사업 모두 어촌촌,농 촌의 살기 좋은 곳 만들고 양지역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

16) 해양수산부,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침,2005.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0. 25.

연구기관명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소장 김영용

연구진 : 책임연구원 송인성 (전남대학교 교수)

연구원 김재현 (건국대학교 교수)
김진경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
문병채 (목포대학교 연구교수)
유상건 (농업기반공사)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임경수 ((주)이장 대표)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지역경제팀장)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성근 (영남대학교 교수)
이승형 (전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팀장)
이중호 (메타건축사무소 대표)
이한성 (밀양대학교 교수)